

2011 저작권 백서

K O R E A C O P Y R I G H T W H I T E P A P E R

우리 사회가 정부의 저작권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정책의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동전의 서로 다른 양면이 존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듯이 저작권정책도 권리 보호 측면과 이용 활성화 측면이 공존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분야는 지난 수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2009년의 상습침해자 계정정지 제도 도입에 이어 한-EU FTA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법제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N스크린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융·복합 다매체 환경 변화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더욱 다양하고 침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 수집·분석시스템’과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자동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개발·운영하고 ‘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2009년 21.6%, 2010년 19.2%, 2011년 18.8%로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의지와 성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명령제도’는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서구국가들에게 선형사례를 제시해 주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스펙셜 301조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2009년 이후 4년 연속 제외됨으로써 국가이미지 개선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1년 8월 기사에서 우리나라를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소개하며 불법 온라인사이트 차단, 불법행위자의 온라인 계정 정지,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덕분에 최근 3년 한국 음원시장의 매출 규모는 2007년 5,064억원에서 2010년 7,045억원으로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저작물의 창작, 보호, 그리고 활용이라는 생태계적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과 동시에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 과제도 균형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선진국들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기증 또는 자유이용허락, 그리고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의 확보와 제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적·경제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370만 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정보 저작권 제한,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저작권 백서는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를 저작권정책이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성과보고서인 동시에 앞으로 저작권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작권 백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과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길 바라며, 이번 백서 발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광 식

최 광 식

연대기	03
발간사	04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0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20
2. 정책비전과 전략	21
3. 정책추진 및 성과	23
4. 평가 및 전망	28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30
1. 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30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34
3. 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37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1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4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44
1. EU - 음반의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44
2. 미국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 (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44
3. 영국 -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46
4. 중국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47
5. 일본 -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48
6. 프랑스 - Hadopi, 2011 동향 소개	49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시청각 실연 보호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50
8. 동남아시아 –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51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58
1. 보호정책 및 제도	58
2. 침해 현황	61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68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86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96
1. 개요	96
2. 교육 활동 및 성과	97
3. 교육 인프라 구축	109
4. 저작권 홍보 활동	116
5. 평가 및 전망	121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23
1. 기술 현황	123
2. 기술연구 및 활동	131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146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146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148

	•••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51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1
2. 저작권 등록	161
3. 법정허락	170
4. SW임치	174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79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79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84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90
4. 저작권 상생협약체	199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3
1. 개요	203
2. 활동	204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28
1. 개관	228
2. 주요 판례 평석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48
1. 소송	248
2. 조정	252
3. 저작물 감정	261
4. 법률상담	267

...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78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78
2.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78
3.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83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90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293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96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협력체계 강화	296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298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300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1. 개요	304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307

부 록

1. 2011 저작권 통계	314
2. 2011 기관별 주요 활동	337
3. 2011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80
4. 대회 수상작	383
5. 주요 기관 주소록	385



표 · 목 · 차

표 1-1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WIPO).....	36
표 1-2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36
표 1-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1)	38
표 1-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2).....	39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62
표 2-2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규모(2010년 기준)	62
표 2-3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65
표 2-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66
표 2-5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66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	67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68
표 2-8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73
표 2-9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75
표 2-10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75
표 2-11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76
표 2-12	연도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77
표 2-13	연도별 민간부문 SW단속 현황	78
표 2-14	연도별 공공부문 SW점검 현황	78
표 2-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82
표 2-1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9.2%→10.1%)에 따른 경제적 효과	84
표 2-17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98
표 2-18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99
표 2-1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99
표 2-20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인식조사 현황	100
표 2-2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01
표 2-22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 현황	104
표 2-23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105
표 2-24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106
표 2-25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108
표 2-26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108
표 2-27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09
표 2-28	교과내용 반영 현황	109
표 2-29	저작권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수	114
표 2-30	'09 ~ '11 선정 R&D 과제 현황	133
표 2-31	2011년도에 개발된 저작권 기술 R&D 결과물의 활용 사례	134

표 2-32	국내 저작권 기술개발 방향	138
표 2-33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139
표 3-1	WIPO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	147
표 3-2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148
표 3-3	저작권 분야별 통계자료 유형	150
표 3-4	저작권 관련 지수개발 영역	150
표 3-5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152
표 3-6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예시	153
표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154
표 3-8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현황	155
표 3-9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형태	155
표 3-10	저작권 찾기 구축내역 및 참여기관 현황	157
표 3-11	전년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64
표 3-12	2011년 아카이빙 실적	169
표 3-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71
표 3-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172
표 3-15	2011년 법정허락 내용	173
표 3-16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177
표 3-17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181
표 3-18	오픈소스SW 관련정보 DB 구축 현황	185
표 3-19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186
표 3-20	연도별 주요서비스 이용 현황	187
표 3-21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194
표 3-22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204
표 3-23	KOSA 주요 회원	205
표 3-24	2011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211
표 3-2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16
표 3-26	2011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18
표 3-27	KAPP 회원 현황	221
표 3-28	KAPP 음원 관리 현황	221
표 3-29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www.kogil.or.kr)	224
표 4-1	2011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249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258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59
표 4-4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62

표 4-5	2011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65
표 4-6	2011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65
표 4-7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 간)	266
표 4-8	연도별 · 유형별 상담 건수	270
표 4-9	2011년 상담매체별 통계	271
표 4-10	2011년 저작물 ·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72
표 5-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분류	281
표 5-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비교	282
표 5-3	복제 · 전송 중단의 통보 여부에 대한 개정 전 · 후 비교	282
표 5-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99
표 5-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301
표 5-6	2011년 주요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6

그 · 립 · 목 · 차

그림 1-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경과	42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61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63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65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개소식	69
그림 2-5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69
그림 2-6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71
그림 2-7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 포렌식 전담조직 구성도	72
그림 2-8	대검찰청, (사)한국포렌식학회	72
그림 2-9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 체결	72
그림 2-10	1차년도 디지털 저작권 증거 · 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구성도	74
그림 2-11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76
그림 2-12	컨설팅 업무처리 절차	78
그림 2-13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SW관리체계 컨설팅	79
그림 2-14	SW관리 점검도구 (www.itsam.or.kr)	79
그림 2-15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좌)	79
그림 2-16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우)	79
그림 2-17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아이폰	80

그림 2-18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아이폰	80
그림 2-1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87
그림 2-20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89
그림 2-21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89
그림 2-22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92
그림 2-23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2011. 6.)	93
그림 2-24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2011. 7.)	93
그림 2-25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2011. 8.)	93
그림 2-26	2011 서울 저작권 포럼(2011. 10.)	93
그림 2-27	2011 WIPO STUDY VISIT(2011. 11.)	93
그림 2-28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2011. 12.)	93
그림 2-29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94
그림 2-30, 31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97
그림 2-32, 3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99
그림 2-34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개요	102
그림 2-35	저작권 지킴이 연수 진행 과정	104
그림 2-36, 37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105
그림 2-38, 39	교과내용 반영 사례	110
그림 2-40, 41, 42	유아 대상 콘텐츠	110
그림 2-43	저작권 뮤지컬 공연 현장	111
그림 2-44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112
그림 2-45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112
그림 2-46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113
그림 2-47	생활 속 저작권 Q&A(일반인용)	113
그림 2-48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	113
그림 2-49, 5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114
그림 2-51	저작권교실 사이트	115
그림 2-52, 53	모바일 러닝 교육 과정	115
그림 2-54, 55	드림콘서트와 연계한 저작권 캠페인	117
그림 2-56, 57	저작권 여름캠프	117
그림 2-58, 59	저작권 홍보대사(김범수)가 참여한 우리스타 방위대 우수활동 시상식	117
그림 2-60	논문공모전 시상식	118
그림 2-61	논문공모전 수상자 해외연수	118
그림 2-62, 63	글짓기대회 시상식	118
그림 2-64	저작권 보호의 날 온라인 캠페인	119



그 · 림 · 목 · 차

그림 2-65, 66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 뮤직비디오	119
그림 2-67, 68	저작권 캠페인용 포스터	120
그림 2-69, 70, 71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120
그림 2-72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의 사보부문 '대상' 수상	121
그림 2-73	R&D 요구 기술과 주요 서비스간의 관계	132
그림 2-74	저작권기술 체계도(안)	133
그림 2-75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135
그림 2-76	ePub 기반의 e-Book DRM 표준 인터페이스	136
그림 2-77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점검 결과 예	136
그림 2-78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요도	137
그림 2-79	1단계 기술평가 절차	140
그림 2-80	2단계 필드시험 평가 방법	140
그림 2-81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BC 간 업무 협약식	141
그림 2-82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42
그림 2-83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142
그림 2-84	DCAN 국제 협력 활동	143
그림 2-85	3개 이상 국가 및 기관과 MOU 체결	143
그림 3-1	저작권 통계정보 선호도	149
그림 3-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51
그림 3-3	어문분야 ICN 발급 절차	153
그림 3-4	2011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TFT 연합 워크숍	154
그림 3-5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사이트 메인 화면	156
그림 3-6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56
그림 3-7	저작권인증시스템 종합개념도	158
그림 3-8	저작권인증시스템(cras.copyright.or.kr) 메인	159
그림 3-9	이용허락인증시스템(clas.copyright.or.kr) 메인	159
그림 3-10	저작권 인증표시	160
그림 3-11	등록업무 절차도	162
그림 3-12, 13	신청종류별 배타적발행권 등록업무 구현	166
그림 3-14, 15, 16, 17	등록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167
그림 3-18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구축	167
그림 3-19	아카이빙	168
그림 3-20	아카이빙 구축 공정	168
그림 3-21	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	169
그림 3-22	임치 대상물	175

그림 3-23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6
그림 3-24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6
그림 3-25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176
그림 3-26, 2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출범식	180
그림 3-28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181
그림 3-29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182
그림 3-30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186
그림 3-31	OLIS 화면	187
그림 3-32, 33, 34, 35, 36	대표적인 신탁 공공저작물	195
그림 3-37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95
그림 3-38, 39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196
그림 3-40	공공누리 시스템	197
그림 3-41	공공누리 도입 프로세스	197
그림 3-42	KOSA 당연직 이사 단체 간담회	206
그림 3-43	출판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	206
그림 3-44	징수액 및 분배액	206
그림 3-45	10주년 기념 정책발표회 기념	207
그림 3-46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208
그림 3-47	KRTRA 홈페이지	210
그림 3-48	저작권 교육 실시	210
그림 3-49	공모전 시상식	213
그림 3-50, 51	토론회	214
그림 3-52, 53, 54	FKMP 활동	217
그림 3-55	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국제 세미나	219
그림 3-56	캐나다 SOCAN, 호주 APRA 대표단과 교류	219
그림 3-57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219
그림 3-58	KOMCA 단독 마크	219
그림 3-59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장면	220
그림 3-60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23
그림 4-1	분쟁조정 절차도	256
그림 4-2	제주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모습	260
그림 4-3	저작물 감정제도 주요 연혁	262
그림 4-4	감정의 진행 절차	263
그림 4-5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사이트	269

- ABI(Allied Business Intelligence ; 미국 시장조사 기관)
-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이용되는 언어 혹은 메시지 형식)
- APP(Application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목적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
- BD(Blue-ray Disc ; 차세대 영상저장매체용 대용량 광디스크 규격)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 BTA(Bilateral Trade Affairs ; 양자무역협정)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수신제한장치)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CID(Contents Identification ; 콘텐츠 검증 기술)
-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
-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 웹 사이트 콘텐츠 관리 시스템 또는 솔루션)
- COV(Copyright Office Of Vietnam ; 베트남 저작권사무소)
-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 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
- DCE(Digital Copyright Exchange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콘텐츠 권리 관리)
- DMP(Digital Media Project ; DRM 솔루션 기술의 상호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12월에 설립된 세계 표준화 단체)
-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 ;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자유 무역연합)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G4C(Government for Citizen ; '시민을 위한 정부'라는 의미의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서비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 GNU(Gnu is Not Unix ;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OS) 호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
-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프랑스 고등 기관)
- HD(High Definition ; 고화질)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규격)
- HW(HardWare ; 하드웨어)
-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 통합 저작권 관리번호)
- ICOP(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 ICOTEC(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 국제적으로 제정한 전자책 표준인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유전자원 ·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 회의)
- IPEG(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 IPTV(Internet Protocol TV ; IP 텔레비전)
-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국제표준 산업분류)
- ISMA(Internet Streaming Media Alliance ; IPTV 표준 멀티미디어 통합단체)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IWG(Intersessional Working Group ; 회기간 실무그룹)
-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 KSCIC(Korean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한국 표준 산업분류)
-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 ; 고차원 데이터의 차원 확률에 기반한 차원 축소 방법론)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동영상을 압축하고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의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상 전문가 그룹)
- NSM(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 차세대 보안 메모리 구상)
- ODPF(Open Digital Publications Forum;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 ODS(Open Data Strategy ; 자료 개방 전략)
- OeBF(Open Electronic Book Forum ; e-Book 산업의 발전을 위한 표준 e-Book 협의체)
- OGL(Open Government License ; 열린 정부 라이선스)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 OMA(Open Mobile Alliance ;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국제 민간표준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화 기구)
- OSI(Open Source Initiative ;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위해 결성된 단체)
-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OTT(Over the top ;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료의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및 P2P를 통해 제공받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P2P(Peer to Peer ;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 PIPA(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 PP(Program Provider ; 프로그램공급자)
- PWL(Priority Watch List ;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 웹기반 전자교육에 대한 표준 규격 국제표준)
- SCSA(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 ; 할리우드 영화제작사인 20세기 폭스와 워너브라더스가 HD 영화 콘텐츠 클라우드 유통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
-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 오픈소스SW 분야의 저작권 관련 대표전문단체)
-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s and TV Engineers ; 미국영화 텔레비전 기술인 협회 조명, 설비, 필름 부문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주로 하는 시각 기술 전문가들의 조직)
- SO(System Operator ;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PA(Stop Online Piracy Act ; 미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 법안)
- SRM(Secure Removable Media ; SD카드와 같은 메모리 카드에서 저장된 콘텐츠와 콘텐츠 사용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한 규격)
- TRIPS(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UCC(User Creative Contents ; 사용자 제작 콘텐츠)
- UI(User Interface ; 사용자 인터페이스)
-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 무역대표부)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웹 표준화 국제 기구, 미국의 MIT 컴퓨터과학연구소, 유럽의 INRIA, 일본의 게이오 대학과 쇼 난후지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www-KR 이 가입하여 국내에서 기술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
- WCT(WIPO Copyright Treaty ; WIPO 저작권조약)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식재산기구)
- WIPO STUDY VISIT(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아시아 개도국의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초청교육 프로그램)
- WL(Watch List ;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WIPO 실연·음반조약)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웹 문서를 구조화하는 사실상의 표준형식, 흔히 우리가 이용하는 블로그나 RSS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타언어)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 1 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2. 정책비전과 전략
3. 정책추진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 2 절 국내 저작권 동향

1. 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3. 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제 3 절 세계 저작권 동향

1. EU – 음반의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2. 미국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 (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3. 영국 –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4. 중국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5. 일본 –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6. 프랑스 – Hadopi, 2011 동향 소개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시청각 실연 보호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8. 동남아시아 –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를 기치로 한 지식기반 사회로 사회구조가 진화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저작물 등록 현황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의미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기업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저작물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연관산업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한다)’에 따르면 핵심저작권산업은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TV방송, 사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시각예술 및 그래픽아트, 광고서비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9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리의 핵심저작권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53%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의 6.4%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확보 지원 전략이 시급하다.

또한 저작물 이용매체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한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출현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 불법복제가 아닌 온라인 불법복제의 방어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물질상품의 세계를 전제로 발전해온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관련산업 성장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변화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다른 모든 산업적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인 바,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보호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일부에서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작권 피로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작권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2. 정책 비전과 전략

이러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로 저작권 정책의 진흥을 위한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공정한 창작, 유통, 소비 문화 구현이다. 음악, 출판, 영화, 방송, 게임 분야의 시장침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킬러 콘텐츠 보호를 위한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창작, 유통, 소비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전략적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봉 전 영화’ 불법 동영상 파일 조기 발견 및 대응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고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이다. 저작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처리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산업 발달에 따라 저작물 창작이 활성화되고 창작에 활용할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확보하고 저작물 이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간소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저작물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간 직접적인 이용계약 체결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 속 저작권 문화 확산이다. 저작권 위반사범 중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인데 그 원인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여 저작권 교육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저작권 친밀도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저작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다. 국산 창작물의 해외수출이 급성장세이나, 해외 현지의 불법 유통 증가로 해외시장 확대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한류 확대지역에 저작권보호 해외사무소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콘텐츠, 저작권 해외지사 연계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선진국이자 한류 수출국으로서 국제적 무대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WIPO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 대상으로 저작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 한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국가별 차별화된 의제를 발굴하고 당사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장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마련이다.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저작물 종류, 유통형태가 분화됨에 따라 신탁단체 역할에 대한 권리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신탁의 경제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탁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뉴미디어, 복합 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방안 마련 등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3. 정책 추진 및 성과

(1)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법 개정 및 국제협력 증진

2011년에는 한·EU FTA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에서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지를 도입하였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길게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관련 국제 조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그 입법을 마쳐서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는 그 도입을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온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이제 우리도 저작권 보호 법제에 관한한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과 영화상영관에서의

도촬(盜撮)을 금지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충분한 침해억지력 확보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마무리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리보호의 강화 또는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상응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균형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오래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되었던 영미법계의 저작재산권 제한방식인 일반적인 공정이용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특히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또는 UCC) 등 기존의 제한 및 예외 규정으로는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발맞추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식재산은 저작권, 특허, 디자인, 상표는 물론 새로운 기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커져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나아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집계건수보다 훨씬 많은 수인 17,380,311건이 2011년 한 해 동안 구축되었으며 누적 총계는 30,416,725건에 이른다. 특히 오픈소스SW 저작물 수집 실적이 주목할 만하다(소스코드 16,700,000건/프로젝트 680,000건)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온라인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한다는 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도 지키며 공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말만 들어도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에 대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2012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에는 가이드라인 원본 전체는 물론 축약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응답 사례가 있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사례와 의견을 추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추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제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법 개정은 2006년에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대학의 이해와 협조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된 것이다. 학교의 수업과정에서는 많은 저작물이 사용되는데, 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매번 사전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학교 수업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학교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저작물은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학교가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 지급은 대학 등에만 적용된다.

(3) 불법복제 규모 축소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011년에는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을 정책 목표로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확충,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 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국민오픈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버감시원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전자상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 등 계기별·지역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렌트¹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총237개 불법복제물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합법시장 정착을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토렌트, P2P, 회원제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증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에 따른 불법 경로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4,220억 원으로 2010년 5,101억 원에서 약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법저작물 시장침해로 인한 2011년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8.8%로 2010년 19.2% 대비 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등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1 토렌트(torrent): 파일전송 방식의 하나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 후, 다중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2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4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이하 ‘PWL’이라 한다)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 이하 ‘WL’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K-pop과 같은 한류확산과 함께 저작권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4) 저작권 교육홍보 강화로 저작권문화의 성숙 도모

학교, 기업,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인원이 286,633명이며 교육 횟수는 무려 3,108회에 이르게 되었다. 11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80여 회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눈높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청년강사들의 활약이 큰 몫을 했다 볼 수 있다.

저작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일반 사용자들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고소각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고는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지침이 연수’는 52회 실시되었고 교육인원은 2,657명을 기록했다.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줄고 꾸준한 저작권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효과를 얻어 교육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교육수요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

원격교육연수원(<http://www.edu-copyright.or.kr>)을 통한 교육도 크게 늘었다. 10,526명의 교원을 비롯하여 1,365명의 일반인, 804명의 청소년, 232명의 공무원 등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을 공부했다.

4. 평가 및 전망

2011년은 저작권 선진국의 기반을 닦은 해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등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합리적 균형과 조율을 위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 매체(N-Screen)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는 PC 환경을 넘어 토렌트, 블랙마켓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 및 침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24시간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유형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침해 감시·조치 체계 고도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속적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포렌식 등 기술발전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체계 전문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인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류가 웹하드 등에서 토렌트 등 보다 단속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유연한 저작권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탄력적 저작권 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상생협의체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권리와 유통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게임의 규칙도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합의하기까지 그리고 새로이 마련된 규칙의 변화가 실생활에 정착되기까지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행위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계, 국민 일반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다.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1. 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이 2007년 4월 1차 타결되었고, 그 후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이에 지난 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1월 22일에는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미 FTA 협정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8년 10월 10일에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그 후 여러 의원들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거쳐, 2011년 6월 30일 먼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시행일 2011년 7월 1일)을 공포하였다.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사항(한·EU FTA와 한·미 FTA의 공통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2011년 11월 2일 한·EU FTA에 반영되지 못했던 한·미 FTA 의무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고, 2011년 11월 22일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시행일은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는 2012년 3월 15일이다.

이번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 사이의 공통사항은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해당 명문화,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과 그 밖에 그 동안 현행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개정 내용 및 구체적인 조문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 (1)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복제를 규정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한·미 FTA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굳이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을 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제 개념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를 염려도 있고, 또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대상에서 면책시키는 규정 역시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 정의에 명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2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12.), 3면.

포괄적·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fair use)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서부터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걸쳐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포괄적인 일반조항 형태의 이른바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는 규정을 두었다.

- (3)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우리 민법과 종전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민법상 독점적 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 이때 독점적 채권자는 채무자(저작재산권자인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제3자인 이용자나 침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갖게 되면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용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행위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지 않고도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설정출판권에 관한 종전 저작권법 제7절을 그 제목부터

‘배타적발행권’으로 변경하고, 기존 설정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내용적으로 포섭하여 제57조에서 제62조에 이르기까지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와 의무, 배타적발행권의 행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종전의 설정출판권에 대하여는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 규정(제63조 및 제63조의 2)을 따로 둬으로써 배타적발행권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유형물의 발행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설정출판권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³되도록 규정하였다. 방송을 제외한 이유는 한·미 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WIPO에서 신조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5) 한·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권리주장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복제·전송자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성명·주소 등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 정보를 소제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3 기(既)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
- (6)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 (7)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을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액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액을 입증하거나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미리 규정된 범위 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정손해배상제도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면서, 저작권이 그 산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⁴. FTA 발효 등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KSCIC : Korean

4 WIPO(2003),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WIPO.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국가 공식 표준분류로 제정하였다.

저작권 산업 분류 제정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면, 2011년 4월부터 저작권 산업분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 검토를 통해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을 작성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 안을 수정하였다. 2011년 10월 통계청에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의 제정을 요청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11월 8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한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국가 공식 분류로 확정 받았다.

저작권 산업의 분류체계를 작성하기 위해 저작권산업을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영위되거나 저작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순으로 분류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저작권산업은 일반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넓게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산업의 개념적 광범위성에 대응한 객관적 정의를 위해 UN 산하 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하고, 국내 산업의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를 정의하였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표 1-1과 같이 4가지 대분류(핵심산업, 상호의존산업, 부분산업, 지원산업)로 나누고,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류코드는 대분류를 1단계로 하고, 하위에 속하는 세부산업들을 2~4단계로 세분류하여 총 7자리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코드를 각각 할당하였다.

- 대분류 : 핵심저작권산업 등 4개 범주
- 세분류 : 작가 및 번역활동 등 55개 산업
- 세세분류 : 비공연 예술가 등 세분류에 속하는 316개 산업

표 1-1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WIPO)

포괄영역	정 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지원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표 1-2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구분	저작권 산업		
	분류코드(예시)	분류명(예시)	분 류 정 의
1단계	1	핵심저작권 산업	WIPO guide의 4개 포괄 영역 중 첫 번째 영역
2단계	101	출판 및 문학	WIPO guide의 53개 세부 항목 준용
3단계	10101	작가, 필자, 번역가	출판 및 문학분야 주요 창작활동의 주체
4단계	1010101	비공연예술가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비공연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1010102	번역서비스업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수, 타 산업의 파급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1)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수는 약 99,000건으로 7,900여명의 저작자가 창작한 것인데(2008년 기준), 이들 중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10조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teaching)을 위하여 문학·예술적 저작물을 예시(illustration)의 방법으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녹화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고 하여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EU 저작권 지침에서도 ‘유일한 목적이 수업을 위한 설명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이용인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교육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법 제25조 제1항)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 제25조

제2항) 다만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이미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준조차 고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2011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에서의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다. 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⁵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권리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대학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학협의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표본 크기가 작아서 보상금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1월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고, 이후 대학 측과 권리자 단체와의 수차례 협의 거쳐 2012년 4월 27일 기존의 보상금 기준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표 1-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1)

납부자	이용형태	납부 기준액(아래 방식 중 선택)		비고
		개별 이용 방식	포괄 이용 방식	
대학교 등	복제·배포 ·전송·방송 ·공연	어문·이미지 등 A4 1면 분량 7.7원	개별 단가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연간 납부 상한은 대학 등록금 수입 0.1% 이내	'개별' 과 '포괄' 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176원		

5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2008년 공모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이다.

개정된 보상금 기준에 의하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이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으로 최초 고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정된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하고 또한 보상금 제도의 안착과 시행 초기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량방식(중전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2)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 1건당 7.7원 • 음악 : 1곡당 42원 • 영상물 :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량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윤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2) 쟁점

대학에서 수업 목적 저작물 사용에 대해 보상금만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와 이용자 모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본 제도의 시행과 기준 고시에 따른 쟁점은 '보상금의 적정성'에 집중되어 있다.

개정 고시를 통해 보상금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대학 측은 여전히 추가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정이용 부분 반영, 대학교수 무료이용 동의 부분 반영 등이 미흡하다며 보상금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권리자측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7년도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여를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면서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자신들의 이익에 편향된 주장으로 일관하여 더 이상 양보나 시간 끌기에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와 유사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1,8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제도 자체가 없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미국의 경우 도서의 복제에 ‘1면당 2달러 내외’(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기준)를 내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고시된 기준에 따른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3,132원으로 염두에 두고 마련 된 것이므로,⁶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다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도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고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대학의 현실과 권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보상금 영역’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인용(법 제28조)이나 비영리공연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상금을 낸다고 해서 시중의 서적을 통째로 제본해서 배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분배 방법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는 '09년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등이 학생 1인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보상 기준을 연간 4,100원으로 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간(4년제와 2년제) 이용량 차이가 크다는 이용자 측 의견을 수용하여, 포괄 이용 방식 기준은 고시하지 않았다.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전 영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제정·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라이프 사이클 별로 촉진 방안을 규정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국제 표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5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 위원(국무총리)과 민간 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2011년 7월 28일 출범하게 되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의 ‘서포트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에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하에 2012년부터 5년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에 대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 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추정)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시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업간·국가간 ‘총성 없는 두뇌 전쟁’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1) 현황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11년 5월 19일)에 따라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2011년 11월 20일)되었다.

이에, 기존 웹하드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 도입 배경

그동안 웹하드·P2P서비스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무분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난립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여도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등의 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경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진성호, 한선교 의원) 발의
- '11.3.9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
- '11.3.10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
- '11.5.19 국회 본회의 통과
- '11.11.20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6개월간의 웹하드 등록 기간을 부여하고 '12.5.21부터 본격 시행)

그림 1-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경과

(3) 주요 추진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 △정보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 △불법 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요원 배정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웹하드나 P2P업체들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신고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해 그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들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을 콘텐츠 유통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합법 콘텐츠 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합법시장 정착을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토렌트⁷, P2P, 회원제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증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에 따른 불법 경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일부 불법 웹하드들이 자진 폐쇄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웹하드 등록 업체에서도 여전히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어,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상시모니터링 및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로 등록 요건에 대한 지속적 준수 유도와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 토렌트(torrent): 파일전송 방식의 하나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 후, 다중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1. EU – 음반의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유럽위원회는 2008년 7월 음반의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9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몇몇 회원국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그 이후 2009년 4월 유럽의회에서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보호기간 지침(Directive) 개정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2011년 9월 12일 유럽연합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이 2011년 10월 31일자로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어 2011/77/EU 지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지침은 음반에 대한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116/EC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지침의 효력 발생일인 2011년 10월 31일부터 2년 이내에 회원국들이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각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1/77/EU 지침은 음반의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가 있는 음악저작물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는 내용,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양도 계약 종결권 및 추가적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2011년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먼저 2011년 5월

상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이하 'PROTECT IP Act 또는 PIPA'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그 후 2011년 10월 하원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라 한다)'가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저작권자 또는 법무부의 신청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 검색엔진은 불법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3) 결제 시스템 사업자는 미국 내 고객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4) 해외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광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모든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PIPA에 따르면 법원의 금지명령은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 업체 및 결제 업체 등 불법 사이트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 밖의 도메인이름도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SOPA의 전체적인 골자는 PIPA와 유사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더 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메인 필터링 의무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웹사이트에 무기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조치 기간을 법원의 명령 후 5일 이내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PIPA는 문제의 사이트를 해외 사이트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SOPA는 주로 미국 외의 불법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계, IT 업계 등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2011년 12월 17일 상원 의원 Ron Wyden은 ‘Online Protection &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OPEN Act)’를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디지털 거래에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모두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검색엔진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3) 사이트 차단에 대한 결정권을 법원이 아닌 독립 행정기관인 ITC가 결정하도록 한 점 등에서 특색이 있다.

3. 영국 –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2011년 5월 Cardiff 대학의 Ian Hargreaves 교수는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이하 ‘Hargreaves 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영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자들의 로비에 의해 많이 좌우됨으로써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반하는 저작권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왔음을 역설하였다. 영국 정부는 Hargreaves 보고서가 내놓은 권고 사항을 수렴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Digital Copyright Exchange, 이하 ‘DCE’라 한다)’의 설립 추진을 검토하였다.

DCE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많은 저작권자들이 각자 권리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권리 귀속에 관한 정보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잠재적 이용자들, 예를 들어 뮤지컬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손쉽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권리자들이 DCE를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 저작물의 이용도 활성화되어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분명하며 2020년경에는 영국 경제에 연간 22억 파운드에 달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DCE가 권리 처리에 관한 디지털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고 권리자 확인에 관한 정보원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DCE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상업적 매력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DCE를 통한 정부 저작물의 이용, DCE에의 자발적 참여, 가격 책정과 협상의 자율, 라이선스 거래에 한정된 수수료 부과 등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연구 과제에 위탁 및 집중관리단체를 포함하여 창작과 관련된 산업계의 모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라이선싱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DCE 설립의 구체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현재 영국의 저작권 라이선스 절차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절차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중국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경제계획(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십이오(十二五) 계획’이라 한다) 기간 동안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본 원칙, 지적재산권 전략의 효과적 추진, 지적재산권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한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을 2011년 10월 14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적재산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지식산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종업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판권국 및 국가임업국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작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점 임무로 들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개선, 지적재산권 정책 시스템의 완비,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체제의 강화, 대외 교류 및 협력의 확대, 지적재산권 문화의 육성 등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집행 능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지적재산권 심사 및 등록 수준의 향상, 지적재산권 인재의 양성, 전통지식·유물·민속예술의 보호 및 가치 개발 등을 주요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5. 일본 –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2011년 1월 18일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컴퓨터 관련 기업인 ‘나가노 상점’이 운영하는 ‘Maneki TV’의 이용자가 ‘로케이션 프리’라는 영상 송신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나가노 상점에 임치하고, 나가노 상점은 그 장비에 안테나를 연결하여 인터넷 회선으로 TV 프로그램을 개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송신한 사안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로케이션 프리가 그 장치에 입력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받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이고 그것이 일대일 통신 기능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송신 행위는 자동공중송신에 해당하여 그 장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해당하며 자동공중송신의 주체도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Maneki TV’라고 보아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판결로서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에 화근을 남겼으며 일본의 정보화 사회의 진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기점이 되는 판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 문화청 산하의 문화심의회는 2011년 4월 18일 제34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시작으로 제11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저작권분과회의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위의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으로 간접 침해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검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패러디와 공정 이용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고, 국제소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해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응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6. 프랑스 – Hadopi, 2011 동향 소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 기관’인 아도피(Hadopi) 내의 ‘권리보호위원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통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리보호위원회는 2010년 10월부터 이메일을 통한 경고 통지를 시작하였고, 2011년 7월 11일 경고 통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아도피는 설립 이래로 저작권자로부터 18,380,844건의 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중 1,023,079건의 침해 사례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여 902,970건의 IP 주소를 확인하였다. 권리보호위원회는 470,878명에게 1차 경고를 통지하였고, 20,598명에게 2차 경고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권리보호위원회는 3차 통지까지 받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고 통지가 계속되면서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지난 17개월 동안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2012년 3월 27일 발표하였다.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시청각 실연 보호 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는 2011년 6월에 제22차 회의가, 2011년 11월에 제2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두 번의 SCCR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23차 SCCR에서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 조약과 관련하여 외교회의 준비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을 외교회의 개최지로 선정하고 2012년 6월 20일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라 한다)’를 설치한 바 있다. IGC는 2001년 4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제18차(5월)와 제19차(7월) 두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18차 IGC 회의에서는 IGC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라 한다)’ 회의에서 마련한 문안을 토대로 불필요한 문안 확대에 관한 논의의 지연을 막고, 조문별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여 합의를 도출한 부분에 대해 비공식 drafting 그룹을 통한 문안 간결화 작업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9차 IGC 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IGC 의무(mandate)를 연장하여 총 4번의 정부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2012년 총회 이전에 3번의 주제별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 번의 정부간위원회에 한 가지 주제만을 논의)하기로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논의는 2012년 9월 총회 전인 2012년 7월에 제22차 IGC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23차 IGC에서 외교회의 소집 여부 및 추가 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도에는 2번의 IWG가 개최되었지만,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IWG는 개최되지 않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만 개최되었다.

8. 동남아시아 –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동남아는 보통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과 인도양과 대서양의 경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5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10개국을 일컫는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는 아직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된다.

동남아는 2015년까지 유럽공동체(EU)와 같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인접한 중국이 경우 하나의 단일국가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편이지만, 동남아는 각각의 법제를 가진 10여개의 개성 강한 독립국가로 나뉘어져 있어 동남아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관련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대부분 경제, 법무, 과학관련 부처에 속한 지식재산청에서 특허, 상표, 의장 등과 함께 저작권을 관장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만 우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한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 Of Viet Nam, 이하 ‘COV’라 한다)’에서 저작권 업무를 맡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별도의 독립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등은 지식재산법 등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초 저작권법 개정을 완료한 말레이시아와 법규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박으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지만 저작권법 개정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의 경우 1994년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엄청난 기술발전과 상황변경이 발생한 현재의 저작권 문제들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세안 10개국 중 1인당 GDP가 미화 40,000달러 내외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두 개의 도시국가를 제외한 8개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의 평균은 미화 3,000달러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2011년 기준 태국과 말레이시아만 1인당 GDP 평균이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도 복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이라 한다)’의 PWL, 베트남과 필리핀은 WL에 연속적으로 올랐으며, 말레이시아는 2012년 초 새로운 저작권법의 개정발효로 겨우 WL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USTR의 감시대상국 목록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1) 태국

태국에서는 영화관내 녹화를 금지하는 녹화방지법(Anti Camcording Act), 기술적보호조치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책임’,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 및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라 한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저작권법이 개정 중에 있었으나 태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개정되지 못하였다.

한편 브로드밴드와 3G 모바일 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태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USTR의 PWL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베트남

베트남은 2009년에 지식재산법(2005년)을 개정하였으나 2011년에도 국제적 의무와 미국과의 '양자협정(The Office of Bilateral Trade Affairs, 이하 'BTA'라 한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을 개정하지 못하였다.

2009년 지식재산법은 영화와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기간을 75년으로 연장하였고 음반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다. 2011년에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반의 보호기간은 아직도 50년이다. ISP의 책임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그리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공정이용의 예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 말레이시아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녹화방지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개정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ISP의 책임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Mega upload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다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도 시행하였다.

(4) 인도네시아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쇼핑몰·소매점과 같은 오프라인 및 인터넷·핸드폰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립 저작권 징수기관의 설립이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기존 징수기관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WCT에 가입하고(2002년 발효), 2005년 WPPT에 가입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영화관내 녹화방지(Anti Camcording),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ISP의 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함께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USTR의 PWL에 올랐다.

(5) 필리핀

2011년 필리핀은 저작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선 지재권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6월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여 심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과 저작권자에게 강한 추정효과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재권 사건에 대하여 영장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WCT, WPPT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필리핀지재권청장에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 침해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케이블 TV와 인터넷의 유무선 신호를 절취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저작권에 대한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저작권 관련 개정법안은 필리핀지재권청 내에 저작권 관리단체를 규율하는 저작권사무소를 두는 것, 공표를 넓게 정의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하는 것, 일시적 복제에 관한 것, 지재권을 침해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 부여하는 것, 맹인(시각장애인)에게 저작권의 비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주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 1 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1. 보호정책 및 제도
2. 침해 현황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제 2 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개요
2. 교육 활동 및 성과
3. 교육 인프라 구축
4. 저작권 홍보 활동
5. 평가 및 전망

제 3 절 저작권 보호기술

1. 기술 현황
2. 기술 연구 및 활동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1. 보호정책 및 제도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침해방지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⁸ 실제로 우리나라는 USTR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PWL 또는 WL로 약 20년 동안이나 분류되어 왔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WL에서 제외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저작권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저작권 보호는 단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선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문화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 보호가 가져오는 실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저작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보호 정책

정부는 2008년에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8 “Illegal downloading and media investment : Spotting the pirates” The economist, Aug 20, 2011.
<http://www.economist.com/node/21526299>

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콘텐츠 강국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에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0년에는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2011년에는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을 정책 목표로 삼고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MOU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 수사체계를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전자상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 등의 계기별·지역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⁹⁾’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총 237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1년 5월 19일), 시행(2011년 11월 20일)

및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¹⁰들이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웹하드 등의 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저작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총 1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후 2016년까지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보호 제도(단속·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제도는 저작권자가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있으며, 정부가 집행하는 영리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범죄(비 친고죄) 수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법적인 복제·전송 또는 게시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 등의 행정처분이 있다.

10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일에 고시(제2009-46호)를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의함.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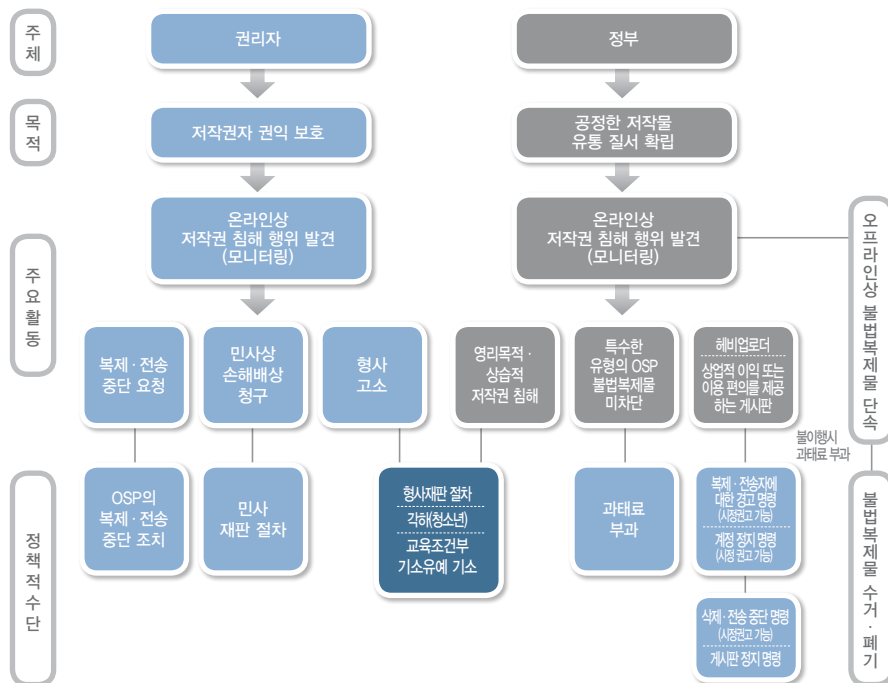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2. 침해 현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강화된 저작권보호정책의 효과로 2011년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8.8%로 전년대비 0.4%로 감소하였으나 저작물 시장규모가 10조 8,153억원으로 전년대비 21%증가됨에 따라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 개로 전년 대비 10.8%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토렌트(torrent)’로 인해 불법복제물 시장이 확대되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재생기기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이 동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라 한다)에서 발표한 <2011 BSA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40%로, 3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불법복제물 유통량	23억 9,602만 개	18억 9,571만 개	21억 27만 개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8조 1,507억 원	8조 9,347억 원	10조 8,153억 원	
합법시장 침해규모	2조 2,497억 원	2조 1,172억 원	2조 4,987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10조 4,005억 원	11조 520억 원	13조 3,140억 원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6%	19.2%	18.8%	
(2) 소프트웨어 분야				
불법복제율 및 피해액(BSA)	한 국	41%	40%	40%
	세 계	43%	42%	42%
	피해액	5억 7,500만\$	7억 2,200만\$	8억 1,500만\$
(3) 저작권법 위반 현황				
위반 현황	인원	89,206	29,356	36,614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생산감소 3조 9,758억 원, 고용감소 3만 6천여 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2-2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규모(2010년 기준)

(단위: 억 원)

산업	생산 감소	고용손실(명)	부가가치 감소	세수 손실	영업이익 감소
음악산업	7,188	8,554	3,951	214	621
영화산업	8,684	10,349	3,303	366	558
방송산업	3,371	1,196	1,469	13	254
출판산업	3,716	3,824	1,322	158	149
게임산업	2,447	1,899	1,249	15	237
콘텐츠산업 합계	25,406	25,822	11,294	766	1,819
기타산업	14,352	9,914	6,205	713	2,249
전체산업	39,758	35,736	17,499	1,479	4,068

아울러,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19% → 10%) 경제적 효과를 보면 음악, 영화 등 전체 콘텐츠산업에서 일자리 1만 7천여 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효과가 1조 8,905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2011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분야 중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은 35.3%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이용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로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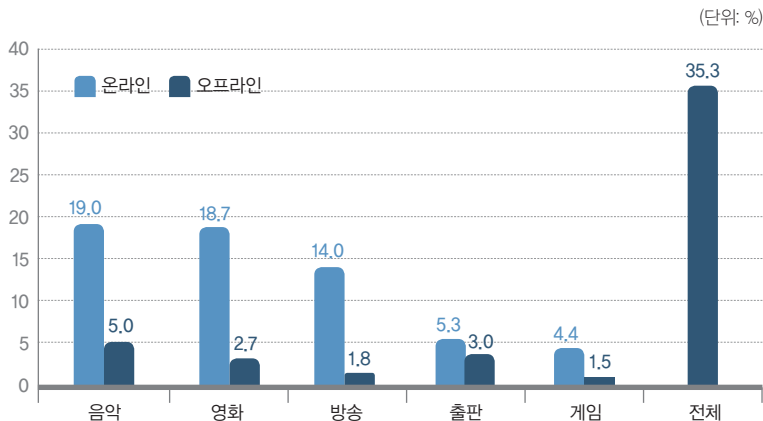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¹¹

2011년도 기준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1억 27만 개로, 2010년 18억 9,571만 개 대비 1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2년

약 17억 9,630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85.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3억 397만 개로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렌트가 29.3%, 포털이 16.4%, P2P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P2P에서 44.6%, 웹하드에서 15.0%, 포털에서 3.6% 가량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제휴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이용자들이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4억 원(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토렌트를 조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량 자체가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0년 46.9%에서 2011년 5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통한 합법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 가격을 지불하고 합법저작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941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5,910억 원, ‘게임’이 약 5,371억 원, ‘출판’이 약 3,800억 원, ‘방송’은 약 1,96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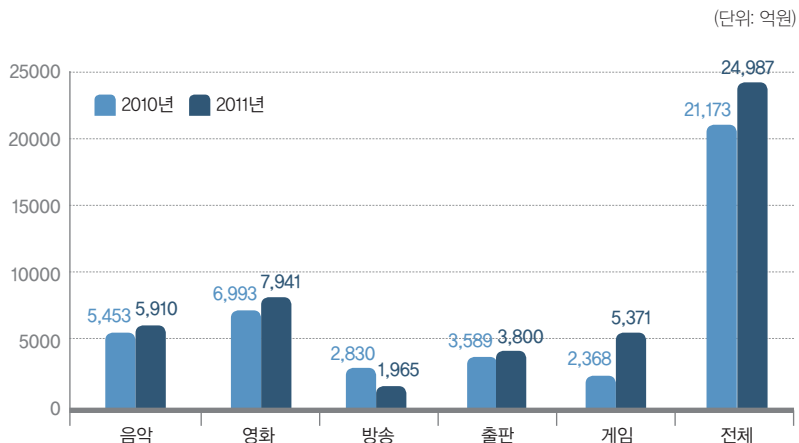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의 83.4%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단위: 억 원)

연도	합법시장 규모	합법시장 침해규모		합 계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의한 침해	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의한 침해	
2009년	81,507	14,251(63.3%)	8,246(36.7%)	22,497
2010년	89,347	17,635(83.3%)	3,537(16.7%)	21,172
2011년	108,153	20,849(83.4%)	4,138(16.6%)	24,987

또한 2011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8.8%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⁵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9년	8조 1,507억 원	2조 2,497억 원	10조 4,005억 원	21.6
2010년	8조 9,347억 원	2조 1,172억 원	11조 520억 원	19.2
2011년	10조 8,153억 원	2조 4,987억 원	13조 3,140억 원	18.8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 대한 침해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2) 소프트웨어 분야

우리나라의 2011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인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의 평균치인 26%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여전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8,900억 원(약 8억 1,500만 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5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불법 복제율 (%)	한국	50	48	46	46	45	43	43	41	40	40
	세계 평균	-	36	35	35	35	38	41	43	42	42
	아시아 평균	-	-	-	54	55	59	61	59	60	60
피해액(백만\$)	428	462	506	400	440	549	622	575	722	815	

12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산출을 위해 <2011년 콘텐츠산업통계>를 참조하였으며, 불법복제를 이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업분야만을 집계하여 산출함

(3) 저작권법 위반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저작권법(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포함)에 의한 저작권 위반 현황(기소, 불기소 등 포함)은 2011년 36,614명으로 2010년 29,356명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전년 대비 18%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자 처리현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총계	기소 (구속)	불기소						소년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송치 (이송)	
				소계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타			
2008	저작권 법	전체	91,683	4,220 (24)	86,174	16,772	12,458	51,348	1,899	3,697	58	1,231
		청소년	21,934	118	21,509	6,056	1,575	11,855	119	1,904	58	249
	컴보법	전체	5,888	3,010	2,828	355	143	2,170	115	45	4	46
		청소년	195	5	184	76	4	97	2	5	4	2
2009	저작권 법	전체	89,206	4,023 (9)	84,252	24,676	24,702	27,150	3,893	3,831	16	915
		청소년	22,200	17	22,132	4,243	13,707	2,936	68	1,178	16	35
	컴보법	전체	3,825	1,264	2,465	365	345	1,546	110	99	1	95
		청소년	333	0	332	83	144	64	0	41	1	0
2010	저작권 법	전체	29,356	3,887 (12)	24,669	5,102	5,447	10,829	2,038	1,253	6	794
		청소년	3,614	3	3,587	150	3,201	152	17	67	6	18
2011	저작권 법	전체	36,614	3,578 (4)	31,373	6,196	6,996	14,244	2,246	1,691	9	1,654
		청소년	4,578	5	4,539	253	4,023	199	12	52	9	25

※ 출처: 대검찰청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1) 개요

정부는 올바른 온라인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저작권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신규 개소하여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다섯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를 시범 운영 하였으며, S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SW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특별사법경찰 사법처리(송치)	539명	1,115명	106.8%
문화체육관광부 과태료 처분	89개 업체	99개 업체	11.2%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750건	457건	△39%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	85,085건	107,724건	26.6%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25건	237개	848%
불법 SW업체 단속	1,161개	1,028개	△11.5%
저작권보호센터 수거·폐기 및 삭제	279,861건 35,190천 점	377,549건 86,607천 점	35% (146%)

(2) 활동 및 성과

1) 저작권 침해 수사

가. 저작권 침해수사 전문화 및 수사기법의 고도화

2008년까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전담하였으나, 2008년 7월 동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저작물 단속까지 업무영역은 확대되었지만 단속 인력과 거점지역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및 음성화·다변화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사범의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부산·광주·대전사무소에 이어 2011년 7월 15일에 다섯번째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대구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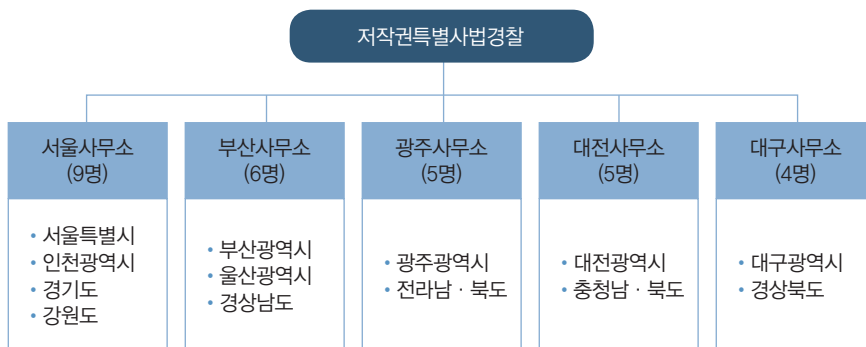


그림 2-5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정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실’을 설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법¹³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불법적인 웹하드·P2P 사업자, 해비업로더, 게시판 운영자 등 상습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 몰수도 강화하였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도 2008년 11명, 2009년 312명, 2010년 539명, 2011년은 1,115명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획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몰수 추정금도 2009년 2,165백만원, 2010년 3,970백만원, 2011년 8,5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가.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개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저작권 범죄 규명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저작권 범죄수사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1월 국내 최초로 저작권 분야에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관 및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¹³ 포렌식(Forensic) 기법은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현재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 등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불법적 활동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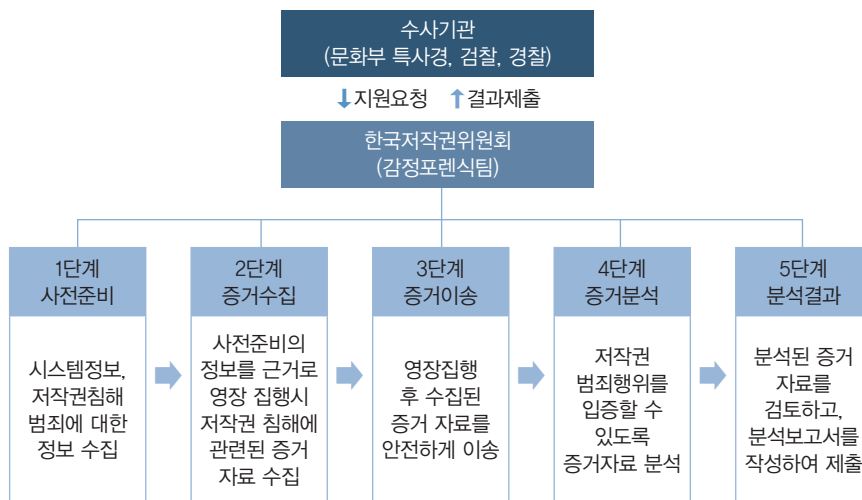


그림 2-6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나.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확충

웹하드나 헤비업로더 등의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하에서 대용량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포렌식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구축한 바가 있다.

2011년에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범죄 포렌식 전담조직을 2010년 9명에서 2011년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Pool을 대폭 강화하여 하이테크 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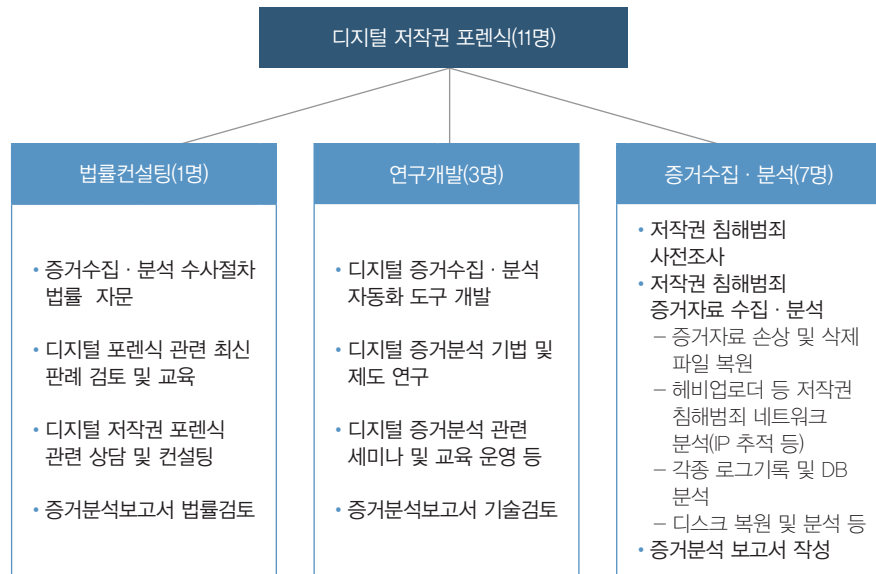


그림 2-7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 포렌식 전담조직 구성도

또한, 2011년 3월 10일 대검찰청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학술연구와 교류, 첨단과학수사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상호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월에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수사력 보강을 위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포렌식학회와 각각 MOU를 체결하였다.



그림 2-8 대검찰청, (사)한국포렌식학회



그림 2-9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 체결

다.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 분석 수사지원체계 운영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업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94건에서 2011년 291건으로 309% 급증하였다. 2010년 저작권 포렌식 수사에서는 불법게임물 판매 쇼핑몰(10년, 12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위해 홈페이지 분석 및 쇼핑몰 운영자 IP 추적을 통해 불법게임 판매자 17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증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 사이트 기획수사를 통해 204건의 수사지원을 수행하였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통한 저작권료 편취금액 186억원을 최초 입증, 웹하드 업체 대표 5명 구속, 불구속기소 27명, 범죄수익금 85억원을 몰수 · 추징하였다.

표 2-8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기타	계
	본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소계			
사전조사	2	18	6	2	4	1	33	0	4	37
증거수집	0	3	4	12	3	0	22	40	0	62
증거분석	0	7	4	12	1	2	26	164	2	192
11년	2	28	14	26	8	3	81	204	6	291
10년	-	18	39	17	20	-	94	-	-	94

라.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 분석 자동화도구 개발 및 연구

웹하드, P2P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저작권 콘텐츠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권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획득과 수집된 정보의 검색, 복구 및 분석 등 효율적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 분석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였다.

2010년 1차년도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업자로부터 불법저작물과 관련된 DB정보, 시스템로그, 웹 소스코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증거수집도구’와 증거자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해비업로더를 검출하고,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현금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자동화 구현으로 업무 시간 단축 및 업무 부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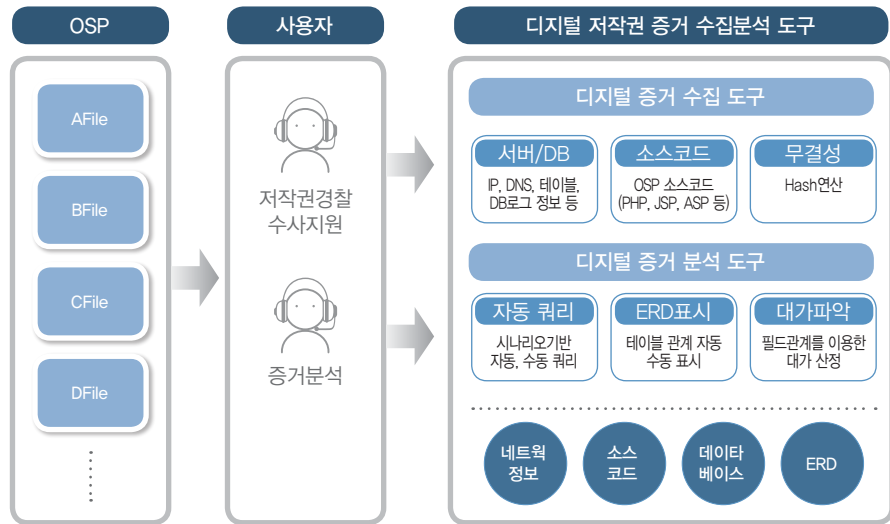


그림 2-10 1차년도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구성도

2011년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도구의 기능 보완과 함께 범죄 일람표 및 범죄 수익금 산출을 자동화하는 등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750건, 2011년에는 457건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표 2-9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구 분	시정명령 처분내용	온라인서비스	조치건수
		제공자 수	
2010년	경 고	40	696
	삭제 또는 전송중단	5	43
	계정정지	3	11
	합 계	48	750
2011년	경 고	15	220
	삭제 또는 전송중단	15	220
	계정정지	4	17
	합 계	34	457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0년 89개 업체에서 2011년 99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표 2-10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 분	건 수	과태료 금액(백만원)
2008년	80	674
2009년	88	740
2010년	89	753
2011년	99	1,034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첫 통합저작권법에 의한 시정권고 업무를 시작하여 35,345건의 권고조치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85,085건을, 2011년에는 107,724건을 실시하였다.

표 2-11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구분	연간 실적	시정권고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9년	합계	35,345	13,466	21,840	39
	웹하드	33,644	12,612	20,995	37
	P2P	773	579	194	-
	포털 등	928	275	651	2
2010년	합계	85,085	42,794	42,200	91
	웹하드	82,413	41,458	40,864	91
	P2P	2,140	1,070	1,070	-
	포털 등	532	266	266	-
2011년	합계	107,724	54,504	53,106	114
	웹하드	101,359	51,282	49,963	114
	P2P	1,041	522	519	-
	포털 등	5,324	2,700	2,624	-

또한,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운영을 통하여 권리자 신고 또는 일반인 제보 민원을 받아 시정권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는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데 2011년 시범운영 6개월 기간 중에만 13,20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시정조치로 이어졌다.



그림 2-11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저작권 침해가 심한 불법사이트에 25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에는 토렌트¹⁴ 사이트, 스마트 기기 앱과 출판 분야 불법 사이트 등 237개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요청을 확대하였다.

표 2-12 연도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단위 : 사이트 수)

구분	영상·음악	게임	기타	합계
2010년	2	23	-	25
2011년	176	53	8	237

4) 소프트웨어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가. 불법 SW 단속 및 컨설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공공기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SW불법복제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W관리 소홀 및 의식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SW관리 가이드와 점검용 프로그램 배포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무료로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670여개 기업체,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받았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될 경우 해당 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3년까지

14 토렌트(Torrent):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SW의 이름이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며, 500여 개의 토렌트SW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1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GDP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7천 8백억 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3 연도별 민간부문 SW단속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단속업체수	2,005	809	1,161	1,028	
적발	업체수	1,446	626	735	687
	입건	1,286	536	604	619

표 2-14 연도별 공공부문 SW점검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점검
	자체점검	실사점검	자체점검	실사점검	자체점검		
					상반기	하반기	
기관수	736개	72개	1,862개	461개	2,870개	2,572개	3,0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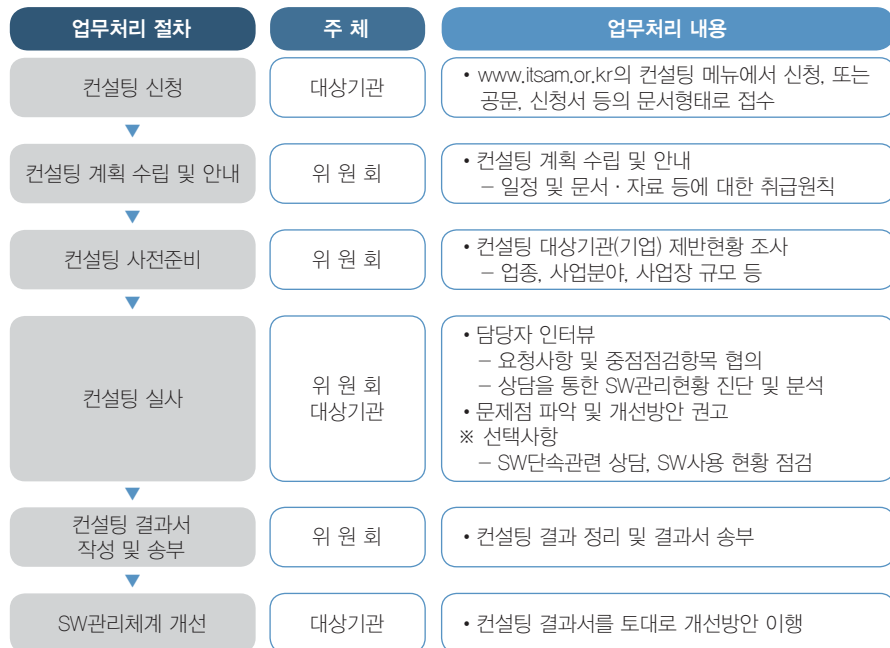


그림 2-12 컨설팅 업무처리 절차



그림 2-13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SW관리체계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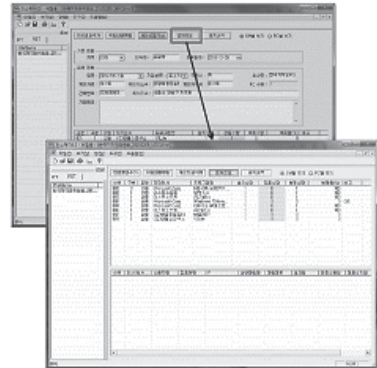


그림 2-14 SW관리 점검도구(www.itsam.or.kr)

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발행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였다.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의 내용에는 라이선스 정의, 관리 절차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서약서도 참조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무료와 유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				
본 자가 점검표를 통해 각 소프트웨어 관리 요소에 대해 1단계~5단계 평가 실시 가능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SW 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책임자 및 임원층의 자정제 운영 및 교육 여부	SW 관리 부서/팀 조직 구성 여부	책임자로 임명된 SW 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개인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임원층의 교육 여부
SW 구매 책임자 지정 여부	SW 구매시 고위 임원 참석하여 결정 통로 여부	SW 구매 예산 예산의 반영 여부	추가 필요 SW의 구매 계획 수립 여부	지적 재산권 관리 준수 사항 여부
임직원들에게 정기 교육 실시 여부	반드시 SW의 분류 및 관리 여부	OEM/ODM OS의 경우 라이선스 관리 여부	SW 보유 내역 파악 여부	필요 SW의 예산 편성 여부
임직원 대상의 정기적인 업무 만족도/만족도 설문 여부	주요 부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 여부	필요 라이선스/비즈니스 사용 가능한 SW 목록 작성 여부	부서/팀별 SW 보유 현황 파악 여부	평가 요소 조사 및 평가 기준 수립 여부
	필요 SW 사용 상세 관리 여부	각종 계약서에 평가 항목 포함 여부		본 기관 대상의 정기 교육 여부
				각종 문서의 주기적인 갱신 여부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흐름		
1. SW 관리 부서/팀 지정	2. SW 관리 예산 반영	3. SW 관리 담당자 지정
4. SW 구매 책임자 지정	5. SW 구매 예산 반영	6. SW 구매 승인
7. SW 보유 내역 파악	8. SW 보유 현황 파악	9. SW 보유 현황 파악
10. SW 보유 현황 파악	11. SW 보유 현황 파악	12. SW 보유 현황 파악

그림 2-15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좌)
그림 2-16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는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를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수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시 대처 방법과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는 www.itsam.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제공용 앱(App) 개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제공용 애플리케이션(알소라;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발된 앱은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올바른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다.

‘알소라’는 국내·외 주요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와 적용방법,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Q&A 기능 등을 iPad, 갤럭시탭 기반으로 제공한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제공용 애플리케이션(알소라)을 활용 한다면, 손쉽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림 2-17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좌)아이폰
그림 2-18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우)아이패드

5) 스마트 기기를 통한 침해대응 강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마트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2.5\%$ p)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스마트 기기 앱 개발사 및 관련 업체 담당자(3년 이상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둘째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며, 셋째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넷째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웹하드·P2P가 불법의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 보호 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삭제중단 요청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은 26만 9,409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2010년에 초대형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단속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었던 원인도 있다. 한편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중단 요청 실적은 86,338,298점으로 전년 대비 151%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택 모니터링 요원 확대 및 인기 저작물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추진 등으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16,240	1,220,551	28,993	2,039,991	79%	67%
	영상	221,382	2,436,669	277,559	2,705,055	25%	11%
	출판	7,929	20,244,886	22,466	28,048,143	183%	39%
	게임	28,969	168,579	25,958	179,672	▽10%	7%
	만화	3,888	10,324,682	16,430	53,337,106	323%	417%
	SW	-	-	5,069	28,331	-	-
	소계	278,408	34,395,367	376,475	86,338,298	35%	151%
오프라인	음악	310	458,522	150	41,227	▽52%	▽91%
	영상	430	310,355	435	211,491	1%	▽32%
	출판	704	18,902	489	16,541	▽31%	▽12%
	게임	9	6,529	-	150		▽98%
	소계	1,453	794,308	1,074	269,409	▽26%	▽66%
합계	279,861	35,189,675	377,549	86,607,707	35%	146%	

(3) 평가 및 전망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10년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가 1조 4,195억 달러 수준으로 2015년에는 약 31.8% 증가한 1조 8,705억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¹⁵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세계 9위로 약 338억 달러 가량이며, 이는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27.8%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해마다 크게 성장하는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¹⁵ PwC (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11-2015"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계정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전송자(헤비업로더)에 대한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개설과 폐쇄를 반복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단속을 피하는 일명 ‘떡튀 웹하드’의 성행을 막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4년 연속 USTR의 WL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 8월 영국의 유명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을 불법복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평가¹⁶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의 약 83%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¹⁷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고, 모바일 앱 또한 매일 1천개 이상 추가 되고 있으며, 누적 앱 개수만 100만개를 돌파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기기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한 콘텐츠 불법복제의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¹⁸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인 21.6% 수준으로 앱 또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¹⁶ <http://www.economist.com/node/21526299>

¹⁷ 2010, 2011,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¹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2011.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 매체(N-Screen)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는 PC 환경을 넘어 토렌트¹⁹, 블랙마켓²⁰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1)〉 결과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2010년 기준 19.2%에서 10.1%로 축소시킬 경우 국내의 전체 생산은 1.9조원, 고용은 1.7만명, 부가가치는 0.8조원, 세수가 706억원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9.2%→10.1%)에 따른 경제적 효과²¹

(단위: 억원, 명)

산업	생산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영업이익 유발효과	세수증대 효과
음악산업	1,447	497	636	108	6
영화산업	4,069	4,852	1,549	261	172
방송산업	2,008	2,066	714	81	85
출판산업	3,107	3,701	1,712	268	93
게임산업	1,373	1,066	701	133	8
콘텐츠산업 합계	12,003	12,182	5,311	851	364
기타산업	6,902	4,775	2,974	1,078	341
전체산업	18,905	16,957	8,284	1,929	706

즉, 국내의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할 경우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19 토렌트(Torrent) :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 · SW의 이름이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0 정식 앱스토어에서 등록이 거부된 앱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된 유료 앱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apptrackr.org, appplanet.net, appcake.com 등)

21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1)

특히 음악, 영화 등의 분야는 고용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국내의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 및 침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24시간 틈새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유형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택 온라인 모니터링, 국민오픈 모니터링, 저작물 실버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확충, 기술발전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체계 전문역량 강화, 저작권 침해 감시·조치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인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류가 웹하드 등에서 토렌트(Torrent) 등 보다 단속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꾸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1) 개요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시작된 ‘한류’는 2010년 들어 K-pop을 중심으로 제2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문화산업 시장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와 유통으로 인해 콘텐츠 수출 저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산업의 세계 시장 확대와 경제적 수익 향상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문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차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와 합법 유통 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시장 저변 형성을 위한 현지 정부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 분위기 조성, 저작권 시장 현황 조사 등 정부의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권리자 단체와 개별 업체 스스로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간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합법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류 진출 및 시장 확대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 지원, 현지 합법유통 환경의 조성, 국제 저작권 정책 협력 강화’ 등 중점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글로벌 저작권 협력 체계 구축, 합법 유통 구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운영과 해외 보호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6년 4월 중국 북경,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요 한류 지역에 대한 보호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중국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 파견,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시장 진흥을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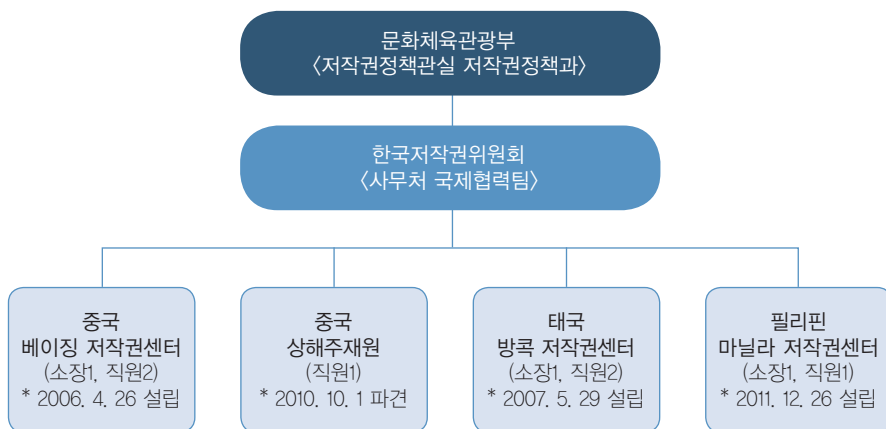


그림 2-1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상담에서 구제조치 지원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의 침해실태 파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 정보를 해당 콘텐츠 업체에 제공하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협의를 통해 경고장 발송과 현지 정부에 행정처벌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 우리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주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2011년에는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중국, 태국 정부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특히, 필리핀 마닐라저작권센터가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동남아에서의 저작권 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넓혀나가게 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중국과의 저작권 계약 지침서인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와 ‘말레이시아 저작권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상시적인 각국 저작권 관련 동향 및 전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현지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2012년에도 한류의 중심 지역이자 합법 유통환경 조성이 시급한 동남아 지역에 추가로 해외저작권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향후 남미 등 새로운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를 확대하여,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과 합법적인 저작권 거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현지 침해 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정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시 법률지원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해왔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던 해외 법률상담은 2011년 전년대비 113% 급증함으로써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으며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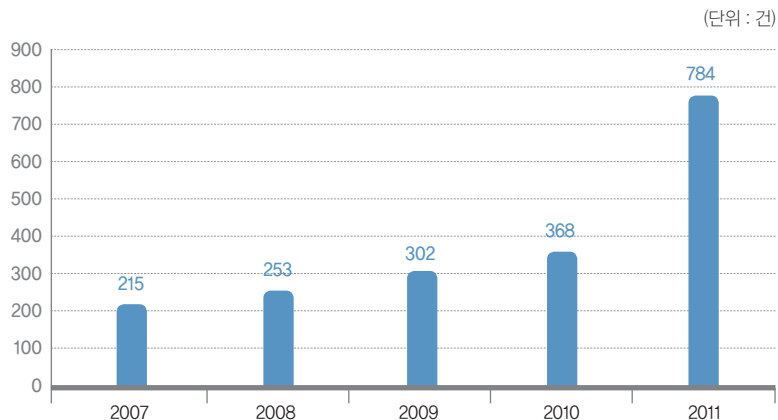


그림 2-20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이와 함께,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현지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 침해 정보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2008년부터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행정처벌 신청 등 2011년까지 총 695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 TV 서버,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침해 대응 효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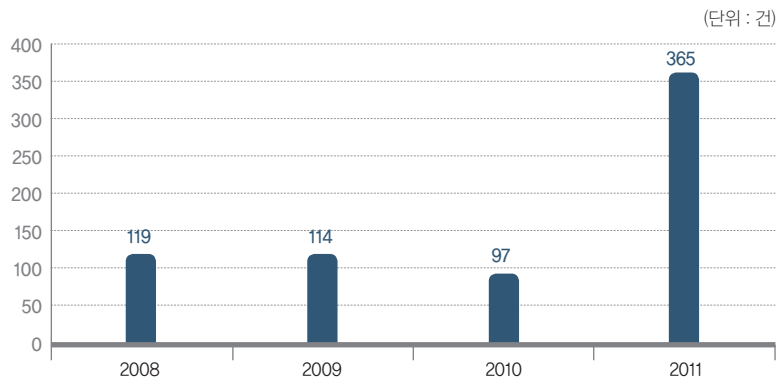


그림 2-21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특히 2011년부터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침해대응 조치와 함께, 중국내 불법저작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판권보호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주요 한국콘텐츠 침해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영화 ‘아저씨’,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등 17개 작품(200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총 1만 1,145개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조치하였다. 2012년에는 영화, 드라마는 물론 사진, 만화, 서적 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 단체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현지 침해 공동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3사, 게임·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의체’를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한 유통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 콘텐츠 업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현지 수권계약 확인, 미수권 저작물의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지난 5년간 해외 침해에 대한 현지 법률컨설팅과 유통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침해대응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한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을 통한 정부와 권리자들의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최대 91%에 이르던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유통비율은 2011년에는 24.7%로 크게 낮아졌으며, 영화의 경우도 같은 기간 불법유통비율이 약 20%p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체 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저작물의 합법유통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중국 내 권리인증을 통한 이용계약 활성화와 침해 구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자 정보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정보 확인 신청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해 권리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인증의 경우는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TV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 내용을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권리확인 증빙 서류다. 한국 작품의 경우,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그 증빙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이 같은 베이징저작권센터의 권리인증 업무는 신속한 인증서 발급에 따른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가능케 하고,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을 지원함은 물론, 음상제품의 현지 출판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해줌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베이징저작권센터를 통한 우리 저작물의 권리인증 및 라이선스 정보 확인 작품 부수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에는 2,571건의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확인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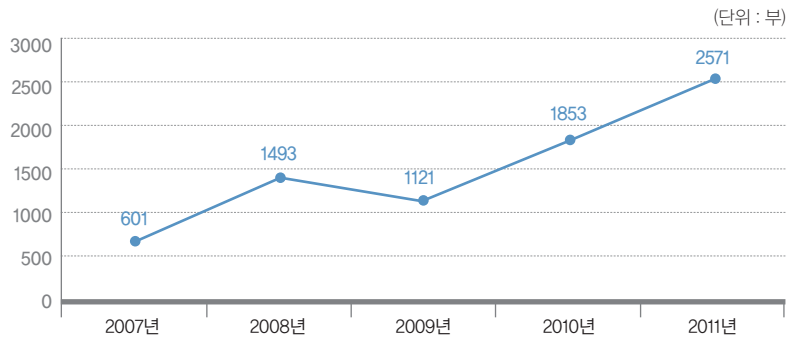


그림 2-22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은 해외에서의 우리 권리 보호에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 다행히 정부와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저작권 보호 정책과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USTR의 WL 명단에서 연속 제외되었고 한국은 이제 세계로부터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위상 변화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과거 수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국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에 7회를 맞은 한중 저작권 포럼(6월)과 3회째를 맞은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을 통해 한·중, 한·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한필리핀,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당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였다.

국가간 교류협력과 더불어 2007년부터 WIPO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WIPO

STUDY VISIT²² 프로그램은 2011년 6개국 10명으로 대상국가와 참가자를 확대해 기존의 동남아 국가는 물론 멕시코, 자메이카 등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제도의 전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국제적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은 2011년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북경, 상해, 방콕 등에서 개최한 각종 현지 저작권 설명회와 음악회, 홍보활동 등은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2-23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
(2011. 6.)



그림 2-24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2011. 7.)



그림 2-25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2011. 8.)



그림 2-26
2011 서울저작권포럼
(2011. 10.)



그림 2-27
2011 WIPO STUDY VISIT
(2011. 11.)



그림 2-28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
(2011. 12.)

2011년 국제 교류협력

22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매년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011년 5회를 맞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선진 법제도 경험을 전수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5) 해외 저작권 정보 제공 확대



그림 2-29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침해 예방 등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정보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http://www.koreacopyright.or.kr>)’를 구축한 이후 다양한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와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해외 각국의 저작권 가이드 정보 제공 국가를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780여건의 해외 저작권 동향 및 전문자료와 260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 디자인 및 UI의 전면 개편과 메뉴 통합 등 사이트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는 우리 저작권 해외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미국,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정보와 온라인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어 및 영문 사이트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에게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 및 주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신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콘텐츠 산업에 기회인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한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수준이 미흡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불법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럽과 미국, 중남미로 퍼져 나가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유통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인 보호와 합법이용의 확대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저작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한류 국가에 대한 현지 불법유통 실태 파악 등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호적인 해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저작권 후발 국가에 대해서는 문화상생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 제도를 전파함으로써 한류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개요

저작자가 존중받고 고품격 저작물이 원활하게 유통, 소비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나 IT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교육 강화 사업은 크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과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2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교육 과정 운영은 크게 침해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특화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920,350명을 교육했고, 저작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원격 교육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국민 참여형 공모전 등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으로 전개되어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2. 교육 활동 및 성과

(1) 침해 예방교육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그리고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 청소년 교육

가.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일정 시간(6시수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2-30, 31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08년 79개 교실, 2009년 117개 교실, 2010년에는 전국 198개 교실로 점차 확대 운영하다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1년에는 전국 99개 교실을 운영했다.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는 사전 연수에 참가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초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부터 체험교실 우수 운영 교사를 선발하여 다음해 신규 운영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교사는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한 다양한 저작권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운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원활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표 2-17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교실 수		20개	20개	79개	117개	198개	99개	533개
교육	학생	921명	763명	3,479명	4,095명	10,669명	5,827명	25,754명
인원	교사	20명	20명	80명	120명	151명	79명	470명

나.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저작권 연구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방법 및 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수도권 15개교(총 12,050명)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교(총 18,441명)로 확대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학교도 전국 10개 시·도 27개교(총 22,680명)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50개교(총 42,923명), 2011년에는 43개교(총 36,120명)를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표 2-18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학교수	15개교	23개교	27개교	50개교	43개교	158개교	
교육 인원	학생	12,000명	18,400명	21,600명	42,856명	34,400명	129,256명
	교사	50명	41명	1,080명	67명	1,720명	2,958명
	합계	12,050명	18,441명	22,680명	42,923명	36,120명	132,214명

저작권 연구학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교사 사전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구학교 운영 방법,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전달하고 있다.

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2-1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교육인원	14,265명	74,938명	254,130명	294,035명	637,368명
교육횟수	19회	130회	2,028회	3,008회	5,185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32, 3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수준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지수는 2010년 71.1점에서 2011년 73.8점으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저작권 지수는 76.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3.1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0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저작권 지수	71.1점	73.8점
저작권 인식지수	74.9점	77.4점
저작권 의식지수	67.4점	70.2점

- ※ 저작권 지수 : 저작권 인식지수 + 저작권 의식지수
- ※ 저작권 인식지수 : 올바른 저작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산출 지수
- ※ 저작권 의식지수 : 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 가치판단에 대한 산출 지수

라.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2011년 6월부터 상시 무료로 운영 중인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저작권과 친구될래요’는 2011년 첫해에 804명이 수료하였다.

이 과정은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수준별 저작권 학습이 가능하도록 초등 저학년용과 초등 고·중등학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3차시로 교육기간은 3일이다.

2) 성인 교육

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성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국회공무원,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자단, 포털사이트 내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2-2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교육인원	7,340명	19,039명	28,726명	21,473명	76,578명
교육횟수	103회	244회	431회	403회	1,181회

한편, 2010년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내용을 방송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에 관한 국민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저작권 교육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대학가에서 논문, 리포트 베끼기와 같은 지식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생이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0년에 361명, 2011년에 258명이 수료하였다.

다.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이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부터 운영하였다. 특히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문제 해결과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라는 상시 무료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정말 쉽네요 ▲저작자를 존중해요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등 초·중등 학부모 대상으로 각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별 1차시당 20분이 소요되며 교육기간은 3일이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개설 첫 해인 2011년에는 329명의 학부모가 수료하였다.

3)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²³. 특히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상, 어문 등의 저작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다운로드 받은 소설파일을 블로그에 올려 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폐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 근거제도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 교육명칭 : 저작권 지킴이 연수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 검찰청
- 근거조항
 - 청소년 :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보호 지침
 - 성 인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그림 2-34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개요

23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단속활동을 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받는 피의자 속출하고 있다.(한겨레, 2007/10/11)

24 현행법의 빈틈을 악용한 콘텐츠 업체와 법무법인이 교사를 상대로 한 물지마시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전자신문, 2009/7/1)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저작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운영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재범률을,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저작권법의 취지 중의 하나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권리보호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양질의 저작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 저작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켜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합법시장 성장 효과로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작을 장려한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교육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고, 침해자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에는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를 통해 2,657명(성인 2,581명, 미성년자 76명)을 교육시켰다.

한편, 청소년은 초범인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동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2월까지 매년 1년씩 연장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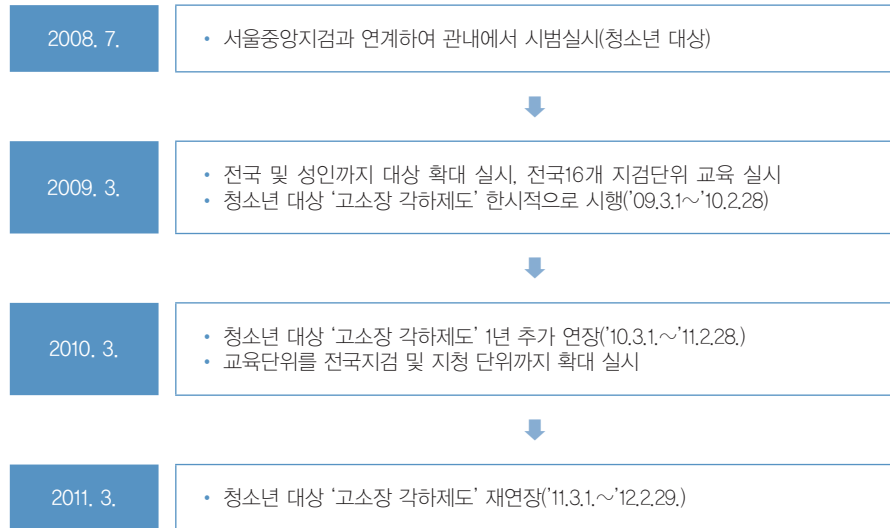


그림 2-35 저작권 지킴이 연수 진행 과정

표 2-22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교육의뢰 건수	성인	-	9,551	3,335	3,473	16,359
	미성년자	171	332	55	82	640
	소계	171	9,883	3,390	3,555	16,999
교육이수 인원	성인	-	7,492	3,397	2,581	13,470
	미성년자	161	320	47	76	604
	소계	161	7,812	3,444	2,657	14,074

(2) 전문인력 양성 교육

1) 예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관련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체계적인 입문자 과정으로, 지난 21년간 1,921명의 저작권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저작권법,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및 실무 특강 등 종합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과정과 단기·야간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54시간, 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하고,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전문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35시간, 주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하여 3주 35시간(주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표 2-23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수료인원	178명(4회)	182명(7회)	69명(3회)	61명(2회)	490명(16회)



그림 2-36, 37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2) 현장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 아카데미는 저작권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현장 인력의 저작권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법제 및 실무, 사례 위주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음악, 출판, 법무종사자, 방송, 사서, 공무원 등 10개 분야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과정별 20명 내외의 정원으로 2~3일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24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수료인원	259명(10회)	250명(12회)	202명(10회)	287명(11회)	998명(43회)

또한 2010년에는 원격교육연수원(www.edu-copyright.or.kr)을 개소하여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러닝 저작권 교육을 함께 운영하였다.

인터넷에 기반한 온라인 저작권 산업종사자 과정은 2010년에 음악, 출판, 인터넷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소프트웨어, 게임, 방송 종사자, 저작권 개요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확대하여 총 7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10년 675명, 2011년 77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저작권 산업종사자 과정은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공공분야의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차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임직원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3) 저작권 강사 양성·운영

가. 온·오프라인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교원직무연수’는 교사가 먼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으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원직무연수는 연 2회(하계, 동계) 5일(30시간) 과정으로, 회차당 4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료 시 2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저작권 제도 개요, 저작권 침해 및 분쟁 해결 방안, 저작권과 인용법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는 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는 2007년 1,209명(1회), 2008년 2,727명(5회)를 교육하였고, 2009년 3,305명(7회), 2010년에는 3,308명(12회), 2011년에는 10,526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는 2010년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저작권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의 후속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총 1,74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표 2-25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오프라인	75명	76명	79명	79명	309명
온라인	2,727명	3,305명	3,308명	10,526명	19,866명

나. 저작권 강사 양성(청년강사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저작권 강사를 양성·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강사’ 및 ‘청년강사’로 분류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저작권 강사는 저작권 기본 교육과 강의 기법 등 맞춤형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2010년에는 교육수요가 급증(2009년 540회 → 2010년 2,632회, 487% 증가)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를 저작권 강사로 위촉하여 전문 교수인력풀을 보강하였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 및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저작권 청년강사를 양성하였다. 저작권 청년강사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했다. 2011년 저작권 청년강사는 4차례 양성을 통하여 총 83명이 활동하였다.

표 2-26 저작권 강사 위촉현황

(2011년 기준)

구분	전문	입문	청소년	청년	계
인원	73명	194명	63명	83명	413명

3. 교육 인프라 구축

(1) 콘텐츠 개발

1) 청소년 교육 콘텐츠 개발

가.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및 반영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 사회, 도덕, 실과, 미술 과목에 대한 교과내용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교과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 일정에 맞춰 추진했고, 2011년에는 중등 국어, 도덕 등 6개 과목을 분석하여 정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저작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표 2-27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연도	연구 과목	대상 학년
2006	사회, 도덕(윤리), 실과(기술, 가정), 미술	4~12학년
2007	국어, 음악	1~10학년
2008	실험본(국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초 1·2학년
2009	실험본(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 국어, 사회)	초 3·4학년
2010	실험본(국어, 도덕, 사회)	초 5·6학년
2011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 정보 및 컴퓨터	중 1~3학년

표 2-28 교과내용 반영 현황

구분	과목	반영 쪽
국·국정도서(초등)	국어·도덕 등 14개 과목	357쪽 반영
검정도서(중등)	기술·가정 등 30개 과목	709쪽 반영
국·국정도서(초등)	국어·도덕 등 31개 과목	290쪽 반영
계	75개 과목	1,356쪽 반영



그림 2-38, 39 교과내용 반영 사례

나. 유아대상 창작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보급

유아들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바른 인성 형성 차원에서 유아 때부터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 유치원에서도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DVD로 개발하여 전국 국·공립 유치원 약 4,500개 원에 배포하였다.

콘텐츠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몬스터 숙제공장의 비밀’ 등 창작동화(3편), 동요(2편), 동시(2편)까지 총 7편으로 제작하였고, 유치원 교과과정에 맞춰 10~11월 생활주제인 ‘생활과 도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수록하였다.



그림 2-40, 41, 42 유아 대상 콘텐츠

다. 저작권 뮤지컬 콘텐츠 제작·보급

저작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보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의 ‘뮤지컬’이라는 공연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0년에 서울·인천 지역 2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회(8,125명 관람) 공연을 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저작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 5개 광역시(대구, 대전, 울산, 부산, 광주)의 47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7회(10,273명 관람) 공연을 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극본 공모전을 통해 뮤지컬 콘텐츠를 선정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작가 등 일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림 2-43 저작권 뮤지컬 공연 현장

2) 성인 교육 콘텐츠 개발

성인 교육 콘텐츠는 2011년도에는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개발되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실무 사례 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원 대상 콘텐츠는 2009년 1종(60차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변경된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요인을 반영하여 2011년 1종(60차시)을 추가 개발하였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저작권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웹 접근성 정책 지침을 반영하고, 콘텐츠의 확장성·재활용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인 SCORM2004를 준수하였다. 또한 교원직무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이러닝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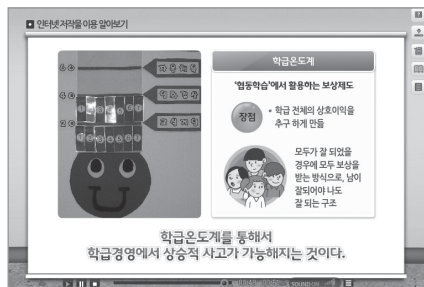


그림 2-44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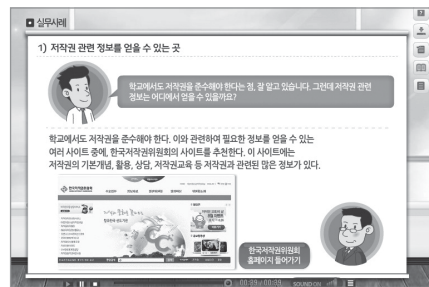


그림 2-45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교원 대상 콘텐츠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과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러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콘텐츠(2종)를 2011년에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저작권 교육기회를 확대 하였다. 교원용 모바일러닝 콘텐츠(15차시)는 학교현장의 실무 사례를 상황별로 체계화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콘텐츠 품질인증(이러닝 품질인증 제2011-D188호)도 취득하였다. 일반인용 모바일러닝 콘텐츠(15차시)는 세부적인 실천 사례, 판례 등 생활 속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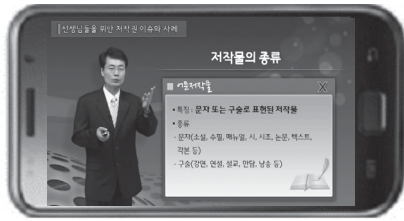


그림 2-46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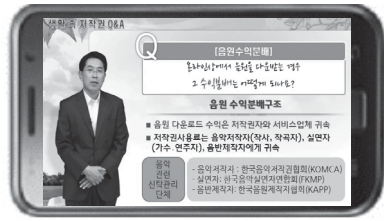


그림 2-47 생활 속 저작권 Q&A(일반인용)

모바일 러닝 콘텐츠

(2) 시스템 구축 · 운영

1) 저작권 교육 포털사이트 운영(portal.edu-copyright.or.kr)

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저작권교육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ne-Stop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교원, 일반인, 청소년 등 교육대상 별로 구축되어 있는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의 교육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한 통합DB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웹 표준 및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이 편리한 교육 사이트가 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2-48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

2)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구축 · 운영

2009년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저작권 원격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는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고,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개선하며, 하드웨어 장비이중화, 사이트 UI 개편 등 원격교육시스템 1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는 교원과 일반인 대상 접속 페이지를 분리하여 대상별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이원화를 추진하여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2-49, 5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3) 저작권교실 사이트 운영(youth.copyright.or.kr)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07년 1월 ‘청소년 저작권 교실(1318.copyright.or.kr)’ 사이트를 오픈하였는데, 2011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로 개편하여 서비스하였다.

동 사이트는 매년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탑재하고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활용법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학습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에서 중요한 학습 공간이자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9 저작권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방문자수	94,152명	397,353명	514,819명	318,390명	328,584명	1,653,2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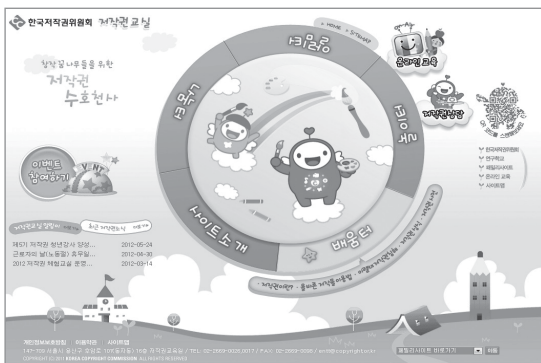


그림 2-51 저작권교실 사이트

4) 모바일 웹 교육과정 구축 및 시범 운영

시간과 장소 및 네트워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러닝 서비스 체계를 2011년에 구축하였다. 모바일 러닝 서비스에는 기존 이러닝 학습과 연동해 실시간 학습, 토론참여, 수료결과 확인 등이 가능하며, 교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개의 모바일 러닝 과정이 서비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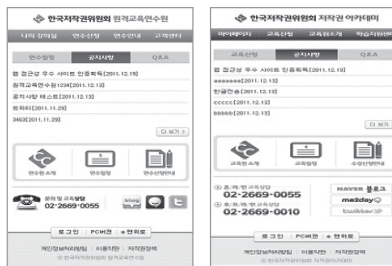


그림 2-52, 53 모바일 러닝 교육 과정

교원 대상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저작권 이슈와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인 대상 ‘생활 속 저작권 Q&A’ 과정은 일상생활 속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Q&A형식으로 구성하여 어려운 저작권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바일 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4. 저작권 홍보 활동

(1) 체험형 저작권 홍보 ‘우리스타 방위대’ 운영 – 드림콘서트, 여름캠프

2011년 4월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 대중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수 팬클럽 회원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저작권 체험단 ‘우리스타 방위대’를 구성하였다. ‘우리스타 방위대’는 창작의 소중함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8개월간 2차에 걸쳐 선발된 총 182명의 ‘우리스타 방위대’는 매월 저작권 교육, 문화 콘텐츠 제작현장 탐방 및 문화체험, 저작권 실천과제(미션) 수행, 가두캠페인, 자원봉사 등의 저작권 체험활동을 한 후 SNS 및 개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널리 알렸다. 그러한 SNS 활동은 ‘저작권 지키기 서명이벤트’로 응집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서명 참여인원이 무려 총 107,209명에 이르는 등 대중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였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연합콘서트인 ‘드림콘서트’와 연계한 대규모 저작권 캠페인 행사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보이 저작권 퍼포먼스, 깃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저작권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1만 여명의 관객이 동참하는 ‘우리스타!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와 저작권 캐릭터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 노출 이벤트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우리스타 방위대와 일반 국민들이 함께한 저작권 여름캠프에서는 저작권 홍보대사로 인기가수 ‘김범수’를 위촉하고 인기 아이돌가수인 티아라, 인피니트 등과 함께 저작권 체험행사를 펼쳐 언론 노출을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림 2-54, 55 드림콘서트와 연계한 저작권 캠페인



그림 2-56, 57 저작권 여름캠프



그림 2-58, 59 저작권 홍보대사(김범수)가 참여한 우리스타 방위대 우수활동 시상식

(2) 공모전 및 각종 대회 개최

1)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의 저변확대와 진취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은 저작권의 학문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거 지식재산연구원의 산업재산권 분야와 분리하여, 저작권 분야만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총 43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김이수 학생 외 2명의 'Bitto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 방안'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학생, 대학원생 각 부문별로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7편을 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비롯하여 해외 저작권 연구동향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저작권기관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림 2-60 논문공모전 시상식



그림 2-61 논문공모전 수상자 해외연수

2) 제7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물 창작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체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다. 2011년 제7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는 총 3,747명이 출품하였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하나고등학교 김현우 학생의 '소중한 경험'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초·중·고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79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림 2-62, 63 글짓기대회 시상식



(3) TV 및 인터넷 활용 홍보 캠페인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이 즐겨보는 지상파 퀴즈프로그램인 ‘퀴즈 대한민국’과 ‘도전 골든벨’에 총 5회에 걸쳐 저작권 문제를 제공, TV로 방영함으로써 퀴즈를 풀어가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작권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저작권보호의 날 특집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완전정복’ 퀴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EBS를 통해 방영하는 등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지상파 TV를 활용하여 저작권 홍보를 추진하였다.

그 외에 저작권보호의 날(매월 26일)을 맞아 7개월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체 참여건수가 총 153,540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0년 87,656건에 비하여 1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2-64 저작권 보호의 날 온라인 캠페인

(4) 저작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 참여한 홍보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저작권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작곡하고 저작권 홍보대사인 가수 김범수가 부른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은 저작권 캐치프레이즈 등 단순한 구호와 리듬으로 제작되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친숙한 의식을 심어주었고 2종의 저작권 포스터도 제작하여 다수의 홍보처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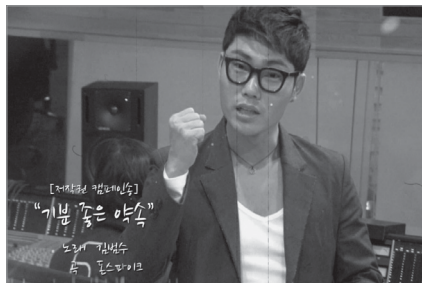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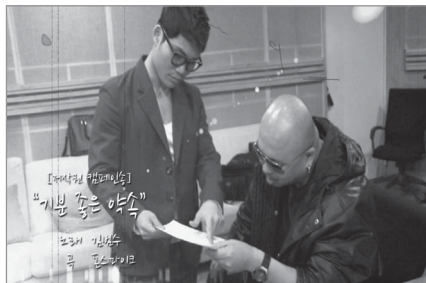


그림 2-65, 66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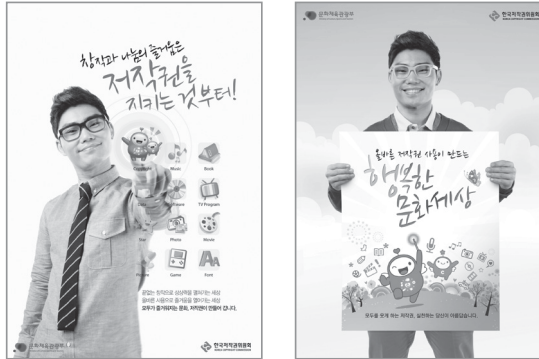


그림 2-67, 68 저작권 캠페인용 포스터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뉴미디어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이전에 개발하였던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을 리뉴얼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리뉴얼은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하는 UI(User Interface)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글자 크기 조절, 콘텐츠별 검색기능 등 전면적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집약하여 ‘저작권 포털 앱’으로 콘텐츠를 재정비하였다.



그림 2-69, 70, 71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규제와 단속이라는 저작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문화 창작과 지식 나눔으로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의 긍정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대중들에게 저작권 최신 소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월간 ‘저작권 문화’를 발행하고 있다. 2011년 7월, 월간 ‘저작권 문화’는 대중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기법을

도입하고 ‘기획 취재’를 강화하는 등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출품하게 된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²⁵(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의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림 2-72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의 사보부문 ‘대상’ 수상

5. 평가 및 전망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 다양한 스마트 환경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의 주요 이용 목적이 웹서핑(87.6%)에 이어 음악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가 2위로 조사²⁶될 만큼 저작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인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교육을 체계화하여 대상별, 계층별로 고도화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드림콘서트 등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매년 연장 시행하고,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게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교육조건부

25 ‘국제비즈니스대상(IBA)’은 전 세계 기업과 비영리기관 등 조직들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인력관리, 홍보, 마케팅, 제품관리, 고객서비스 등 11개 범주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상으로 워싱턴 및 뉴욕포스트지에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IBA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전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출품한 3,000여 종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사전심사에서 경합을 벌였다.

26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2010년

기소유예제'를 적극 실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감소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동안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아직 저작권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밀한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정부는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저작권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 기술현황

(1) 개요

저작권 보호기술은 콘텐츠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직접 암호화 하는지 여부에 따라 능동적 보호 방식(Active Protection)과 수동적 보호 방식(Passive Prote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능동적 보호 방식은 암호화 기술과 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법과 콘텐츠 접근 허용 후 저작자 또는 판매자가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가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라이선스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용을 제어하는 이용통제(Usage Control) 기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한다),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이하 'CAS'라 한다), 복사방지(Copy Protection) 기술은 대부분 이 능동적 보호 방식에 속한다. 수동적 보호 방식은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또는 구매자 정보를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삽입하거나 검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방식과 콘텐츠 자체에는 처리를 가하지는 않지만 콘텐츠의 고유한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식별하거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이 있다. 워터마크, 포렌식마크(핑거프린트), 필터링 기술이 이 수동적 보호 방식에 속한다.

(2)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오디오 콘텐츠의 경우 오디오 주파수)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이다. 저작권법(제104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에서는 기술적 조치로 5단계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현재 불법유통차단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5단계 필터링은 금칙어 기반에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특정유형파일 필터링이 포함되며, 해시기반에 해시값 비교, 특징기반에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이 포함된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각 필터링 기술별 인식률에 대한 차이와 기술별 고유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인식 및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다수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의 DRM 기술 동향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모바일 오픈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DRM 기술의 적용 방법은 내장형 DRM(Pre-built DRM)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DRM(Downloadable DRM) 방식으로, 보호 대상의 범위는 콘텐츠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DRM 기술은 이동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피쳐폰, 스마트폰 등 제조 시 해킹하기 어려운 공간인 단말기에 DRM 기술을 설치 및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외에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개발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말기 제조 시에 설치되는 DRM 기술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DRM 기술이 다운로드 되는 형태로도 확장 되었다. 오픈 플랫폼 수준에서 노출되는 DRM 기술 구현물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복사 방지 및 보안 기술들²⁷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앱스토어 서비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권리 관리(Application Rights Management, 이하 ‘ARM’이라 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 및 이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 ARM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암호화하기 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인증과 라이선스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실행 권한 확인을 거쳐 실행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복사 방지를 위해 ‘라이선스 검증 라이브러리(License Verification Library, 이하 ‘LVL’이라 한다)’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3) 전자책(e-book) DRM 기술 동향

폭발적인 전자책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존 음악·영화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였던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의 경우 주로 Adobe DRM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일부 대형 업체에서는 자체 DRM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음악 및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였던 기존 DRM 기술을 전자책 서비스에 그대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책 DRM 표준 기술의 부재로 인해 기존 DRM 기술의 비호환성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전자책 표준인 ‘국제디지털출판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이하 ‘IDPF’라 한다)’의 ePub에서는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비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보안을 위해 XML암호화(XML Encryption)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기술을 이용하도록 명세하고 있으나, 사업자간의

27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역공학 방지 및 코드 위변조 방지 기술, 디바이스 및 사용자 인증 기술의 강화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표준화 되지 못하고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DRM 기술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3) 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유튜브는 사이트에 올라간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여 발생한 광고수익을 콘텐츠 권리와 나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유튜브는 특징정보 필터링 기술인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entification, 이하 ‘CID’라 한다)’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각 국가별, 저작권자 파트너십별 권리사항에 따라 삭제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별하여 저작권을 보호한다.

CID는 일반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기존 저작권자가 제공한 핑거프린팅DB(특징기반DB)와 비교한 뒤,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탐지한다. 탐지된 동영상 및 오디오는 로그(log)파일에 기록되며 이는 저작권자에게 전달된다. 인증된 동영상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광고가 삽입되며, 저작권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사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동영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파트너십 계약에는 세가지 유형의 저작권보호 방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콘텐츠별로 권리 사항을 입력하는 ‘직접입력방식’, 저작권자가 보유한 콘텐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전송하는 ‘CID 추출도구 이용 방식’,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전송하고 관리하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계정 사용 방식’이 있다.

2) DRM 기술 호환성 동향

최근 N스크린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의 출현과 콘텐츠·서비스 제공자 및 단말기·플랫폼 사업자 간의 사업 협력에 의해 다양한 단말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DRM 기술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하기 보다는 공존하여 동작할 수 있는 기술 형태로 해외에서 제안·개발되고 있다.

구글의 오픈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3.0(API Level 11)부터는 다양한 DRM 기술로 보호된 콘텐츠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DRM 프레임워크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DRM 기술이 단말기에 탑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DRM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DRM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어떠한 DRM 기술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포팅이 되어 있는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일관되고 통합된 API를 통해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접근·관리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구글의 DRM 프레임워크 기술이 복수 DRM 클라이언트를 내장한 기기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2010년 7월에 DECE(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Ecosystem) 컨소시엄에 의해 발표된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은 복수 DRM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울트라바이올렛은 새로운 형태의 DRM이 아니고 기존의 DRM 기술들이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써 한 번의 콘텐츠 구매에 대해 서로 다른 DRM이 설치된 여러 단말기에서 쉽게 공유,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통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

울트라바이올렛을 DRM 상호 호환성 기술로만 소개하기에는 부족하다. 울트라바이올렛은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한 번의 콘텐츠 구매로 한 개 이상의 다양한 단말기(울트라바이올렛 로고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물리적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물리적 매체(블루레이, DVD, SD 카드 등)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트라바이올렛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구매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건, 어떤 방식으로든

볼 수 있어야 하고, 구매한 영화 콘텐츠의 분실 가능성을 없애고, 구입한 영화 콘텐츠를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콘텐츠 판매자에게 속박(Lock-in)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등의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

2008년 9월 12일 타임워너, 소니픽처스 등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튜디오 5개사와 HP, MS, 인텔 등 가전업체 20개가 참여하여 DECE(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Echo System)이라는 컨소시엄을 결성한 이후 2010년 7월 서비스 브랜드인 UltraViolet을 발표 하였으며, 2011년 6월 현대 DECE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7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4) HTML5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이슈

HTML5 표준화 완료는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츠가 안전하게 소비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2월 Google, Microsoft, Netflix는 HTML5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확장 규격 형태로 제안하였다. 확장 규격의 서두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술 자체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웹 브라우저 및 웹 처리 모듈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웹 브라우저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며, 콘텐츠 복호화 모듈이 실질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복호화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하다면 플랫폼의 기능이나 HW의 자원(Resource)을 활용할 수 있다.

발표된 확장 규격은 초안이기 때문에 아직 W3C 내외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안된 확장 규격은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적용된

동영상 콘텐츠를 HTML5 기반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일종의 공통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그러나 웹 환경에서 고품질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에도 HTML5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및 복사 방지 기술은 어떤 식으로든 도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오버 더 톱(OTT : Over the top) 콘텐츠 유통 환경

‘오버 더 톱(Over the top, 이하 ‘OTT’라 한다)’ 관련 저작권 보호 기술은 표준화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Verimatrix, 마이크로소프트 PlayReady, 구글 Widevine DRM 등과 같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 OTT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Verimatrix는 이미 보유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OTT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 제조사 및 솔루션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layReady DRM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OTT 서비스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멀티 DRM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PlayReady DRM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글은 Widevine을 인수한 이후 구체적인 활동은 없으나 구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OTT 서비스 중 일부는 HTML5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HTML5는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HTML5 환경을 고려한 OTT 사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Silverlight, 어도비 Flash와 같은 비표준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HTML5를 통한 멀티 스크린 서비스 전략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6) 저장 매체 기반의 콘텐츠 유통 기술

HD급 이상의 고화질, 고용량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환경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1년은 저장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인 활동들을 보이고 있다.

OMA(Open Mobile Alliance)는 2011년 8월 SRM(Secure Removable Media) V1.1 규격을 공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11년 12월 파나소닉, 삼성전자, 샌디스크, 소니, 도시바는 SD 카드나 플래쉬 메모리 카드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적용할 새로운 콘텐츠 보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메모리 구상(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이하 ‘NSM’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NSM 기술이 탑재된 저장 매체를 2012년에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콘텐츠 제공업체 중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및 지지 의사를 표명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NSM 기술은 저장 매체 중심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지만, HD 콘텐츠가 방송 환경 뿐 만 아니라 BD(Blue-ray Disc) 기기, 스마트 기기, TV,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CSA(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 이상의 스마트 기기에서 저장 매체를 통해 콘텐츠 공유 및 유통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2012년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예정이다.

7) 표준 저작권 보호 기술의 활성화 부진

2000년대 초중반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MPEG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MPEG-21, DMP, 상호 호환성 기술인 Coral, 무선

단말을 위한 표준 기술인 OMA DRM, TVAnyTime, SMPTE, OeBF, ISMA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확산, 멀티 스크린 서비스의 활성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시장의 변화에 대해 기존 저작권 보호 표준화 기술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표준화 기술의 사용성 및 효용성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졌으며 결국 표준 저작권 보호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MPEG 콘텐츠를 유통할 때 MPEG-21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 사용되지 않으며 스마트폰은 분명 모바일 기기이지만 OMA DRM 기술이 항상 탑재되지 않는다.

반면, 특정 업체나 일부 업체들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기술들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PlayReady, 구글Widevine DRM, Verimatrix, Marlin 등은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수용하면서 콘텐츠 유통 및 보호 기술 시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화 시도는 지속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유통 환경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와 같은 느린 표준화 과정, 특정 시장만을 염두한 표준 기술, 특히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표준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기술연구 및 활동

(1) 개요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SNS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저작물의 불법 공유 및 전송 시 순식간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차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09년 국내 최대 흥행작 해운대의 경우 유출 2시간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 및 160억 이상 손해발생). 또한,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저작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기술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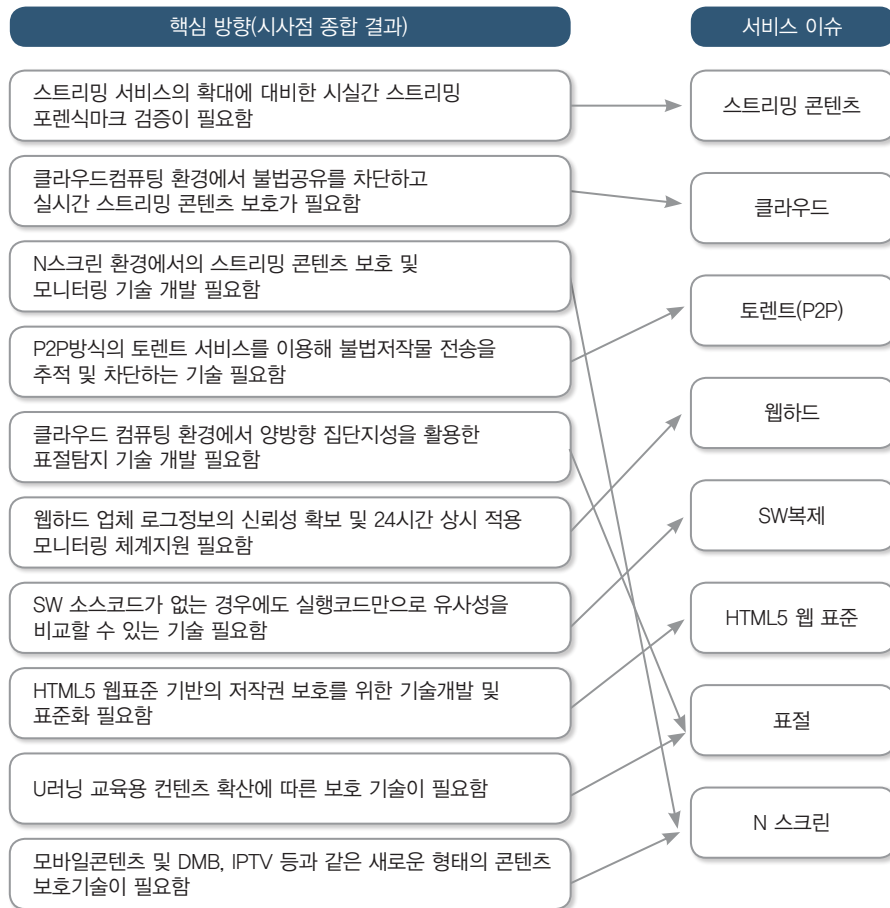


그림 2-73 R&D 요구 기술과 주요 서비스간의 관계

(2) 활동 및 성과

1) 저작권 보호기술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74 저작권기술 체계도(안)

이후, 2011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함께 저작권 R&D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스마트폰 앱 저작권보호, ebook DRM 호환, 저작권 침해예방 및 점검 SW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표 2-30 '09 ~ '11 선정 R&D 과제 현황

R&D 과제명	총 정부지원금	사업기간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20억	'09~'11
시스템SW 기반 모바일 앱 불법복사 방지 기술 연구개발	26억	'11~'13
저작권 침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점검 SW 개발	33억	'11~'13
국제표준의 ePub기반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SW개발	10억	'11~'12

저작권 기술의 주요 활용사례는 아래 표 2-31과 같다.

표 2-31 2011년도에 개발된 저작권 기술 R&D 결과물의 활용 사례

기술개요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M 비적용 환경에서 콘텐츠 보호 유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기반기술인 핑거프린팅, 특 징점 관련 기술을 활용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기반 음악 추천기술 KT(스마트홈 패드, 올레TV, KT 뮤직)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추진 • 노래방 기기, IPTV 노래방, 앱 등에 기술이전을 위한 테스트, 상용화 추진 중 • (주)현대자동차 차량용 뮤직 네비게이션 관련 기술 이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기반(DNA) 필터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P2P, 웹하드 서비스(KT, 소리바다, 나우콤, 위즈솔루션, 마크애니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기술)에 적용 •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에 음악, 영상물 필터링 기술 적용 • 특징기반(DNA) 기술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 요건 에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ook DRM 호환성 제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DRM이 적용된 ebook을 편리하게 하나의 ebook 뷰어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대교, Yes24, 알라딘 등 5개 대형 유통사에서 시범 적용 테스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용 SW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PC 등에 설치된 SW, 저작물(음악, 영화) 등을 점검 및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인스펙터 :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309,065개 배포하여 활용('12.4 기준) •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 시험판을 개발하여 포털사이트에 공개

가. 앱 불법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2011.10 ~ 2013.3)

본 연구개발 과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의 불법 복제·배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저비용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다단계 저작권 보호조치인 Defense in Depth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구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2011년에는 불법으로 파일을 복제하더라도 정상적인 실행이 되지 않게 하는 온라인 실행코드(online-execution)기술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실행 코드기술은 실행파일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기술이다. 또한, 불법 복제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기술 및 커널수준에서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는 앱의 시그니처(signature)를 분석하는 불법 앱 유통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관련업체 및 개발자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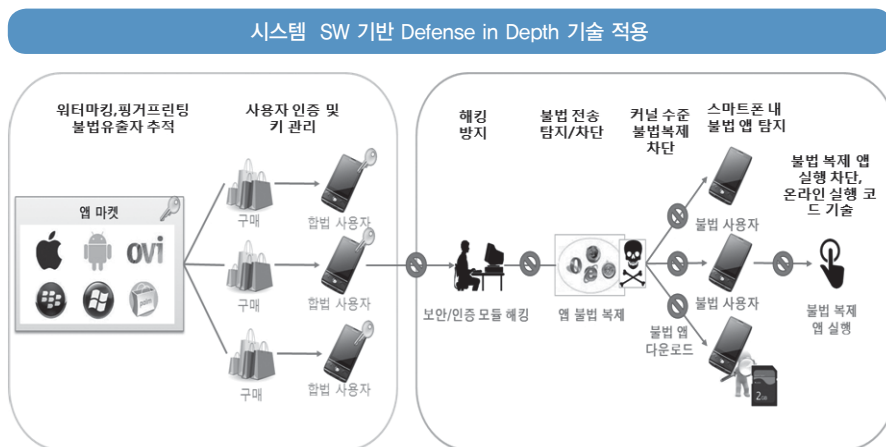


그림 2-75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나.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2011.6 ~ 2012.3)

IDPF의 ePub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e-Book DRM 호환성 지원을 위한 표준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준 레퍼런스는 API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상용 e-Book DRM 기술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표준레퍼런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국내 e-Book 관련 산업계(e-Book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DRM 기술 제공업체 등)들이 호환성 있는 e-Book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는 ePub 표준을 준용하는 e-Book 콘텐츠의 보안 패키징 및 디패키징 기술과 관련 모듈 및 표준 API가 개발되었다. 또한, ePub의 보안기술 규격을 준수하는 보안정보(암호화키, 인증서 등) 관리 모듈과 e-Book 콘텐츠의 권리표현언어 처리 기술도 개발 되었다. 표준화 관련활동으로 호환성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안)을 개발하고 TTA, IDPF, ODPF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e-Book 관련 업체에 시범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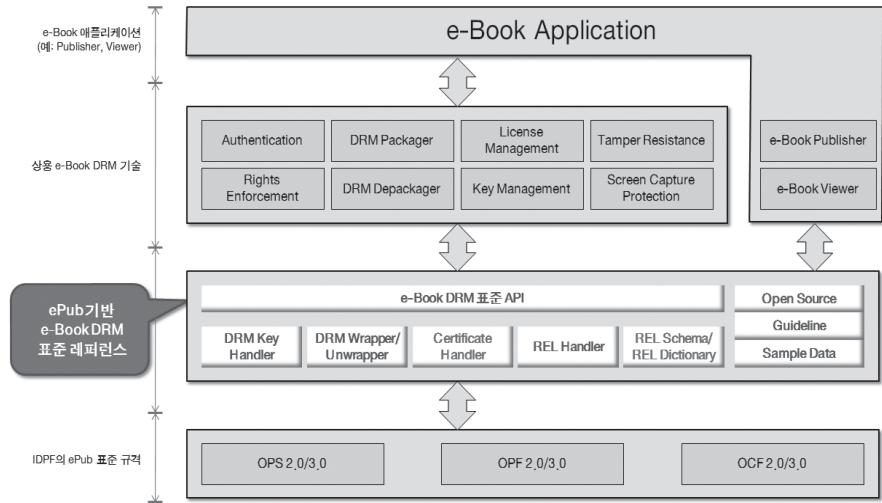


그림 2-76 ePub 기반의 e-Book DRM 표준 인터페이스

다. 점검 SW 기술 개발(2011.6 ~ 2013.3)

본 연구개발 과제는 PC에 저장된 정지영상, 동영상, 음원에 대한 저작물 정보를 인식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인스펙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관련 기술로는 매우 많은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고속화 기술과 문자열 및 파일패턴,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패턴 자동 생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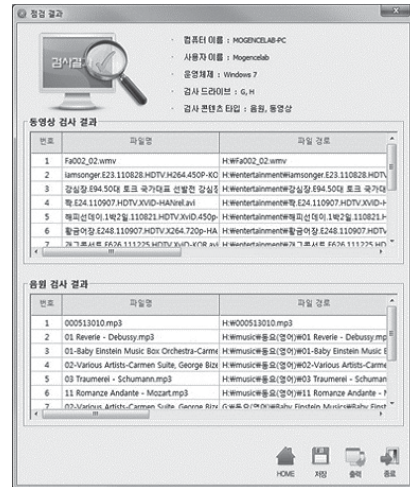


그림 2-77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점검 결과 예

2011년에는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의 고속 검색 및 식별을 위한 고속 특징점 추출 기술, 부가정보(파일정보 등)를 활용한 저작권 정보 식별 고속화 기술, 유사 콘텐츠 판별을 위한 음원 유사도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관리를 위해 실시간 양자 해싱(Quantum Hashing)

기술 및 특징 차원 축소 및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 기반 고속 색인 기술이 개발된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베타버전은 네이버, 다음, 심파일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라.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2009.3 ~ 2011.2)

DRM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워터마킹 기술의 단점인 대칭키 구조와 비가역적 콘텐츠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워터마킹기술과 가역 워터마킹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위해 복합콘텐츠 스케일러블 핑거프린팅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기존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모방, 변조된 경우 또는 워터마크/핑거프린트가 삽입되었으나 다양한 공격을 받아 정보 추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조/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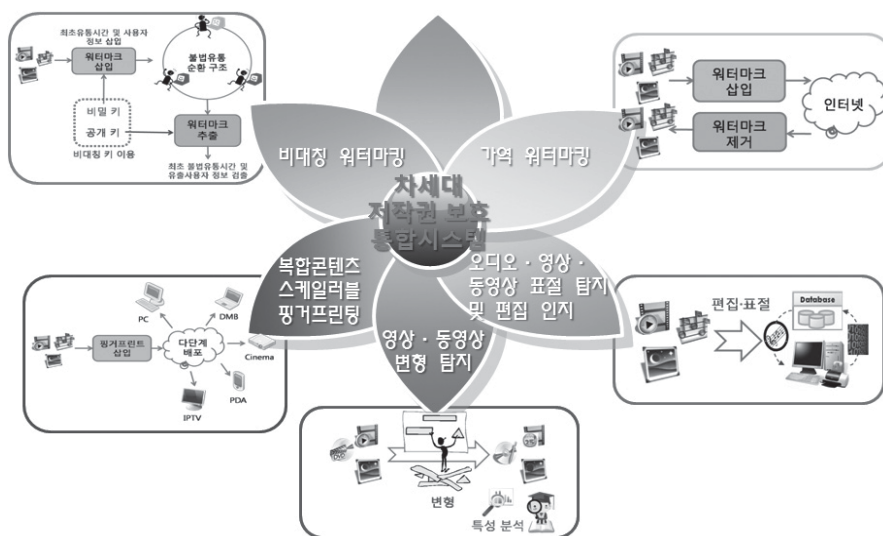


그림 2-78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요도

2) 향후 기술개발 전망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의 대중화에 따라 클라우드 및 N스크린 환경에 대한 저작권보호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N스크린 기술은 모바일 기술 및 다양한 기기와의 결합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 등 저작권법 개정과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불법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에서 정보유통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여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모두 윈-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 개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2 국내 저작권 기술개발 방향

구분	현재 기술	개발 방향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물 불법 복제방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디바이스/사용자별 인증기술 • 음원,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 보호위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스크린 및 모바일기술이 결합된 통합 인증기술로 발전 • 양방향 콘텐츠, e-Book 등 신규콘텐츠 보호 기술로 발전
	저작권 보호기반 기술	• 개별 플랫폼 기반 기술	• 표준 플랫폼 기반 기술
		• DRM 상호호환기술	• 다운로드블 DRM 기술로 발전
		• DRM/워터마킹/핑거프린팅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스트리밍 워터마킹 • 포렌식마킹 기술로 발전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술	침해점검 및 예방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검색기반의 콘텐츠 유사도 점검 기술 • SW 복제 점검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기반의 콘텐츠 유사도 점검 기술 • SW 소스코드 난독화 등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기술로 발전
	저작물 유통관리 기술	• 투명한 정산 및 과금 기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가능한 정산 및 과금기술 • 위변조 방지 기반 거래내역 확인
		• 공유기능 차단 및 불법업로드 차단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인식 기반 공유제어 기술 • 침해패턴분석 기반 차단 기술

3)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가.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근거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합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의2) 등을 개정하였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등록자격 요건 및 취소 규정을 제정하여 고의 또는 방임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 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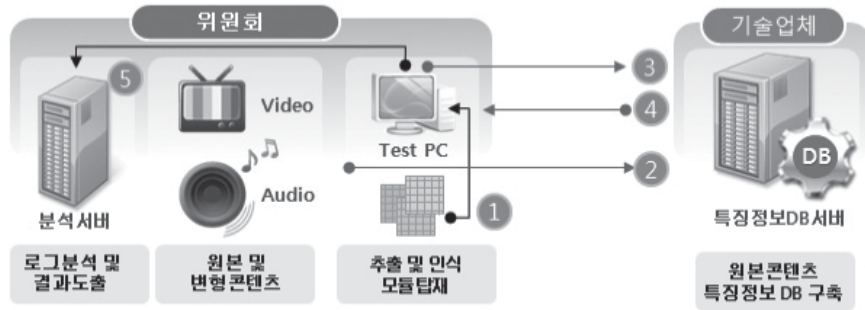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2의2에는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기술을 24시간 상시적용 해야 한다.

저작권기술 성능평가는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로 기술업체별로 기술의 상이함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평가와 필드평가로 나누어 수행한다. 기술평가가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평가 한다면, 필드평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이 성능저하 없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 2-33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 대상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술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오디오, 비디오 분야) 신청대상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업체(동 기술을 보유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포함) 평가범위 (유효기간 : 1년) 			
구분	내용		비고
성 능 평 가	기술 평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리즘 등의 기술평가 후 기준 부합시 확인서 발급 ※ 발급조건 : 실서비스 적용시 3주 이내에 필드평가 신청 및 통과 	확인서 발급 (웹하드 등록요건)
	필드 평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 확인 받은 기술이 실 서비스에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평가 ※ 통과 조건 : 기술평가 인식 콘텐츠 3초 이내 100%인식 	실서비스 적용시 기본 1회 ※ 필요시 수시평가
제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조치 사항 발생시 성능평가 신청제한 및 결과 홈페이지 공지 ※ 제한조치대상 : 확인서 발급조건 미준수, 시정요청 불응 및 누적 횟수 3회 초과 		유효기간 만료부터 1년 동안 신청제한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말 4개의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 확인을 받았다.



- ※ 성능평가 전용도구 : 신청업체의 추출 및 인식모듈(프로그램)을 제어하고 각 성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수행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 ※ ①~②번 단계는 성능평가를 위한 원본콘텐츠 특징정보 DB 구축 단계임

그림 2-79 1단계 기술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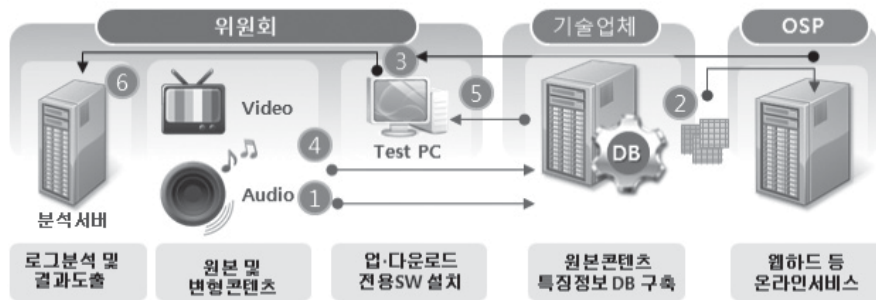


그림 2-80 2단계 필드시험 평가 방법

나.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반대(인터넷기업협회 등)와 대표성 있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추가 수렴 요구가 있어 향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 2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인 웹사이트를 시범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 평가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4)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활동

가. 한국저작권위원회-MBC, 영상 특징정보활용 방송저작물 보호 협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MBC와 온라인 방송저작물 보호를 위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필요한 특징정보 DB를 공동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필터링 기술 업체 및 유튜브에 특징정보 DB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0월 25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식은 지난해 SBS콘텐츠허브와의 협력식에 이어 두 번째로 MBC 역시 특징정보활용을 통해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림 2-81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BC 간 업무 협약식

현재 방송콘텐츠 대상 공용 특징점 DB구축 건수는 총 4만8천여건으로 이 중 MBC가 1천9백여건, SBS콘텐츠허브가 4만6천여건을 차지하고 있다.

5) 기술위원회 및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구축 지원

가. 기술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기술위원회 정기회의(4월)와 워크숍(6월)을 개최하고, 성능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R&D 과제 수행관련 심의 및 의견 수렴, 성능평가 지침 및 R&D 후보과제 우선 순위 도출과 의견 수렴, 성능평가 결과 심의를 위한 기술소위원회를 총6회 개최(1월~12월)하였다. 현재 기술위원회는 법조계와 학·연구계, 협회 및 단체장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역할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림 2-82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그림 2-83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나.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구축 지원 사업

‘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이하 ‘DCAN’이라 한다)’ 구축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의 디지털저작권 기술 및 정보자원의 공유와 표준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첫째, 아시아 국가 간 디지털 저작권정보와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의 정보 공유 및 향후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아시아의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 및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2011년에는 아시아 7개국(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및 태국)과 함께 디지털저작권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각국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세미나 및 워크숍을 16회 개최했다. 또한 5개국(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의 6개 단체 및 3개 기업과 향후 저작권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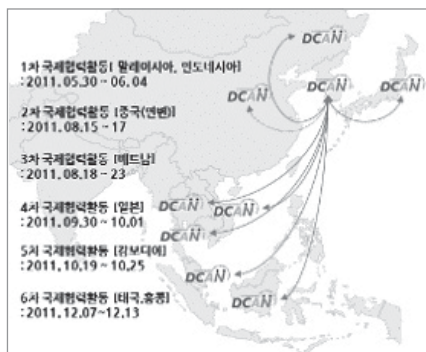


그림 2-84 DCAN 국제 협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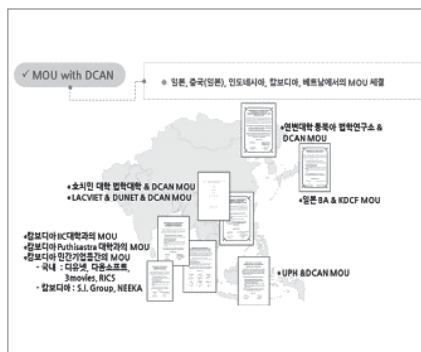


그림 2-85 3개 이상 국가 및 기관과 MOU 체결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 저작권 등록
3. 법정허락
4. SW임치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 공유저작물 창조 지원화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4. 저작권 상생협의체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개요
2. 활동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저작권 산업의 선순환적 발전과 FTA 발효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과 계량화된 자료 기반의 객관성 있는 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실증적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이는 저작권 산업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통계정보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저작권 통계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의 일환으로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UN,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를 국가 공식분류로 지정받음으로써 저작권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마련되었다.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는 WIPO가 저작권 산업을 정의하면서 활용한 ‘국제표준 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ISIC’이라 한다)’를 기초로, 이를 국내 산업 실태에 맞게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KSIC’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2011년 11월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활동을 핵심산업, 상호의존산업, 부분산업, 지원산업 등 4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1단계 대분류로 정하고, 각각의 대분류 내에 포함되는 산업활동들을 2단계 중분류, 3단계 세분류, 4단계 세세분류로 구분하였으며, 총 7자리로 분류코드를 구성하였다.

- 대분류 : 핵심저작권산업 등 4개 범주
- 중분류 : 작가 및 번역활동 등 55개 산업
- 세세분류 : 비공연 예술가 등 세분류에 속하는 308개 산업

이번에 제정된 저작권 산업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및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3-1 WIPO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

포괄영역	정의
핵심 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 지원 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표 3-2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구분	저작권 산업		
	분류코드(예시)	분류명(예시)	분류 정의
1단계	1	핵심저작권 산업	WIPO guide의 4개 포괄 영역 중 첫 번째 영역
2단계	101	출판 및 문학	WIPO guide의 53개 세부 항목 준용
3단계	10101	작가, 필자, 번역가	출판 및 문학분야 주요 창작활동의 주체
4단계	1010101	비공연예술가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비공연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1010102	번역서비스업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저작권 분야의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에는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는 산·학·연·관 등 각계각층의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자 495명을 대상으로 정성적·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 및 자료 이용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저작권 분야별로 필요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조사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조사 결과, 저작권 통계정보 이용률은 16.1%로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 이용 빈도가 높은 대상은 ‘저작권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서, 이 그룹의 통계정보 이용률은 50%로 ‘유통’ 분야 4.5%, ‘창작’ 분야 4.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통계정보 이용 목적은 “저작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함”(54%), “저작권 관련 연구”(2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응답자의 36.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저작권 통계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통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55.8%), “필요한 통계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19.5%) 순으로 조사되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비하고 접근 및 검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작권 통계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수요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살펴본 결과 “저작권 침해관련”(42.9%) 통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작권 산업”(18.2%), “저작권 요율”(13.6%), “해외 저작권”(13.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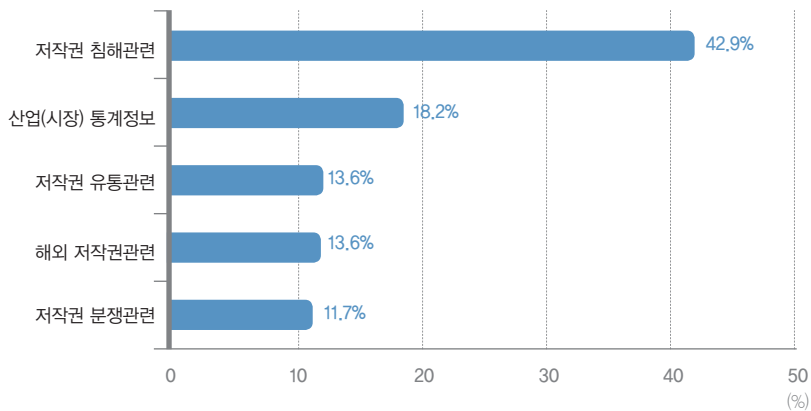


그림 3-1 저작권 통계정보 선호도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는 저작권 분야 통계정보 구축과 저작권 정책 수립 및 산업 분석의 계량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정보들을 조사하여, 수집 및 가공 가능한 유의미한 저작권 통계정보 유형들을 개발하였고, 저작권 정책 및 산업 분석에 유용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저작권 관련 지수를 제안하였다.

개발한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는 창작, 유통, 소비, 보호, 산업, 교육, 인프라 등 저작물 순환단계별로 통계정보 유형의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별 수집 및 가공 가능한 통계자료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표 3-3 저작권 분야별 통계자료 유형

분야	저작권 통계자료 유형
창작분야	등록, 창작인력, 창작환경
유통분야	저작권 거래소, 신탁단체 현황, 저작권 징수 및 분배, 대리증개업체 현황, 저작권 사업체 통계, 저작권 장착율
소비분야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저작권 소비시장 추정
보호분야	시정권고, 불법복제, 해외저작권 침해, 분쟁조정, 저작권 교육
산업분야	핵심저작권 산업분야 생산, 부가가치, 종사자수
기타분야	공유·창조자원 등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 및 지수는 저작권 정책 지표 및 산업 지표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수들로서 저작권 보호, 인프라, 저작권 창출활동 및 활용, 저작권 유통 및 수입, 저작권자 복지후생 등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지수들을 제안하였다.

표 3-4 저작권 관련 지수개발 영역

지수 영역	지표 및 지수
저작권 보호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지수
저작권 인프라	저작권법 집행 인프라 지수 저작권 교육 효과 지수
저작권 창출활동 및 활용	저작자집단 지수
저작권 유통 및 수입	저작권 로열티 국제 평가지수
저작권자 후생복지	저작권자 소득수준 지수

이번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는 저작권 생태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계집을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 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 등 저작권 관리관리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저작권 시장에서는 저작권 정보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개별 회사 내지 단체별로 각각의 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시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용자가 저작권자 확인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권리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수집·제공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저작권정보를 통합 구축·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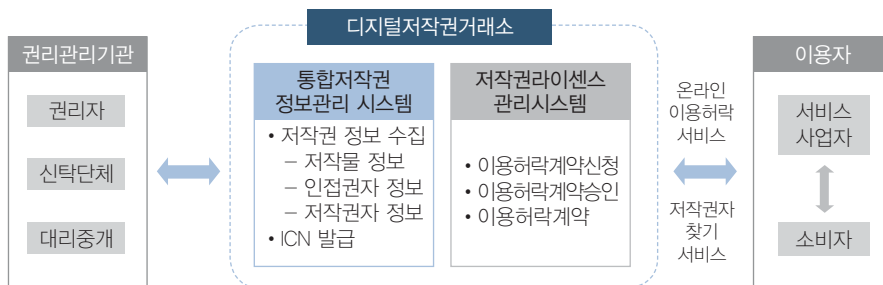


그림 3-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2) 활동 및 성과

1) 통합 저작권 정보 수집 · 제공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의 저작물을 누구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이라 한다)’를 개발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 3-5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음악	국내	370,000건	15,000건	158,428건	58,031건	601,459건
	해외	-	100,000건	323,930건	-	423,930건
어문	400,000건	400,000건	49,432건	259,109건	1,108,541건	
방송(대본)	-	10,089건	-	6,766건	16,855건	
뉴스	-	-	-	2,409,269건	2,409,269건	
영화	-	-	-	30,000건	30,000건	
이미지	-	-	-	6,139건	6,139건	
합계	770,000건	525,089건	531,790건	2,769,314건	4,596,193건	

특히 2011년에는 통합저작권 메타DB 및 ICN 발급을 가속화하여 총 276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기존 음악, 어문, 방송대본 분야 이외에 신규로 뉴스기사, 영화, 이미지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다. 먼저 뉴스기사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여 총 240여만 건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캐릭터 관련 저작권 정보 6,139건을 수령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에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는 2011년 말 기준 459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통합 저작권정보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는데, 크게 저작물

정보와 저작(권)자 정보로 나누어지며, 저작물 정보는 다시 공통 요소와 각 저작물 장르별로 고유한 요소로 나누어진다. 통합 저작권정보 메타데이터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6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예시

구분	구성 항목	
저작물 정보	공통	제목, 국내외 구분, 신たく 및 대리중개 여부
	음악	작사, 작곡, 편곡, 가수, 연주, 음원제작자, 앨범명, 발매년도 등
	어문	작가, 번역, 도서명, 발행국가, 매체형태, 발행년도 등
	방송	제작자, 연출, 원작명, 출연진, 방송일시, 방송매체 등
저작(권)자 정보	권리자명, 대표자명, 주민번호(8자리), 사업자번호, 신たく일자, 예필명, 사망일자 등	

참고적으로 어문분야의 ICN 발급에는 현재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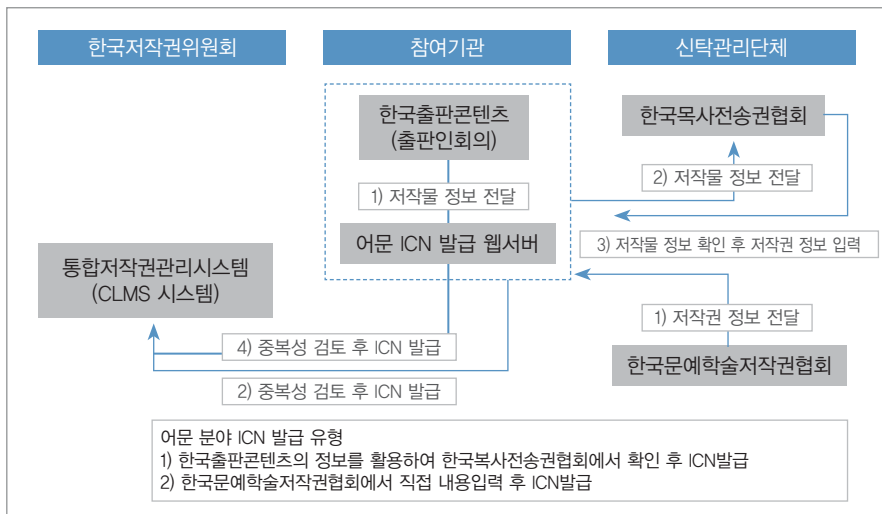


그림 3-3 어문분야 ICN 발급 절차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신たく관리단체, 유통사업자 등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7년 음악과

어문분야에서 4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개, 2010년 6개, 2011년에는 5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17개 협력기관이 MOU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 분야로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미지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및 상원미술관의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구분	MOU 기관	분야
200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KBS(4곳)	음악
2008년	-	-
2009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2곳)	어문
2010년	영화진흥위원회, 엠넷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6곳)	영화 음악 뉴스 어문
2011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연협회,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상원미술관(5곳)	방송 이미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거래소 참여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협력기관 TFT 워크숍을 2011년 11월에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발표와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림 3-4 2011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TFT 연합 워크숍

2)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 계약 지원

권리자와 이용자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이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이하 ‘CLMS’라 한다)’을 개발하여 2008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표 3-8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이용건수	173건	353건	561건	816건	1,903건

CLMS는 2008년 음악의 전송분야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음악의 복제, 공연, 방송분야, 2010년에는 음악보상금(방송/공연), 뉴스의 이용허락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어문분야의 보상금(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복사사용료 계약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음악 3단체의 이용허락마크 부착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LMS를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표 3-9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형태

음악	전송	유선인터넷, 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홈페이지 배경음악, 통화대기음, 기업용 통화연결음, 무선인터넷
	복제	음반, 영상, 노래반주기, 광고, 영화, 출판, 선거로고송, 기타
	보상금	라디오, 위성SO, 오디오PP, 홈쇼핑PP, 인터넷방송, 매장음악방송, 공연, 기타
어문	출판, 복사, 전송, 방송, 공연, 전시	
	보상금(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이용보상금)	
뉴스	디지털뉴스 서비스, 디지털뉴스 과금 내역	



그림 3-5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사이트 메인 화면

3) 저작권 찾기 사이트 운영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저작물 중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찾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한 사이트(www.right4me.or.kr)이다.

기본적인 절차는 ‘사이트 접속 → 저작권정보 검색 → 저작권 찾기 및 보상금 신청 → 권리관계 확인 → 처리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3-6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저작권 찾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포털사이트, 지하철, 잡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찾기 캠페인’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저작권 찾기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찾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7천여 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거래소 홍보자료 2천부를 제작하여 관련 행사 등에 배포하였다.

표 3-10 저작권 찾기 구축내역 및 참여기관 현황

구분	시스템 구축내역	참여기관	비고
2008년	- 음악/어문 권리찾기 신청 - 방송/교과용/도서관 보상금 신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09년	-	-	
2010년	- 권리찾기 및 보상금 기능 강화 - 홍보체계 강화(법정허락 저작물 검색)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011년	- 온라인 법정허락 신청 시스템 구축	-	

그리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법정허락’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저작권 찾기 사이트 내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 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고려하여 법정허락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거래소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먼저 현재 거래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전략 수립’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활용

못하는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과제도 추진하였다.

4) 인증

중국 등 저작권 보호관리 환경이 취약한 권역을 중심으로 권리소명이 어려워 우리 저작권의 보호와 비즈니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저작물을 공급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저작물 또는 서비스가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지만 등록사항은 한정적이며, 특정 시점 또는 해외 권역에서 처하게 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자유롭게 소명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저작권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일정한 연구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저작권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11년에 종합적으로 개발 완료된 저작권 인증시스템은 인증기관 보급을 위한 표준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저작권 법령상 구분된 권리인증과 이용허락인증을 각각 구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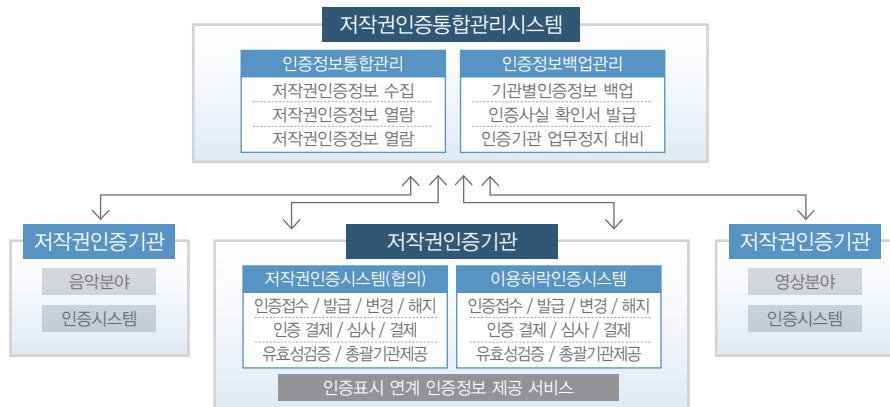


그림 3-7 저작권 인증시스템 종합개념도



그림 3-8 저작권인증시스템(cras.copyright.or.kr) 메인



그림 3-9 이용허락인증시스템(class.copyright.or.kr) 메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저작권 인증업무규정안 및 운영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호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작하거나 실연, 제작, 방송 등을 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을 업무범위로 정하고, 2012년 2월 23일 우선 해외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를 개시하여 1년간 수수료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 인증을 받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시는 해당 저작권의 거래 또는 저작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10 저작권 인증표시

(3) 평가 및 전망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음악, 어문, 방송, 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이용·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기관이 적고 계약분야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 등 더 많은 권리자 및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실시간 단위로 수정되는 저작권 정보의 수집·관리 및 협력기관의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전자출판, 영상물 등의 2차적저작물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관련 정보의 구축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권리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계속되어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 Tool'로서 저작권 거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기존 어문, 음악 분야의 정보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 디지털 저작권 유통시장의 왜곡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B2B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2C 방식의 거래를 위한 노력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안정화될 경우 거래소는 민간부문의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근간이 되고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를 정립시키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작권 등록

(1) 개요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등록권리자에게는 등록사항에 대한 법정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분쟁에 있어 사후적인 입증편의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거래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업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한 소위 통합 저작권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재된 등록사항은 공중에 공개되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므로, 등록기관은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등록신청인의 허위등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심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검색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향상·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신청서 작성-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일시)-등록 심사-등록부 등재-등록증 교부-등록 공보 발행-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및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해석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심사를 통하여 등록신청서와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은 반려되는 것이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을 통한 최종 반려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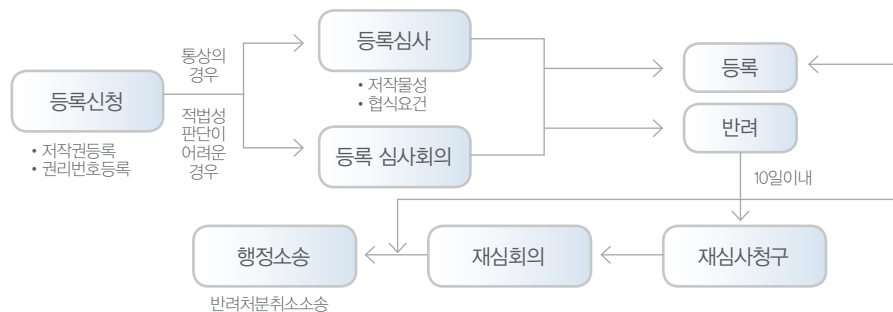


그림 3-11 등록업무 절차도

3) 저작권 등록의 효과

가. 추정력 발생

저작자 성명, 창작일·최초공표일 등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법정 추정력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록 저작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에 대하여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된 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록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유리하다.

나. 대항력 발생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또는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 등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권리변동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변동의 유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다. 보호기간 회복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을 등록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사후 5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진다.

라.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관세청 고시(2010-33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캐릭터나 도안이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복제품,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활동 및 성과

1) 2011년 등록 실적

2011년에는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중심 등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등록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등록 신청 증가를 위하여 다량등록기관 및 공모전 주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26,848건) 대비 4% 증가한 28,154건의 등록 실적을 보였다.

가장 기본적인 등록사항인 ‘저작권 등록’이 7% 증가한 점에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권리보호 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양도) 등록과 질권설정 등록의 증가추세는 저작권의 적극적인 재산권적 이용의 확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 관련 등록의 활성화는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표 3-11 전년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등록 신청의 종류	2010	2011	비교
저작권 등록	23,017	24,694	7%
저작권 등록사항변경등록	1,534	1,141	-25%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811	1,593	96%
저작권 질권설정등록	69	181	162%
저작권 질권소멸등록	10	12	20%
저작권 질권처분제한등록	0	0	-
저작권 처분제한 등록	589	243	-58%
저작인접권 등록	452	229	-49%

등록 신청의 종류	2010	2011	비고
저작인접권 등록사항변경등록	17	4	-76%
저작인접권 양도등록	260	0	-
출판권설정등록	3	3	0%
출판권 등록사항변경등록	0	0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81	54	-3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등록	5	0	-
데이터베이스 등록사항변경등록	0	0	-
총 계	26,848	28,154	4%

2) 한미 FTA와 법제도의 개선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이 2011년 12월 2일에 이루어 졌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의 설정이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설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출판권등록부는 폐지되고, 모든 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권리변동 등록으로 통일되었다.

또한, 등록신청인의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 등을 신탁한 자에게 면제되던 등록수수료를 신탁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으로 개선·보완하였다.

3) 온라인 등록시스템의 개선

저작권 등록업무는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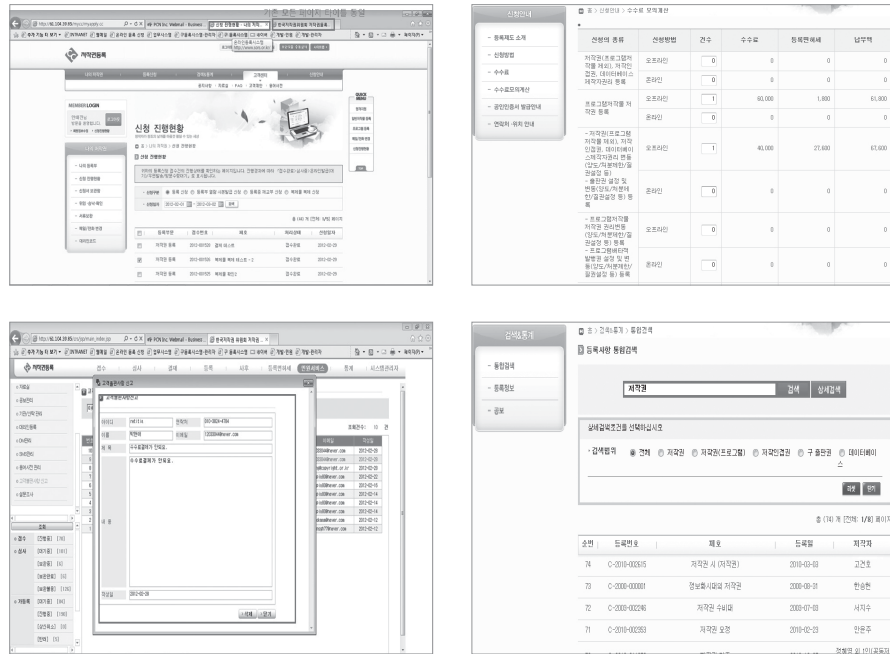


그림 3-14, 15, 16, 17 등록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주수체계 전환에 따라 회원 및 등록 DB정보를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공공행정정보(G4C)를 연계한 저작권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3-18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구축

4)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개선

저작권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복제물 등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 내용의 확인과 분쟁발생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권리관계 서류이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등록신청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복제물은 종이, VHS-Tape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비정형화되어 있어 훼손 또는 파손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등록신청서 및 등록저작물을 아카이빙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카이빙 : 오프라인 저장매체(복제물 등)의 손상 등 HW·SW의 기술적 퇴화 시에도 원형 유지를 통해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체를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일련의 모든 행위

그림 3-19 아카이빙

또한,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본 공정 이전에 시험공정을 적용하여 품질수준을 높이고, 원본 품질확보 및 오류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품질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미지 해상도는 300dpi 이상을 기준으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밝기와 농도에 따라 해상도를 조절하며, CD/DVD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저작물의 매체변환 및 파일 포맷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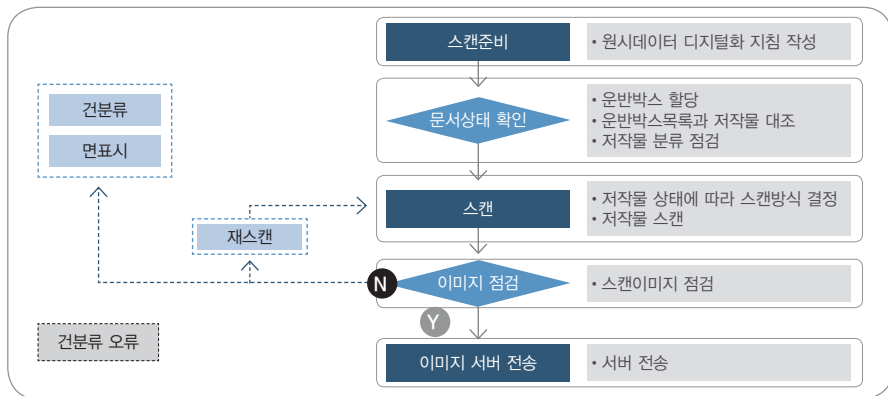


그림 3-20 아카이빙 구축 공정

현재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은 프로그램저작물(08~10년) 118,000여건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미술저작물 37,246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에 모두 완료될 예정에 있다.

표 3-12 2011년 아카이빙 실적

구분	계획	실적	비율
건수	36,000건	37,246건	103.5%
이미지 면수	72,000면(건당 약2면)	102,881면	142.8 %
예상크기	약 720G(건당 약 10M)	70.2G	9.75 %(검색용 용량: 6.01G)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이용관계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상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325,100여건의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실적이 전체 등록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작권 등록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등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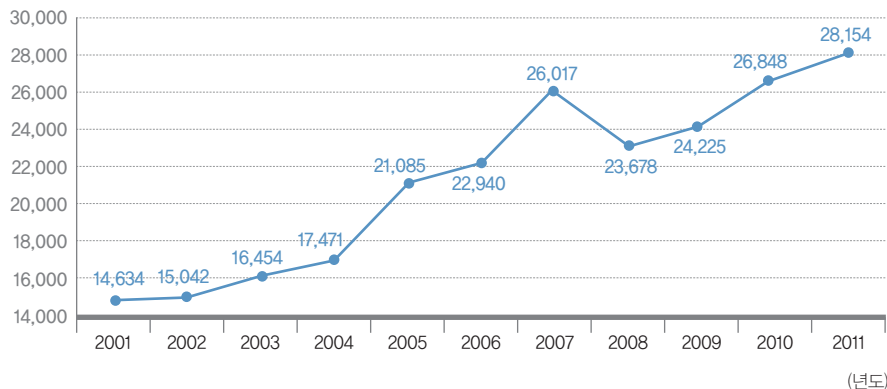


그림 3-21 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

그렇지만, 저작권 등록 증가추세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로서의 저작권 등록의 핵심인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인원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프로세스의 안정화·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등록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등록수수료 감면을 다양화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법정허락

(1) 개요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자발적 이용허락을 대신하여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여 법정허락을 신청한 이용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는 자가 원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저작인접물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있어서는 위의 모든 경우가 적용되고,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경우에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적용된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법정허락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저작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법정허락’의 국제조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근 거	내 용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	제50조 내지 제52조 준용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	제50조 및 제51조 준용

우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고 절차와 의견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의 승인과 보상금의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이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2) 활동 및 성과

우리 저작권법 제5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등 법정허락 관련 제도의 장점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도입 시기에 비해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정허락 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 이래 2011년까지 신청되어 처리된 법정허락은 모두 37건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정허락 건수는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신청된 법정허락 건수는 모두 4건으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그 중 3건이 이용이 승인되고 신청인 스스로 1건 신청철회하였다.

표 3-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연도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건수	1	1	4	1	1	3	1	1	6	7	7	4	37

최근 수년간 법정허락 신청건수는 통계 수준의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지,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리플릿 제작 등 법정허락제도 홍보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법정허락이 승인된 3건은 모두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이며, 그 신청대상은 주로 어문·음악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저작물이 많이 쓰이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5 2011년 법정허락 내용

번호	신청인	저작물(제호 및 종류, 저작자명)			이용 방법	승인 여부
Jan-11	(주)아이비북스	송가황조	어문	한명준	출판	철회
Feb-11	한국가곡연구소	달밤	음악	김태오	출판	승인
Mar-11	한국가곡연구소	금잔디	음악	이건우	출판	승인
Apr-11	(주)웅진싱크빅	뒤뚱뒤뚱 아기오리	음악	불명	출판	승인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법정허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EU FTA 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이 증가하면 법정허락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법정허락 절차를 살펴보면, 법정허락 신청 준비 단계부터 법원 공탁까지 최소한 2달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긴급히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법정허락은 개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국가가 대신 이용허락 해주는 비자발적 이용허락 제도이므로 제도의 간소화·신속화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법정허락 실무를 조사해 보면 상담건수에 비해 신청건수는 턱없이 작다. 이는 법정허락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급하게 책을 출판하고 음악을 사용하고 영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두달 남짓이나 걸리는 법정허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많은 법률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 등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 및 활성화 방향 관련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이므로 대승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 모든 법들이 마찬가지로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진화과정처럼 차츰 다듬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²⁸되었는데,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SW 임치

(1) 개요

1) 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2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저작권법으로 통합)이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Escrow)'를 도입한 것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기술 보호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하는

²⁸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1년 7월 18일 입법예고되었고, 2012년 4월 12일 공포되어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경우에 발주기관은 프로그램의 원천기술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 등 사업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원천기술을 제공받는 관행이 있어 개발자는 원천기술의 유출위험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임치제도는 개발자의 기술유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발자의 폐업·파산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중단 위험으로부터 사용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프로그램 임치업무는 2009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상대자는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도록 규정하고 임치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운영

가. 임치물의 대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천기술 및 기술자료 등이 임치물의 대상이 되며, CD-ROM, DVD에 담아 수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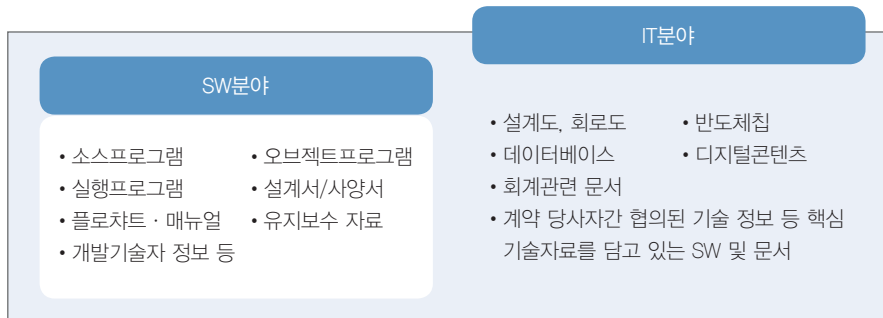


그림 3-22 임치 대상물

나. 임치계약의 종류

임치계약은 삼자 간 및 양자 간 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단일한 경우이며, 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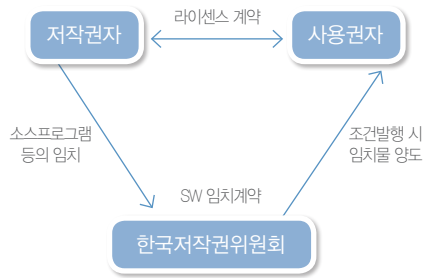


그림 3-23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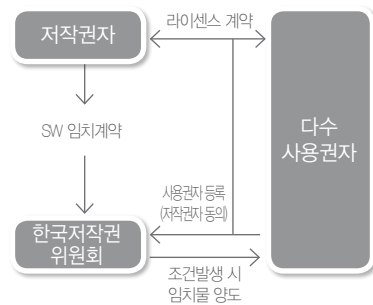


그림 3-24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이외에 통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났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계약과, 프로그램의 특성상 추가 개발이나 버전업 혹은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임치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신본 임치계약도 있다.

다. 임치계약의 절차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신청 서류 및 임치물을 임치기관에 제출하고, 임치물의 저장 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계약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임치기관은 당사자에게 임치물의 봉인을 확인시킨 후 수수료를 납부 받아 계약기간 동안 임치금고에 보관하고, 저작권자 및 사용자에게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 체결절차를 종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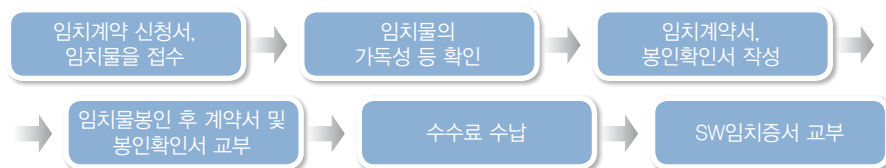


그림 3-25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그리고 임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치기관이 계약 갱신기간의 도래를 당사자에게 알려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임치계약은 종료된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프로그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제도의 효과

임치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저작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소유하면서 사용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권자의 신뢰성 보장과 동시에 원활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기술정보 등을 해외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어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활동 및 성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은 법제도의 정비, 임치서비스의 개선, 꾸준한 홍보활동 등 실적 향상노력을 실시한 결과 총 1,33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계약종류별로는 신규계약의 경우 576건, 갱신계약의 경우 470건, 사용권자 등록계약의 경우 221건, 최신본 임치계약의 경우 6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16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2011. 12. 31 기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신규	121	155	151	149	576
갱신	65	97	126	182	470
소계	186	252	277	331	1,04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사용권자등록	59	47	53	62	221
최신본 임치	14	17	13	20	64
합계	259	316	343	413	1,331

(3) 평가 및 전망

2002년 4건이던 임치서비스 이용건수는 2003년 13건, 2004년 68건, 2005년 88건, 2006년 88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시행을 기점으로 150건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SW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과 중소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SW 임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4년간 임치서비스 이용실적은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SW 임치제도는 SW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임치서비스 이용고객의 민원편의를 제고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임치제도의 이용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 개요

농업이나 어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에서는 인력이나 토지 등이 주요 자원이었고,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석유나 석탄이 중심이 되는 자원이었다. 이어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적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시되고 저작물과 같은 창조자원이 핵심자원으로 대두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활용 가능한 창조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른바 공유저작물 즉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 기증 저작물,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창조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유저작물 활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출범시켰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콘텐츠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자유이용사이트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공유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최근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창작수요에 따라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2일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이 출범하였다.



그림 3-26. 2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출범식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은 민-관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운영위원, 분과위원 등 총 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논의와 토의를 위해 내부에 ‘수집·나눔 분과’, ‘제도기반조성 분과’, ‘사회적협업 분과’의 3개 분과를 두어, 공유저작물의 수집·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범 국가차원의 실천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7월 출범한 이래 정기총회와 3개 분과의 분과회의(총 19회)를 통하여 만료저작물 민간·공공 수요로드맵, ‘공공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이하 ‘KOGI’이라 한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현장 및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 등을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2)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활용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공유저작물 활용의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만료 저작물 역시 이 사이트 내에서 개인 및 기업 등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외 사례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사업 범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3만6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 조회 수도 2011년에는 94만5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조회수는 2010년 66만여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43.2%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7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건)
어문	17,300	3,843	235	5,992	332	311	28,013
미술	30	752	1,111	3,175	-	-	5,068
음악	1	216	556	21	-	-	794
사진	-	280	182	2,388	-	-	2,850
합계	17,331	5,091	2,084	11,576	332	311	36,725

저작권프리사이트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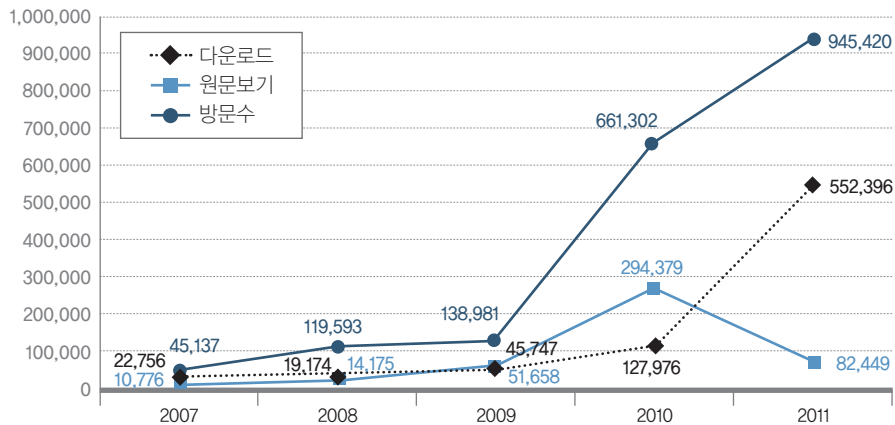


그림 3-28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웹(<http://mfreeuse.copyright.or.kr>)을 통하여 자유이용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유이용사이트를 한 차원 높게 확대 개편하여 공유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서비스(가상은행)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외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 제도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해외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관리현황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유이용사이트에서 해외 공유저작물 프로젝트(유로피아나)와 Open API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향후, 해외 공유저작물 관리·서비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공유저작물 포털서비스(가상은행) 제공도 앞두고 있어 공유저작물의 산업적 활용과 일반인들의 창작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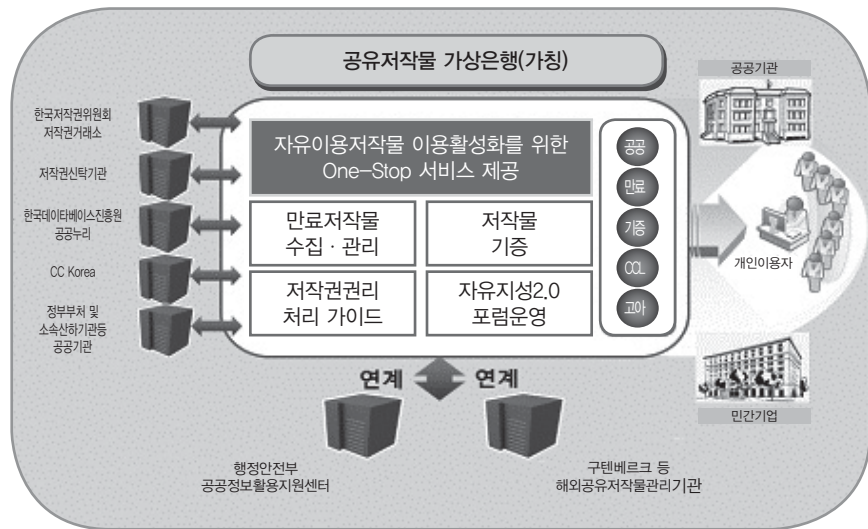


그림 3-29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고아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저작권자 미확인 저작물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저작권이 있는 전체 책의 13%인 3백만 권이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책(orphan books)이며, 1912년 이전 신문의 95%, 영국 박물관 소장 사진의 90%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고아저작물에 대해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정보를 DB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법정허락제도의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ECL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하여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등의 이용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 등의 이용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문화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고 안익태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면서 200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저작권을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고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아직 기증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작권 기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1년 11월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14편 중 11편의 기증을 유도하는 등 저작권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평가 및 전망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최근 뉴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법은

자유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자 보호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수립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구글북스나 유로피아나처럼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며, ICN 등 표준식별체계를 활용하여 자유이용저작물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이용’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대한 논의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새로운 창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이하 ‘ECL’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와 공유저작물 민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공유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유저작물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 동인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 개요

오픈소스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Java·Python·PHP·Perl 언어, Eclipse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SW들이 전 세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컴퓨팅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기반 인프라 구축에 오픈소스SW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오픈소스SW가 활발히 사용되는 등 현재 SW개발 분야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안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픈소스SW의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오픈소스SW의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오픈소스SW의 올바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중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크게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수집 확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시스템(CodeEye) 구축 및 서비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이하 ‘OLIS’라 한다)’ 사이트 구축 및 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에 따른 장비 도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었다. 오픈소스SW DB 구축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DB구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8 오픈소스SW 관련정보 DB 구축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72종	2종	-	-	74종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정보	20만 건	94만 건	56만 건	68만 건	238만 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	860만 건	270만 건	1,670만 건	2,800만 건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한글 요약문	-	-	7만3천 건	3만 건	10만3천 건

매년 수집된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들은 검사시스템(CodeEye)과 OLIS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DB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시스템(CodeEye)은 200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정식서비스가 개시되었다. CodeEye 구축 관련 주요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9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년도	주요 추진 내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한 비교·분석 엔진 개발 단계별 검사 프로세스 모델 수립 및 구현 검사 입력 및 결과 처리를 위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소스SW 검사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검사 서비스 안정성 확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개선 및 기능 확장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사용자 지원을 위한 코어엔진의 안정성 확보 추진 바이너리를 대상으로 유호 데이터 추출을 통한 라이선스 검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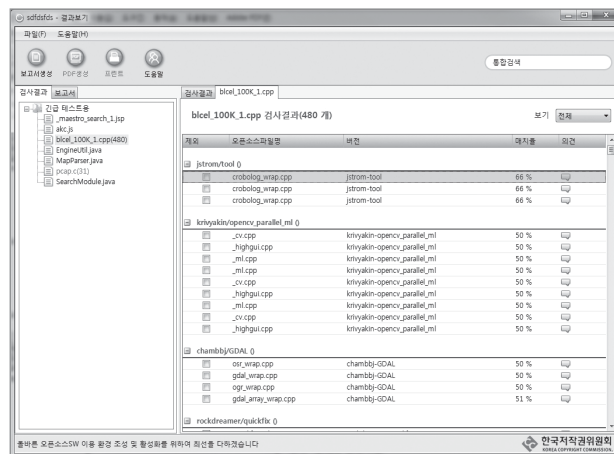


그림 3-30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검사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복잡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정보제공 및 상담, 컨설팅을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74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요약, 번역,

비교 자료와 2,800만건의 오픈소스SW 검색, 상담 및 관련 정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표 3-20 연도별 주요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OLIS 방문자	8,026명	114,862명	336,605명	459,493명
CodeEye 사용건수	-	101건	558건	659건
상담 · 컨설팅	9건	136건	157건	302건



그림 3-31 OLIS 화면

이와 같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 오픈소스SW 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자사의 SW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복잡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올바른 오픈소스SW의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를 위한 사업은 ▲Free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sight Conference 개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컨퍼런스는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라이선스 이슈 등을 주제로 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라 한다)²⁹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이하 ‘OSI’라 한다)³⁰ 소속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10년과 2011년은 국내 오픈소스SW 관련 전문가 및 업체의 오픈소스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관련 이슈 및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전략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통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거버넌스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oftware Freedom Law

29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자유SW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배포·개작의 자유와 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사용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본부는 미국 보스턴에 있다.

30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OSI에서는 공개 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Open Source Definition, OSD)해 놓고 이 정의의 규정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I는 오픈소스SW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로서 공식적인 본부를 두고 있지는 않다.

Center, 이하 'SFLLC'라 한다)³¹등 해외 오픈소스 단체의 핵심 임원을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은 매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거버넌스 및 법·제도 개선 관련 논문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 관련 주제로 이뤄졌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관련 공모작들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교육 시 참고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밖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및 컨설팅이 2009년부터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많은 개발자와 IT업체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와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SW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한·EU FTA 발효로 인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오픈소스SW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주요 오픈소스SW 저작권자들에 의한 법적분쟁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픈소스SW 정보 제공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1 SFLLC(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미국 콜롬비아 주 로스쿨 교수이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고문인 에벤 모글렌 교수에 의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 법률 단체이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전세계 오픈소스SW중 과반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GPL라이선스를 FSF와 함께 창작 및 관리하고 있다.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 개요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창조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창조자원으로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저작물과 같은 콘텐츠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콘텐츠 개발의 핵심적인 원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요 산업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실제로 콘텐츠 기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기업 등에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에 대한 활용 수요는 지난 2006년 21.4%에서 2008년 41.7%, 2010년 5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². 관광이나 문화·예술·교통·기상·생물자원·식품안전 관련 저작물 등이 민간 분야에서 매우 인기있는 공공저작물로 조사되고 있다. 서울시 버스 앱이나 방방곡곡 투어 가이드, 공연 예매, 인물백과사전, 어류조감 학습을 비롯해 케이블TV·IPTV 등 방송용·교육용 콘텐츠로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 범위의 스펙트럼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공저작물은 업무상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높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유발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³³

3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년 DB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11

3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국내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가치는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 데이터센터에서도 2011년 발표한 자료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가치를 6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공정거래청도 공공정보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10억 파운드 규모로 산출하고 있다.

1)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를 두는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자들과 민간의 공공저작물 관리·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해외사례

세계 각국도 공공저작물 개방 및 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EU는 이미 지난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을 통해 EU 회원국들의 공공정보 민간 개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공정보를 단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 이하 'ODS'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OECD도 2006년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은 지난 2010년 9월 OGL(Open Government License)을 개발하여 23만 여건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호주는 2009년 연방·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 한다)' 조건하에 공개하여 국민이나 기업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도 2009년 3월부터 Data.gov 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 저작물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2010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을 발표하였고, 'openlabs.go.jp' 사이트의 구축·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지침 고시

그동안은 공공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공공저작권 관리 수준 저하로 이어져 실제 개인이나 기업 등의 공공저작물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32.4%도 공공저작물 재이용의 걸림돌로 저작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³⁴ 따라서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공공저작물의 개념을 비롯해 공공저작물 판단 기준, 권리 내용, 보호기간 등에 대한 내용과 민간에의 이용허락 시 약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제정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를 비롯하여 이용허락, 신탁, 침해 방지 등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저작권의 권리귀속여부를 유형별로 검증할 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공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공공저작권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4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연구>, 200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데이터베이스 백서>, 2011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및 저작권 관리지수 개발·보급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 확보가 불확실하여 실제 대외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보유 저작물에 대한 창작형태 및 계약관계 등을 분석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법률적 권리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공공저작물 유형 분류 및 권리확인, 저작권 양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700여 공공기관에 보급하였다. 여기에는 저작권 개념 및 유형, 성립요건, 보호기간 등 저작권 일반론을 비롯해 업무상 저작물 권리 처리절차나 저작권 양도, 위탁·공동저작물 관리, 출판권 설정, 이용허락 등의 세부적인 권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지수 항목 및 가중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저작권 관리지수를 개발하였다. 저작권 관리수준은 관리기반과 관리실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기반 영역에서 조직이나 운영 부분을 반영하고, 관리실태 영역에서 취득관리, 이용허락, 신탁, 침해 대응 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공공저작권 관리지수는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 상에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스스로 기관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저작권 관리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저작권 관련 전담인력도 없고, 관리기준이나 절차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지원 및 저작권 관련 컨설팅에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기관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저작권 신탁 관리

공공저작권 신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제반권리를 집중관리기구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하여 대외적인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저작권 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간 이용허락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일부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200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탁관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1년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변경되고 신탁 대상도 일반 공공저작물로 확대되었다. 2011년 말 현재 19개 기관 52,700건의 저작물이 신탁되어 있는데, 그 이용 실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신탁저작물 이용건수는 3천 여 건에 이르러 그 수요를 짐작케 하는데, 향후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 중심의 신탁을 통해 민간 이용을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다.

표 3-21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탁기관 수	23개 기관	24개 기관	24개 기관	19개 기관
신탁저작물 수	25,397건	29,556건	29,658건	52,700건

대표적인 신탁저작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종대왕동상, 김홍도 서당, 생물자원, 전통무늬 등이 있다.



세종대왕 동상

김홍도 서당

전통염색한지
제작과정

생물자원 DB

한국전통무늬

그림 3-32, 33, 34, 35, 36 대표적인 신탁 공공저작물

또한, 신탁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탁저작물의 권리정보를 비롯해 이용허락 및 유통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공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실무자 및 콘텐츠 기업 등 이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3-37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특히 2011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33개 공공기관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참여한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저작권 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실무자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저작권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관련 워크숍의 지속적인 개최 및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공공저작권 관리 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38. 39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다만 아쉬운 점은 신탁된 저작물 유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어문이나 영상, 음악 등이 별로 없고 이미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미지 형태의 신탁 저작물이 97%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분야에 신탁이 집중됨으로써 동 분야 작품 및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를 신탁 받아 민간에 유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종합편성 채널 등의 등장과 스토리텔링 등이 각광받으면서 어문이나 영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신탁 대상물을 어문이나 영상, 음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을 신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개발 및 공공누리 웹사이트 구축·운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준 라이선스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범위·조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해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KOGL 도입을 위한 공공라이선스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공공라이선스인 공공누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의 표준화로 권리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의 간소화로 활용도를 제고하며, ③ 공무원에 대한 면책허용으로 공공저작물 개발·공유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누리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기본마크 및 세부 아이콘을 개발하고, 공공누리 소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www.kogl.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3-40 공공누리 시스템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 대상 저작물을 선별하고 이용조건을 선택해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면 되고, 이용자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정해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 웹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적용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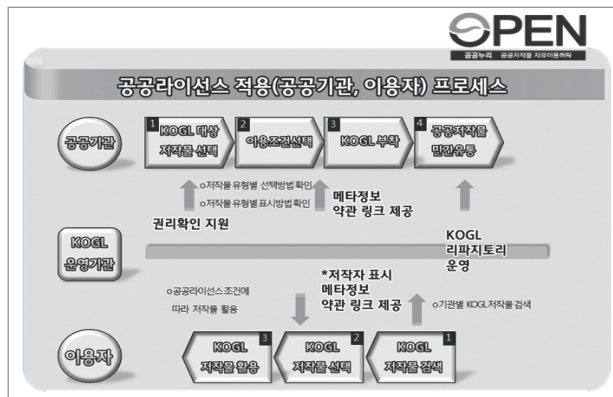


그림 3-41 공공누리 도입 프로세스

(3) 평가 및 전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저작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저작권 처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문제가 민간 활용의 큰 걸림돌로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처리가 기관마다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10년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공공저작권관리·활용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적극 공개하고, 이를 개인이나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누리의 적극 참여 등 몇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공공누리 제도 보급 활성화를 통한 공유저작물 발굴 확대가 시급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제도를 홍보·보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문, 미술, 사진, 영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단계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누리 부착을 통한 공유자원화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이 중요하다.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해당저작물의 권리처리가 선행되어야함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의 권리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작물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저작권관리지수 개발·보급 및 저작권 관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별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수를 보급하여 기관 스스로 저작권 관리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저작권 실무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저작권 관리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저작권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스스로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기관이 많기 때문에 신탁 제도를 통해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제공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유통을 통한 이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 등 신탁을 통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저작권 상생협의체

(1) 개요

저작권 제도 내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는 공정이용을 위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용자들도 이용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테두리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한 상생을 위하여 구성된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출범은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 이익을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해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대안 모색 및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지난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 간 갈등 예방 등 상생(Win-Win) 해법을 모색하고 거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2) 구성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사업자·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본협의체는 의사 결정기구로서 의제별 과제에 대한 최종 합의 및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협의체는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여 본협의체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며,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본협의체 구성 : 저작권단체연합회(권리자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업자 대표), CCK(이용자 대표), 공익대표 2명

3) 운영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협의체와 별도로 안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며, 정기적 회의 개최는 없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

(2) 활동 및 성과

2011년에는 전년도 본협의체에서 의결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1년 5월 31일 웹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웹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다. 법조문, 세부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공정이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인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웹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하여 링크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포럼의 수집·나눔 분과, 제도기반조성 분과, 사회적 협업 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고 포럼의 전체총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12월 23일 개최된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계속 논의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상정 및 의결하였고, 새롭게 발굴한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개선’ 안전은 2012년도 신규 논의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해 당사자(권리자, 사업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하여 관련 논의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웹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정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IT 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정이용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더욱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과제는 관련 포럼이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환경이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과제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조치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 평가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다루는 관계로 많은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작권을 둘러싼 상생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의 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개요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권리를 대리하고 이용을 알선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각 분야별 총 12개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 신탁관리’라는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22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영역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 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 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의 저작권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콘텐츠 복제, 전송권
뉴스	한국언론재단	뉴스 저작권
공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 저작물의 저작권

2. 활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KOSA'라 한다)는 저작물의 무단 출판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9일 설립된 '한국저작권협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저작권 보호 및 창작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체로서의 새로운 출범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바꾸고, 당시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1988년 7월 13일)를 받아 7월 28일 정식 출범하였다.

KOSA는 1989년 3월 16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어문, 연극, 미술,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KOSA의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 외에도 저작권 침해 조사 및 법률 구제 활동, 세미나와 간행물 발간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이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2,765명(82개 단체 포함)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표 3-23 KOSA 주요 회원

비고	회원
개인회원	곽재구, 김광섭, 김동리, 김용택, 김지하, 김태길, 도종환,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박재삼, 서정주, 신경림, 안도현, 이현세, 이어령, 정비석, 정현중, 정호승, 최인호, 최인훈, 피천득, 황동규, 황순원 등.
단체회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김상열연극재단, 서울대학교 출판부, 우리말글학회, 한국글쓰기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비평문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언어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글과컴퓨터 등.

2011년에 KOSA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11월 18일) 저작권 관련 현황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출판 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12월 2일)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보조를 맞추어 회원들이 원하는 e-Book 출간을 지원하기 위해 교보문고, 타임비 등과 업무체결을 진행하였으며, 협회 회보인 ‘저자인’을 연 4회 발행하였다.

KOSA는 2011년말 기준으로 권대우 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 이사회(이사 20인, 감사 2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3-42 KOSA 당연직 이사 단체 간담회



그림 3-43 출판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KBP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MC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0일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및 CATV방송사와 협회원의 저작권접권 이용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복제·배포·방송·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접권 이용료를 방송사로부터 징수하여 개별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노력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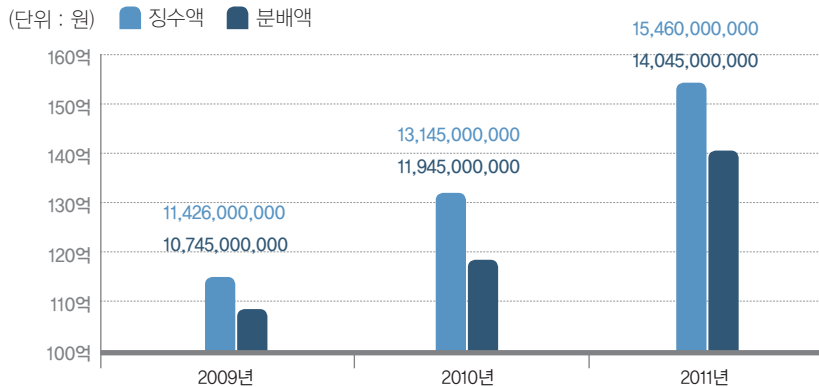


그림 3-44 징수액 및 분배액

2011년 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 지역민간방송사와 협약을 맺고 있고, CATV방송사 44개 프로그램제공사(PP)와 협약을 맺어 협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0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실연자의 권리보호 정도가 저작권자 및 해외의 저작권 선진국의 보호 사례보다 미약하여,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신장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결과 제18대 국회에 김을동 국회의원의 발의로 저작권법 제100조3항의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한 CATV방송의 종합편성채널과 ‘특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4,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제3대 이사장(김기복)을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9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3-45 10주년 기념 정책발표회 기념

(3)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는 드라마, 다큐, 예능, 라디오, 번역 등 방송의 전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방송 문예의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되었으며, 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업무, 방송시나리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집필활동 지원 업무, 후생복지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방송문예를 육성하기 위한 방송작가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지 ‘방송작가’와 ‘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 발간을 통하여

홍보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 유관단체의 회원으로 저작권보호 사업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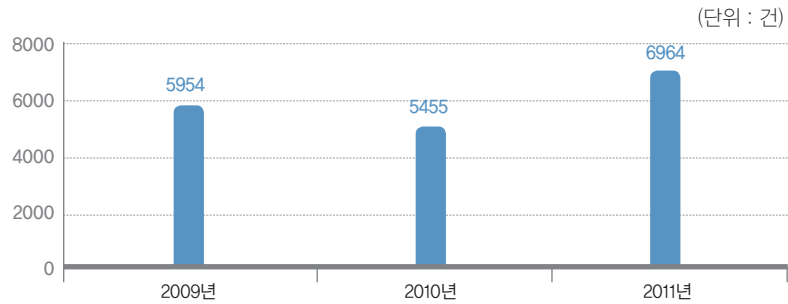


그림 3-46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2011년에는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침해에 대처하는 사업에 주력하여, 외주제작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양식 도입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방송작가들의 불공정 계약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작가 저작권 실무 워크숍’을 개최 (2011. 4. 7 ~ 8)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 이해증진을 도모하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현재 2천 4백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제27대 이사장(김옥영)을 포함한 28명의 임원과 총무팀·저작권팀·교육원팀으로 구성된 사무국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KRTRA’라 한다)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KRTRA는 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관련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KRTRA의 회원단체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6개 정회원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4개 준회원사가 있다.

KRTRA는 개별 저작권자가 직접 신탁한 권리도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회원을 통해 신탁된 복사·전송권의 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 시, 소설, 음악의 악보, 방송 대본 및 학술논문 등의 복사권 등이 회원사를 통해 신탁되는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RTRA는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적용되어 어문저작물의 문헌 복사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요하는 공중용 복사기 이용자와 저작물복사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 사업자는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관공서 및 기업체이며, 징수된 사용료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 등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외국 복사권단체의 경우 대부분 최초 징수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 분배를 개시하는데 반해 KRTRA는 2006년부터 분배를 개시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징수 전액분배를 실현하고 있다.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과 불법복제물의 근절을 위하여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하는 한편,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신학기(3월,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권리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어문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서적(논문 및 학회지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출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권리처리 및 유통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KRTRA는 저작권신탁단체로서의 고유 업무 외에도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보상금수령단체(2003년 10월 17일)와 제25조의 학교교육목적 이용 보상금수령단체(2008년 3월 13일)로 지정되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수업목적보상금 기준이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11-017, 2011. 4. 28.)됨에 따라, 대학 등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였다.

그밖에 징수된 보상금 분배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자 찾기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경우에 온·오프라인 광고, 이미지 구축 및 서비스, 도록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다. KRTRA 홈페이지(www.krtra.or.kr)를 통하여 교과서에 이용된 본인의 저작물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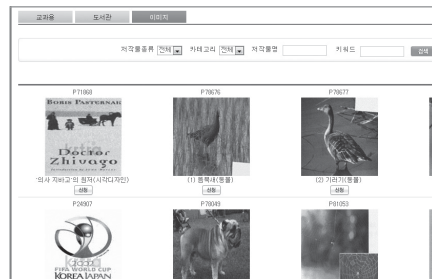


그림 3-47 KRTRA 홈페이지

2011년에도 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서발행자 및 인정도서 집필진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을 실시하였고,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여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3-48 저작권 교육 실시

협회의 의사결정 기구로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가 있으며, 사무국은 3팀(신탁사업팀·보상금사업팀·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을 변경하기 전인 (사)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 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었으며 2002년 11월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KSWA는 영화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상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KSWA는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 및 자료 조사,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협회 주최 상금 1억원 규모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 저작권 사업을 포함한 영화계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협회 부설로 1992년에 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을 통하여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영상작가전문교육원 37기 및 38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와 시상도 진행되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등 여러 위원을 추천하였다.

표 3-24 2011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구 분	제 목	반	성 명
공 모 당 선 작	2010 제23회 KBS단막극 공모전 (2011 발표)	해피엔드	21기	안홍란
	2011 제 24회 KBS 단막극 공모전	반칸국	23기	최종구

	구 분	제 목	반	성 명
공 모 당 선 작	2011년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아리랑	5기	김기덕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3분기	남편	27기	서장원
	제1회 o!eh-롯데 스마트폰 영화제	도둑 고양이들	34기	민병우
	2011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식별감	34기	김정희
	2011 한국영화 기성작가 공모전	태동	22기	고정운
		연흥관 살인사건	25기	장윤미
	영진위 애니메이션 공모전	신과 우람맘마의 학원	35기	진익순
		달씨	28기	주영진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수퍼덕 역도대회 나가다	35기	안정희
		공항에 부는 바람	38기	손학렬, 김울
201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나리오공모대전	자전거 왕 -민족의 영웅 엄복동	38기	최슬기	
	위아더 원	34기	최종현, 임진평	
영 상 화 된 작 품	영화개봉	풍산개	5기	김기덕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 의 눈	25기	장윤미
		고지전	7기	장 훈
		너는 펫	34기	민병우
	드라마 방영 (미니시리즈)	오싹한 연애	8기	황인호
		강력반	28기	허지영
		여자가 두 번 화장할 때	22기	신희원
		공주의 남자	22기	김 욱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10기	박은령

(6) 한국언론진흥재단(KPF)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KPF'라 한다)은 1962년 한국신문회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후 한국신문연구소(1964)와 한국언론인금고(1974) 등을 시초로 하는 세 단체가 모여 1998년 한국언론재단을 창립하였다가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세 기구의 통합으로 KPF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KPF는 디지털시대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뉴스 콘텐츠의 생산 지원, 읽기문화 진흥 및 확산,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 품질 제고, 인쇄매체 유통구조 개선의 5대 과제를 세우고, 140여 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2006년 6월 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2011년 말 현재 59개 언론사 69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7개 언론사 13개 매체는 2011년부터 대리중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체 참여사 규모는 66개사 82개 매체에 달한다.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은 크게 뉴스저작권 침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저작권 보호지원과 뉴스 콘텐츠 유료이용 활성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저작권보호 홍보를 위해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UCC, 신문광고)을 개최하고 ‘저작권 정책포럼’을 개설(6월 21일 ~ 10월 30일)하였으며, <뉴스저작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시장 확대 방안 연구>,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다.



그림 3-49 공모전 시상식

뉴스 유료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용 통합뉴스상품과 모바일 상품을 개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뉴스 유료이용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50, 51 토론회

(7) 한국영상산업협회(KMVIA)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KMVIA'라 한다)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MVIA는 영화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전국의 DVD 상영장 등에 대해 영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 감상 형태가 온라인·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면서 DVD 상영장 등의 영업형태가 줄어들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KMVIA는 지난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조치를 탑재하도록 촉구하는 하는 한편 합법유통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캠페인인 '굿 다운로드 캠페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서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신탁 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영상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 관리, 각종 관련 법안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영화 배급 및 유통, 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산업의 특성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011년도에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권리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대한 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화계가 원하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도서관과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에서의 불법영상물 사용근절과 무단사용금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했으며 불법 웹하드업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3차 소송을 시작하면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보호인식을 제고하였다.

KMVIA 회원사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합쳐 총 57개사가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영상저작권관리팀, 전략기획팀, 징수업무팀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까지 총 6명의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FPA는 영화제작자들의 단체로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와 부가관련시장 활성화, 영화산업 노사교섭 및 표준계약서 개발, 산업구조의 합리화 대안 모색 등 한국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65개사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011년에는 영화 스태프들의 교육훈련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출범시켰으며, 경기공연영상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진행한 '스크린라이터스 판'을 통하여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기획개발 소재 발굴에도 앞장섰다.

(9)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FKMP'라 한다)는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88년 6월 설립되었다. FKMP는 2000년 11월 14일에 (당시)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FKMP는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1988년 10월에는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9년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FKMP는 5,120명(2011년 12월 31일 기준)의 개인회원과 (사)대한가수협회,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위원회, (사)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연주자협회 등 6개의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탁사용료 및 각종 보상금 징수·분배, 음악실연자의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 외국에서의 국내 음악실연자 권리보호, 저작권접권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3-2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구분	'10년 실적(원)	'11년 목표(원)	'11년 실적(원)	달성률(%)
전송	7,574,600,200	8,050,000,000	8,335,917,843	103.6
복제	33,000,000	70,000,000	57,393,185	82
신탁사용료계	7,607,600,200	8,120,000,000	8,393,311,028	103.4
방송	2,639,579,734	3,100,000,000	3,311,749,322	106.8
다음송	91,932,726	100,000,000	105,526,772	105.5
공연	275,927,204	560,000,000	363,145,992	64.8
보상금 계	3,007,439,664	3,760,000,000	3,780,422,086	100.5
총 징수액계	10,615,039,864	11,880,000,000	12,173,733,114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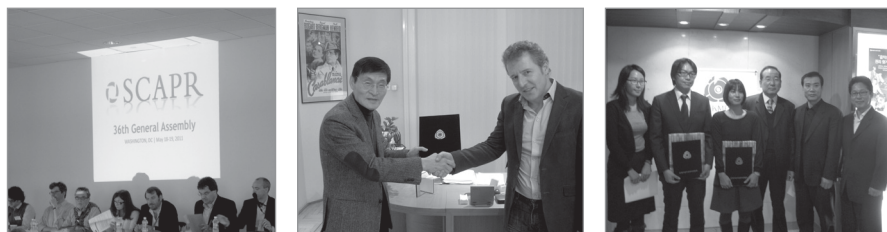


그림 3-52, 53, 54 FKMP 활동

2011년 FKMP는 신탁사용료 관리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과 디지털음악시장 현황조사 및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등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연자 지위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미분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실연정보고도화 사업을 2011년에도 지속하였으며, 단체 인지도 및 저작인접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에 홍보CF를 방송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탁회원이 5,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에서의 우리 음악실연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실연자권리 관리센터(CPRA)와 지속적인 교환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제36차 세계실연자 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총회 및 SCAPR에서 개최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해 해외단체와 상호관리 계약 체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 실연자관리단체인 SAMI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64년 설립되었다. 1988년 2월 23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 등을 관리하고 있다. KOMCA는 2010년에 저작권 사용료 1,028억을 징수하여 저작권 사용료 1,000억 시대를 연 이래 2011년에는 1,087억을 징수하여 이러한 추세를 확대해 나갔다.

표 3-26 2011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천원)

관	항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음악사용료 수입	방송사용료	21,302,000	20,589,566	97%
	전송사용료	28,500,000	27,672,433	97%
	광고사용료	734,000	606,320	83%
	녹음사용료	13,582,000	13,822,540	102%
	영화사용료	218,000	255,091	117%
	출판사용료	1,107,000	1,099,655	99%
	공연사용료	34,157,000	34,486,443	101%
	외국입금사용료	10,000,000	10,233,410	102%
합 계		109,600,000	108,765,458	99%

2011년 KOMCA는 효과적인 저작권관리 제도를 심층 논의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3월 17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대회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아태지역 이사인 Ang Kwee Tiang과 ASCAP(미국음악공연권협회)의 Willie Yeung, 윤선희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원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익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영 변호사(전문영 법무법인) 등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시대의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하에서 단일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와 복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KOMCA는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저작권총회(2011.6.7~8, 벨기에 브뤼셀)에 신상호 회장이 참석하여 유럽지역(프랑스-SACEM·SACD, 영국-PRS)과 미주지역(캐나다-SOCAN, 칠레-SCD)의 대표단과 만나 해당 지역에서 한국 작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태지역(일본-JASRAC, 호주-APRA) 대표단과는 단체간 업무협력 강화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림 3-55 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국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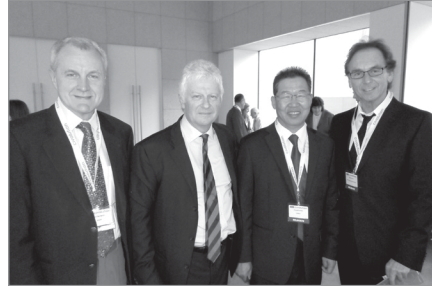


그림 3-56 캐나다 SOCAN, 호주 APRA 대표단과 교류

또한, KOMCA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과 함께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합법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이용허락마크를 부착하는데 합의하고,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및 KOMCA 단독마크 디자인을 제작해 해당 사이트에 배포했다.



그림 3-57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그림 3-58 KOMCA 단독 마크

KOMCA는 음악을 창작하는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인 ‘한국음악저작권대상’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고, 그 첫 번째 시상식인 ‘제1회 KOMCA MUSIC AWARDS’를 12월 4일 잠실 올림픽공원(올림픽홀)에서 개최했다.

수상부문은 본상 대중부문(발라드, 댄스, 힙합, 락, 트로트, OST)과 순수부문(국악, 가곡, 동요), 그리고 특별상(신인상, 한류음악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됐다. 영예의 저작권대상은 티아라 1집, 이승기 3집 등의 작품의 저작자인 조영수 씨가 수상하였다.



그림 3-59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장면

그밖에 KOMCA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과 함께 음악산업 발전을 제2차 세미나(주제 :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를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주니퍼홀)에서 개최했다.

PWC삼일회계법인 홍승환 회계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진원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양정환 대표(소리바다), 김창환 대표(KMP홀딩스), 정혜승 본부장(CJE&M), 신창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열 부회장(대한가수협회), 정규호 대표(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황세준 작곡가(KOMCA 회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들이 토론자로 참여, 한국 음악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사회 각층의 노력을 촉구했다.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KAPP'라 한다)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KAPP는 2003년 3월 17일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KAPP는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2001년 12월에는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9년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반 이용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KAPP는 2011년 현재 1,700여명의 신탁회원의 18만 여 곡에 이르는 음원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총 2,500여명의 권리자의 180만 여 곡의 음원에 대한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다.

표 3-27 KAPP 회원 현황

구 분	신탁회원	보상회원	신탁계약자	보상금등록자	총 회원
2010년 12월 31일	1,714	421	-	-	2,135
2011년 12월 31일	1,745	432	236	117	2,530
증가수치	31	11	236	117	395
증가율(%)	1.81	2.61	-	-	18.50

표 3-28 KAPP 음원 관리 현황

구 분	신탁음원	보상음원	총 음원
2010년 12월 31일	192,145	1,493,250	1,685,395
2011년 12월 31일	183,756	1,633,980	1,817,736
증가수치	-8,389	140,730	132,341
증가율(%)	-4.37	9.42	7.85

2011년 KAPP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규기술 산업에 참여하여(9월) 음악 분야의 메타데이터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년 말 현재 모델링 구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웹구현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음악 관련 4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 등을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분류, 온·오프라인 자료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년 5월 KAPP가 이관받아, 올림픽홀 내 1층과 지하 1층에 상설·기획전시실 및 자료관을 2011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2011년 3월 KBS 방송심의 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KDB'라 한다)은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육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모체로 하여 2009년 명칭 변경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단체이다.

KDB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체계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민간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22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그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수행했던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을 이관받았다. 신탁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문화콘텐츠에서 공공저작물 전분야로 확대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DB는 2011년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LRIGH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과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이 자신들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공공저작권 관리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LRIGHT'은 구축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저작권통합관리번호인 'ICN'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인 'CLMS'와 연계하여 'ALRIGHT'를 통한 이용허락내역이 'CLMS'를 통해서도 검색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KDB는 공공부문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므로 신탁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그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민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는 달리 신탁자인 공공기관의 의사에 따라 무료저작물을 함께 유통하여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3-60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KDB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업과 함께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여 2011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의 개발, 보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공공누리는 이용허락조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을 배제하여 공공저작물 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3-29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www.kogll.or.kr)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 상업적 이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 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1. 개관
2. 주요 판례 평석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1. 소송
2. 조정
3. 저작물 감정
4. 법률상담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1. 개관

2011년에도 주목할 만한 저작권 법리가 담긴 판례나 앞으로의 저작권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이 담긴 법원의 판단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 사례 축적을 통하여 장차 분쟁 해결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2011년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한다.

2. 주요 판례 평석

(1) 뉴스화면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1.2.24. 판결 2007두21587)

대상판결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은 첫째, 외국방송사의 뉴스 수신대가가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가사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원고(상고인) 문O방송(이하 '원고'라 함)이 외국방송사인 TII와

체결한 방송권계약의 내용과 TII에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월 미화 12,500 내지 13,333달러로서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높은 수준인 점, 원고는 TII가 제공한 서비스를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TII 등 외국방송사로부터 뉴스화면을 송출받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가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물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스스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도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보도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5조³⁵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비추어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점과 그 이용행위의 태양이 뉴스화면을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의 법적 성격이 저작권사용료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저작권사용료와 용역대가를 적정하게 구분한 것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뉴스화면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련하여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의미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실 등의 배열과 구체적인 문장표현 등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만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 대법원³⁶의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35 개정 전 저작권법 제25조는 2006년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8조와 동일함.

36 대법원 2006. 9. 14. 판결 2004도5350(연합뉴스 기사 사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면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 대법원 판결³⁷와 대비할 때 그 기본취지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자막이 삽입된 DVD의 2차적저작물성 (대법원 2011.4.28. 판결 2010도9498)

이 사건은 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을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갑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갑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을 보호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소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재산권의 하나인 공연권을 가진 적법한 고소권자인지 여부이다.

원심은, 공소의 1 주식회사(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공소의 2 주식회사(을

³⁷ 대법원 1997. 11. 25. 판결 97도2227(대학입시용문제집 사건) 및 대법원 2006. 2. 9. 판결 2005도7793(썸네일이미지 사건) 등.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라파에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에트’ DVD(이하 ‘이 사건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의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의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 상고심은 원심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공소의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그에 관한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DVD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원심이 공연권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사판결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 중,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판결 99도863, 대법원 2004. 7. 8. 판결 2004다18736 등 참조)는 판시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

이 사건은 피고 티맥스000가 원고 FNS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피고 티맥스000는 원고 FNS의

허락 없이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 FNS의 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배척한 사례이다. 원고 FNS는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큐로O은 원고 FNS로부터 ‘Bancs’ 프로그램에 대한 대한민국 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티맥스OOO가 2003년경 주식회사 한O은행(이하 ‘한O은행’이라 한다)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Bancs의 소스코드를 복제 혹은 개작하여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 FNS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하였고, 원고 큐로O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독자 기술로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한O은행은 Bancs 구입 후 실정에 맞게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O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두고 Bancs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FNS의 프로그램저작물의 개작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이고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한O은행의 신중합온라인시스템은 이 사건 제1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인 원고 FNS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컴퓨터프로그램(이하 ‘Bancs’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창작된 Bancs의 개작물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고 FNS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피고의 직원들이 한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중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한줄씩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중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접근’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을 한 결과, Bancs와 ProBank 및 ProFrame 중 상당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 FNS의 허락 없이 Bancs의 2차적 프로그램인 신중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 FNS가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원고 큐로O이 원고 FNS로부터 Bancs에 대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큐로O은 FNS를 흡수합병하여 FNS가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대로 양수하였는데, 원고 FNS와 FNS.com 사이의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에 의하면 원고 큐로O이 Bancs에 대한 국내 독점적 사용권 등을 부여받은 사실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 큐로O이 원고 FNS로부터 Bancs에 대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의 존재만으로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는 준물권이 발생하는 설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또 한편, 원고 FNS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는 Bancs를 개작한 신중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 중 상당부분을 작성하였을 뿐 Bancs를 복제하여 ProBank나 ProFrame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Bancs 자체를 복제·배포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FNS의 Bancs에 대한 복제 및 배포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FN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프로그램저작물의 개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의 일반론으로 돌아가 그 요건으로서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충족하면 개작권 침해를 인정한 점에서,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한 개작권 침해의 성립요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선언한 데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거래관계에서 개작권 침해판단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학원강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학원 경영자의 과실 인정 (대법원 2011. 7. 28. 판결 2009도6722)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그 사용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학원생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과정의 교재 선정 및 관리를 그 사용인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용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과정의 교재 선정 및 관리를 그 사용인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구저작권법 제103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범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법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양벌규정을 정한 구 저작권법 제103조는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서 개정되었는데,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1조 단서)”고 규정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이러한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형사사건이지만, 그 상고이유에서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과실여부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이유에 대해서까지도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인은 구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든,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에 의하든 상관없이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5) P2P웹사이트 운영자의 상습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9. 8. 판결 2010도14475)

이 사건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으로, 친고죄 제외사유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24. 판결 2009도5127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 19. 판결 2000도4870, 대법원 2006. 9. 8. 판결 2006도2860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갑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을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갑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을 학설과 판례³⁸에 맡기고 있다. 종래 판례에서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판시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도 이와 같은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하급심판결³⁹에서도,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이 얽매어 그러한 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38 대법원 2005. 10. 28. 판결 2005도5774.

39 부산지방법원 2010. 10. 14. 판결 2010노2180.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습성 판단기준에 있어서 포괄적·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형사정책적으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불법성이 비상습범의 불법성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중처벌되는 상습범의 특별한 불법성은 행위자불법의 측면과 행위불법의 측면 모두에서 논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여부에 의존하지 않고서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 법익보호와 법질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 이 사안의 판시내용은 형법상 상습성에 대하여 종래 판례에서 구체화되고 객관화된 일반론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상습성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대상 판결의 의의가 있다.

(6)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금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판결 2010나97688 [상고심 계속 중])

이 사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하였는데,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을 금지한 사례이다.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들인데, 자신들의 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하게 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침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송법 관련 규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동시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거나 동시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단순히 수신영역에 머무르면서 가입자인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권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방송신호를 분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금지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동시재송신행위에 대하여, 첫째 방송법 제7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점, 둘째 가입자인 수신자들의 정당한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권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넷째 원고들의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신규가입자만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기각 하였다.

대상판결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들 사이의 방송재전송을 둘러싸고 몇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사실심의 최종판단이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래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SO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법 2009.12.31.자 2009카합3358호

결정)에서는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나아가 가처분 소송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1.6.2. 판결 2010라109)에서는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승소하였다. 또한, 그 본안소송인 대상판결의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0.9.8. 판결 2009가합132731)에서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항소심인 대상판결도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인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2012년 6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SO들과 사이의 방송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O들은 이에 불복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용료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이 사안은 미디어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방송콘텐츠보호를 둘러싸고 발생한 대표적인 저작권분쟁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법원이 불법에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당사자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역할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호탄으로서 작용할 것이므로, 사법적극주의의 긍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7) 음악 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판결 2010나48266)

이 사안의 쟁점은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위한 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존에 정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25조에는 ‘매출액×9%×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만을 의미하는지(피고측 주장), 아니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하는지(원고측 주장)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 음악저작권협회와 피고 무선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음악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여기서의 매출액이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그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여기서 부가서비스이용료란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관계없는 비용이고, 원고가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원고의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7조 제2항 소정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과 마찬가지로 대상판결인 항소심에서는 2008년 2월 28일 개정된 원고 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이 사건 매출액의 정의)는 매출액을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출액의 정의에 근거하여, 서비스가입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 다른 쟁점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대가와 개별 목적물에 대한 대가를 구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가서비스이용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거나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이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이상 저작권과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과정상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서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저작권징수규정의 개정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저작권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하여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당해 저작권관리단체는 위탁자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지 않을 신탁계약상의 의무를 통상 진다. 문제는 저작물사용료와 관련하여 저작물이용자와 저작권관리단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입법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저작물 1신탁관리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바, 독점적인 단체에 의한 저작권의 집중관리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스스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할 필요가 실무에서 요청되고 있다.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인 조치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소리바다 및 인터넷 빛고을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1. 2. 24. 결정 2009 헌바 13·52·110)

청구인들은 실시간 음악감상, mp3 등 음원파일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들을 저작권법 제104조가 규정한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판단하였고,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42조 소정의 과태료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들에게 대하여 같은 액수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식재판을 하였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된 저작권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병합된 3사건(2009헌마13, 2009헌바52, 2009헌바110)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 심판대상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심판대상 사안은, 첫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 심판대상 조항들이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이 조항들의 입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고,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가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이 합헌 내지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이다. 즉,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중 위임형식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가사 그러한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서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⁴⁰

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인 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40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대상결정은 우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포괄위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저작물 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다. 특히 청구인들이 핵심적으로 다투는 과태료부과기준의 문제는 대상결정의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등의 위법성에 관한 쟁점은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부분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어서 직접 판단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은 법리상 당연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면, 적어도 판단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대상결정의 이유에서 실시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⁴¹도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내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라는 쟁점을 검토한 끝에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점에서, 저작권법의 구체적 규정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적 판단을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하위법규와 관련한 논의가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관련이유 실시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대상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저작권법 및

41 이규홍,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계간저작권』, 2011 여름호(제9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6. 175면.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결합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도 부수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저작권 분쟁해결

1. 소송

(1) 개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중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저작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 침해를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분쟁의 대상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제11장에 정한 각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진행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침해자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다투거나 기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 제기하게 된다.

헌법소송 내지 헌법재판은 저작권 관련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과 저작권 관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누어진다.

(2) 2011년 소송 현황

표 4-1 2011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번호	선고일자	사건번호	내용	비고
1	2011. 2. 10.	2009도 291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도' 및 '편집물'에 대한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②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 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 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들 여행 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2011상, 594
2	2011. 2. 24.	2007두 21587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사의 뉴스 화면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외국 방송사의 뉴스 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2011상, 663
3	2011. 3. 10.	2009도 6256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대표자가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경우라면 그를 직접 같은 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미간행

번호	선고 일자	사건번호	내용	비고
4	2011. 4. 28.	2010도 9498	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을 영상 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갑 회사의 2차저작물에 해당하고, 갑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미간행
5	2011. 5. 13.	2009도 6073	종이접기 설명 부분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미간행
6	2011. 5. 13.	2010도 7234	피고인이 갑이 작성한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 갑의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미간행
7	2011. 6. 9.	2009도 52304, 52311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을 회사의 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미간행
8	2011. 7. 14.	2010도 144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여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미간행
9	2011. 7. 28.	2009도 6722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어 학원에서 그 사용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영어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과정의 교재 선정 및 관리를 그 사용인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용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례	미간행

번호	선고 일자	사건번호	내용	비고
10	2011. 8. 25.	2009다 73882	<p>① 시나리오 집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기한 성명 표시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그와 같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95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p> <p>②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인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p>	미간행
11	2011. 9. 8.	2010도 14475	<p>① 친고죄 제외 사유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p> <p>②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p>	공2011하, 2172

이외 2011년 저작권 관련 고등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5건, 광주고등법원 1건이 있으며 판결일자와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1.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1205, 1212 판결 (상고)
2.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54063 판결 (상고)
3. 서울고법 2011. 2. 9. 선고 2010나54001 판결 (확정)
4.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47782 판결 (확정)
5.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09나111823 판결 (확정)
6.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10나77424 판결 (확정)
7. 서울고법 2011. 5. 25. 선고 2009나60413 판결 (확정)
8. 서울고법 2011. 6. 2. 자 2010라109 결정 (신청 취하)
9.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나89533 판결 (상고)
10. 서울고법 2011. 7. 6. 선고 2010나109277 판결 (확정)

-
11.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0나 97688 판결 (상고)
 12. 서울고법 2011. 8. 1.자 2010라1525 결정 (확정)
 13.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09나71420 판결 (확정)
 14.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상고)
 15. 서울고법 2011. 12. 14. 선고 2011나20227 판결 (확정)
 16. 광주고법 2011. 9. 30. 선고 2011나961 판결 (확정)

2. 조정

(1) 개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소송물 가액이 소액이고 분쟁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으로 ADR의 하나인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조정위원의 권고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저작권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조정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조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조정 제도 외에 간이조정이라 불리는 알선제도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알선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한 이유로 이용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 조정의 대상

조정 대상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및 보상금에 관한 분쟁이 된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의 실연을 사진촬영, 녹음·녹화 또는 방송하거나,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배포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녹음·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함에 있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의 대상이 된다.

2) 조정의 효력

조정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지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재판상의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 제117조(조정) 제1, 2항에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결문과 동일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법원은 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을 두었으나,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1198호)’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법원 규칙 제1051호를 폐지하였다.

3) 조정의 특징

조정의 특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혼재될 우려가 있으나, 일반론적 관점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정의 장점

첫째, 경제성이다. 조정은 신청 시에 그 내용에 따라 1만원~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이후 종결 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둘째, 전문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학계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비공개성이다.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넷째, 신속성이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성립으로 간주,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집행가능성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성립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여섯째, 신청의 개방성이다. 조정은 권리자 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리자의 주장이 과도할 경우 침해자의 입장에서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정의 단점

조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정제도의 본질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조정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분쟁이나 노동분쟁과는 달리 순수한 사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조정의 절차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위원회 조정부는 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을 기본 구성 원칙으로 세워 두고 있으나,

조정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1명의 위원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이 접수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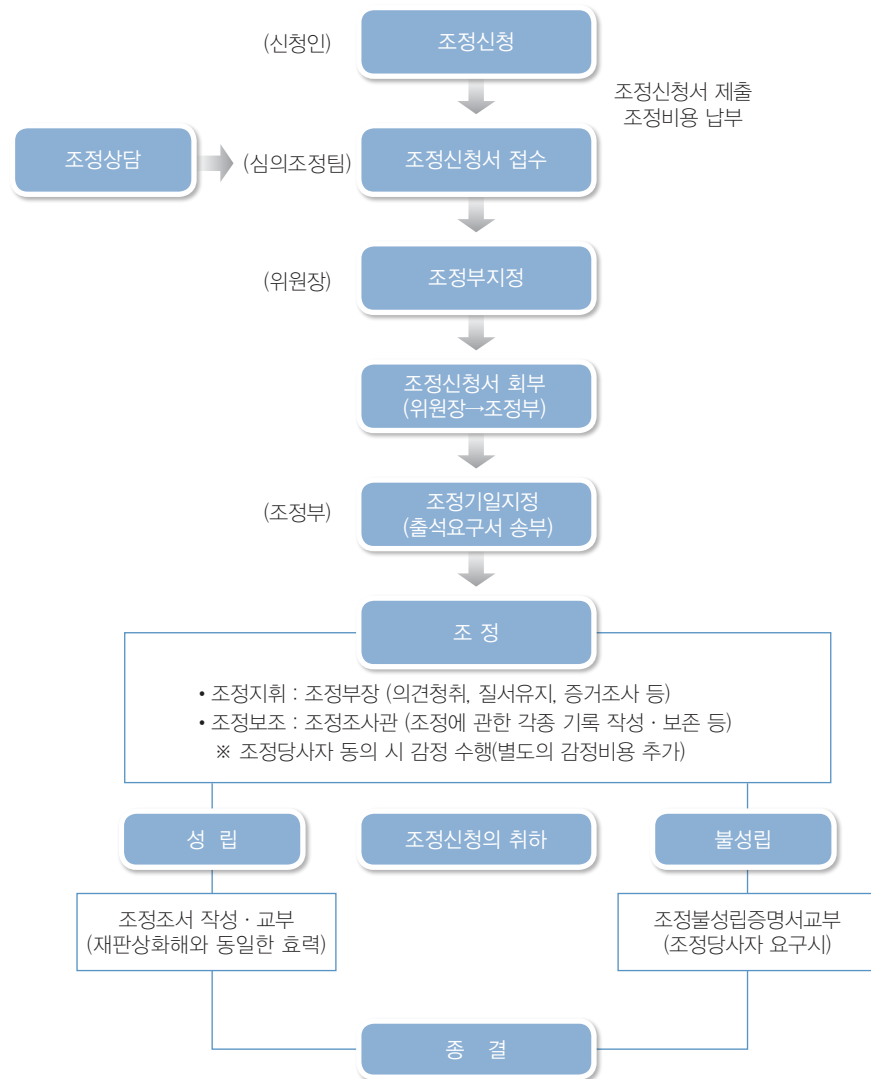


그림 4-1 분쟁조정 절차도

(2) 활동 및 성과

1) 조정부의 운영

2011년 위원회 조정부는 7개의 합의부와 4개의 단독 조정부로 총 11개의 조정부가 운영되었다. 조정은 총 82건이 신청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건수를 저작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82건 중 어문저작물이 26건, 음악저작물이 1건, 미술저작물 11건, 사진저작물 7건, 영상저작물 5건, 도형저작물 2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9건, 저작인접물 1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음악저작물 등의 비중이 높으며, 연극이나 건축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건수비율은 기관 통합 이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일반 저작물 분야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체적인 저작물 분야별로 균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 신청건수 증가 이유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해당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조정기일 진행과정에서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격의 없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조정부는 이러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인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저작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현황					
	전년 이월	신규	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계
1988	-	-	-	5	5	-	-	-	10
1989	-	-	-	2	4	2	-	-	8
1990	-	-	-	8	6	1	-	-	15
1991	-	-	-	14	7	4	-	-	25
1992	-	-	-	10	12	7	-	-	29
1993	-	-	-	14	6	7	-	-	27
1994	-	-	-	12	32	2	-	-	46
1995	-	-	-	16	23	-	-	-	39
1996	-	-	-	9	8	1	-	-	18
1997	-	-	-	14	15	3	-	-	32
1998	-	-	-	25	22	9	-	-	56
1999	-	-	-	12	20	13	-	-	45
2000	-	-	-	13	18	9	-	-	40
2001	-	-	-	25	36	17	5	-	83
2002	-	-	-	53	51	18	5	-	127
2003	-	-	-	33	53	40	5	-	131
2004	-	-	-	37	33	19	8	-	97
2005	-	-	-	53	19	17	5	-	94
2006	-	-	-	38	25	54	7	-	124
2007	-	-	-	24	19	20	15	-	78
2008	-	-	-	29	21	9	3	-	62
2009	-	-	-	29	10	13	3	-	55
2010	-	62	62	23	17	7	-	15	62
2011	15	82	97	28	29	28	-	12	97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단위: 건)

분야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계
1988	6	2	-	-	-	-	-	-	-	-	2	-	-	10
1989	5	-	1	1	-	1	-	-	-	-	-	-	-	8
1990	6	-	-	-	-	7	-	-	-	-	2	-	-	15
1991	13	1	1	4	-	1	1	-	-	-	4	-	-	25
1992	19	1	-	2	-	4	1	-	-	-	2	-	-	29
1993	18	1	-	6	-	2	-	-	-	-	-	-	-	27
1994	30	2	-	6	-	6	1	-	-	-	1	-	-	46
1995	12	13	-	7	-	1	-	-	1	-	1	-	4	39
1996	10	6	-	1	-	1	-	-	-	-	-	-	-	18
1997	6	5	-	11	-	2	-	-	3	-	1	-	4	32
1998	13	9	-	20	-	4	1	1	3	-	-	-	5	56
1999	8	-	-	14	-	3	1	1	2	-	3	-	13	45
2000	7	1	1	9	1	1	3	1	-	-	3	-	13	40
2001	19	3	1	26	2	10	4	1	1	-	-	-	16	83
2002	32	7	1	23	1	20	16	1	8	-	-	-	18	127
2003	29	29	-	4	1	41	1	-	6	-	-	-	20	131
2004	14	3	-	33	1	13	1	-	6	-	2	-	24	97
2005	31	1	-	12	1	13	-	-	6	1	1	1	27	94
2006	24	30	-	5	-	16	1	-	6	1	6	2	33	124
2007	13	4	-	8	-	8	-	2	4	-	5	-	34	78
2008	9	15	-	5	-	10	3	-	4	-	1	2	13	62
2009	10	3	1	7	-	11	-	-	2	1	4	-	16	55
2010	18	6	-	12	-	7	2	1	1	-	7	-	8	62
2011	26	1	-	11	-	7	5	2	-	-	11	-	19	82
계	378	143	6	227	7	189	41	10	53	3	56	5	267	1,385

2) 지방순회조정부의 운영

지방순회조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2011년에는 제주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그동안은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따로 없어, 경우에 따라 조정기일로 인해 분쟁 당사자의 스케줄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가 기일마다 출석해야만 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에서 조정을 개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조정기일에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성립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순회조정부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 제주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모습

(3) 평가 및 전망

2011년에는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정건수가 전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저작권 분쟁 건수를 감안한다면 아직 조정이용 비율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조정의 강제력이 낮은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알선제도는 2011년 1건의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그 효력측면에서 조정과는 달리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한 점에 있다. 다만, 알선제도는 무료이고 당사자간 이견이 크지 않을 때에는 조정보다도 더욱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제도 설명회, 리플릿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조정도입 및 시설 확충 등의 환경 개선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저작물 감정

(1) 개요

IT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서의 접근이 쉬워지고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 특히 표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그리고 법적인 경험 및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단독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및 제119조에 따라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감정제도 주요 연혁〉

-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업무 수행('01~'09.7)
 ※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02.12.) 제38조의2(감정)
- (구)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저작물 감정업무 수행('07~'09.7)
 ※ 저작권법('06.12.) 제119조(감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저작물 전반(일반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정 업무의 통합수행('09.7.~현재)

그림 4-3 저작물 감정제도 주요 연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은 각 저작물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고,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특히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여 진행되는 사(私)감정과는 달리,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위원회 감정은 행정처리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감정서 심의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i)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감정, ii) 소프트웨어의 완성(하자)도, 유사(복제)도, 개발비 등을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감정, iii)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자료(설계서, 매뉴얼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4-4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구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계
2007년									48		48
2008년	1								47		48
2009년									44		44
2010년	8	1		5	1				38	1	54
2011년	4	1		3	1		1		27		37

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의뢰(법원의 촉탁 등)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감정이 의뢰되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감정비용을 의뢰기관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예상 감정비용이 예납되면 본격적인 감정에 착수하게 된다.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의뢰(촉탁)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4-4 감정의 진행 절차

(2) 감정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가. 사건 개요

원고(이하, '甲')는 소외 회사(이하 '丙')로부터 업무를 승계 받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을 더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이하, '乙')가 甲의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장에 납품하자 甲은 乙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乙은 당해 프로그램은

甲의 것을 복제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丙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甲의 제품과 乙의 제품 및 丙의 제품의 동일·유사 정도에 관한 감정을 요청하였다.

나. 감정 결과

감정결과 甲의 제품과 乙의 제품은 甲의 제품을 기준으로 99.78%, 乙의 제품을 기준으로 88.24% 유사하였고, 甲의 제품과 丙의 제품은 甲의 제품을 기준으로 6.50%, 丙의 제품을 기준으로 9.89% 유사하였다. 즉 乙의 제품은 甲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지엽적으로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감정】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고소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고소인은 퇴사 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는 소외 다른 업체의 상표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것이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고소인 등록저작물인 A, B의 저작물성 여부와 소외 업체 상표 C와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감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였다.

나. 감정 결과

A, B, C는 공히 월계수로부터 차용한 U자형 디자인이 공통요소로, 월계수 단독 또는 하단부에 월계수를 위치하고 상단부에 다른 주제를 표현하는 형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A의 하단 월계수 부분만을 놓고 보면 C의 월계수 부분과 선도, 배열, 크기 및 비례 등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유사하나, A 상단부에

위치한 강렬한 불꽃 모양의 로고 디자인은 별도로 창작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C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의 저작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와 C는 전체적인 미감이 상이하고 새롭게 창작된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이 적지 않은 점으로 보아 A와 C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는 상단 주제 없이 U자형 월계수 디자인으로만 구성된 형태로, 이미지 중첩 결과 C의 하단 월계수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명되어 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C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2) 활동 및 성과

1) 감정의 수행

2011년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일반저작물 10건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7건 총 37건의 감정이 의뢰되었고, 35건의 감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였다.

표 4-5 2011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구분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계
2011년	4	1		3	1		1		27		37

2011년도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상 목적으로 의뢰하는 감정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전체 감정의뢰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6 2011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구분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건수	17	10	9	1
비율	45.95%	27.03%	24.32%	2.70%

2)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감정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 저작물 유형별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기준의 적합성, 감정 방법의 타당성, 감정 내용의 명확성,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심의한다. 현재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감정전문위원회는 SW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30회의 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3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표 4-7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 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회수	30	28	20	26	30

3) 감정관련 조사 연구 강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정기법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감정기법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10개 과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SW저작물 감정에 관한 기본적 고찰>과 <SW저작물 감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 2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위탁연구과제로 저작물 분야별 판결을 통한 감정기준을 도출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W분야 감정 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고 공정한 감정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2011년에는 검·경 및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의뢰된 감정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물 감정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도 감정은 주로 정량적 방식에 의한 감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결과 유사성이 인정된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감정서를 포함한 모든 비교결과물이 전자적 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시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점증하는 감정사건에 대하여 보다 실효적인 감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정의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감정의뢰 안내서를 발간하여 의뢰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감정기준을 견고히 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감정 업무체계 개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저작물 감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할 것이다.

4. 법률상담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종사자들과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상담과 저작권 관련 분쟁처리 방법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의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을 기본으로 서신, 이메일, 팩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등과 함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법률상담의 유형

가. 오프라인 상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답변을 듣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원이 전화, 내방, 이메일, 서신(우편, FA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나. 온라인 상담(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www.counsel.copyright.or.kr)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저작권 일반상식, 저작권 권리관계 및 법률 저촉 여부, 저작권 법령정보와 판례, 저작권 침해관련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등을 키워드 하나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정보제공사이트로 이용자들은 저작물의 분류나 저작권 산업 분야별, 혹은 관련 유형을 통하여 궁금한 저작권 질의를 찾아 세분화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예에 발맞추어 신규 콘텐츠가 추가된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마쳤으며, 개편된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태그검색 등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분야별 카테고리에 신규 분야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저작권상담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빈번하게 개정된 법률을 실시간으로 탑재하여 법령정보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등의 잦은 질의가 오고 있는 개정 내용은 자주 찾는 질문이나 백문백답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향후에도 새로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이슈와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 및 실무종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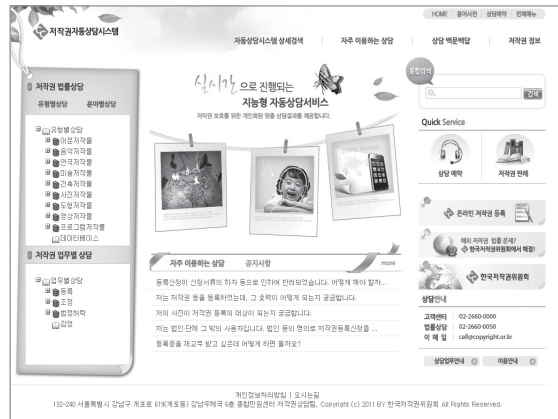


그림 4-5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사이트

(2) 활동 및 성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권적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온라인 자동상담은 매년 전체 상담건수에서 약 80~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6년 14,548건, 2007년 47,382건, 2008년 50,931건, 2009년 61,387건, 2010년 51,710건이며, 오프라인 상담의 경우 2006년 6,674건, 2007년 5,487건, 2008년 5,258건, 2009년 8,828건, 2010년 11,638 건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의 경우 전체 상담건수는 104,112건으로 전년 63,348건 대비 약 63% 증가하였고, 이는 1991년 저작권 상담을 시작한 이후 연간 통계 최다 건수이다.

상담매체별로 온라인 자동상담은 91,992건으로 전년 대비 77%, 전화 상담 11,116건으로 7%, 내방상담은 280건으로 14% 증가하였다.

반면, 이메일 상담 및 서신상담은 전년 대비 상담건수는 약 30% 감소하여, 상담 서비스 이용자들은 즉시 답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선호하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작물 유형별 상담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어문저작물이 전체의 16.8%인 17,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저작물이 9.1%로 9,440건, 영상저작물이 8.9%로 9,266건, 사진저작물이 8.9%로 9,243건, 미술저작물이 7.6%로 7,91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연 관련 6%로 6,225건, 음반 관련, 5.1%로 5,279건, 기타저작물 5.1%로 5,338건, 방송 관련 4.5%로 4,710건, 연극저작물 4.4%로 4,568건 등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의 5개 분야가 상위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연도별 · 유형별 상담 건수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1				83	42	38	52	10	17	37	22	10	311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51,710)
2011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104,112 (91,992)
계	22,765	37,642	48,344	37,427	31,362	30,394	38,146	29,364	33,809	33,806	22,020	47,417	313,918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표 4-9 2011년 상담매체별 통계

구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온라인	자동 상담	794	14,588	8,995	10,856	8,088	3,953	5,586	9791	9,179	9,159	1,335	9,668	91,992
	전화 상담	854	683	1,057	1,082	929	1,111	898	963	852	843	1,002	842	11,116
오프라인	내방 상담	19	14	13	19	15	30	32	30	23	22	31	32	280
	서신 상담	1	2	3	3	3	1	6	2	1	2	3	2	29
	메일 상담	57	26	71	84	66	45	64	64	48	49	63	58	695
	소계	931	725	1,144	1,188	1,013	1,187	1,000	1,059	924	880	1,099	934	12,120
상담 총계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104,112
자동상담비율		46%	95%	89%	90%	88%	76%	85%	90%	91%	91%	45%	91%	88%

표 4-10 2011년 저작물·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어문저작물	17,494	16.8
	음악저작물	9,440	9.1
	연극저작물	4,568	4.4
	미술저작물	7,912	7.6
	건축저작물	3,155	3
	사진저작물	9,243	8.9
	도형저작물	3,183	3.1
	영상저작물	9,266	8.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832	3.7
	데이터베이스	1,401	1.3
	실 연	6,225	6
	음 반	5,279	5.1
	방 송	4,710	4.5
	외국인저작물	2,244	2.2
	기타저작물	5,338	5.1
	이용유형	법 정 허 락	1,546
양 도		2,174	2.1
설 정 출 판		2,932	2.8
보 호 기 간		1,968	1.9
위 탁 관 리		1,687	1.6
기타 이용유형		515	0.5
전체 이용건수		104,112	100

(3) 상담사례

작년 말, 중학생인 아들이 판타지소설을 인터넷상 카페에 업로드를 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다급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워 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을 말하며, 아직 어린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 장래에 혹여 해가 될까 크게 걱정하였다.

법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관련하여 생긴 문제라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우선 이러한 분쟁이 해당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며 동일한 사안의 분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과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하는 침해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침해분쟁이 처음이라면 각하처분이 될 수 있고, 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는 정책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 안내를 하였다.

그래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여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걱정되느냐고 물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재판장에 자녀가 죄인취급을 받으며 법정에서 서있는 모습이 상상되어 매우 괴롭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은 주로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며,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 구속이 되거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송치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하여 설명하였다.

상담 며칠 뒤, 그 학생의 학부모가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내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더니 담당형사 역시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각하처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각하처분으로 일단락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4) 평가 및 전망

2011년의 대표적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저작권자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의 침해 문제에 있어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규모로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침해의 처벌 수위,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주된 분쟁사안은 폰트파일 무단사용 및 온라인상 신문기사의 스크랩으로 인한 분쟁으로 당분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한·미 FTA, 한·EU FTA 체결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FTA 체결 후 개정될 저작권법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친고죄 규정에 관한 문의가 많았으며, 공정이용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의 요구가 급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사적복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길 요청 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저작권 법률상담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안내를 떠나 입법 및 개정 등에 관한 정책적인 의견 반영 등의 적극적인 요구가 뒤따랐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임에 반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속되는 저작권 정보 및 상담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3.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교류 · 협력체계 강화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1. 개요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007년 5월 6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을 위한 공식 협상의 출범을 선언한 이후 3년 5개월 뒤인 2010년 10월 6일 한·EU FTA가 체결되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하 ‘한·미 FTA’라 한다)이 2006년 2월 3일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07년 4월 2일 협정이 타결⁴²되었다.

위의 두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는 두 번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1년 6월 30일에 법률 제10807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하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이라 한다)과 2011년 12월 2일에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하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이라 한다)이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11년 2월 17일에 유럽의회를, 그리고 2011년 5월 4일에 우리 국회를 각각 통과하여

⁴² 2010년 12월 3일에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저작권 분야는 추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다.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은 정부가 한·미 FTA('08. 10. 10)와 한·EU FTA('10. 10. 28)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혜숙 의원('10. 9. 24)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개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

한·EU FTA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10.28)은 법안 형식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의안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8.10.10)에 반영되지 않은 한·EU FTA의 독자적 사항만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EU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8.10.10)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11.6.22)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혜숙 의원안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단속하여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거나 관계없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⁴³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⁴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정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가 해당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43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이다.

44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입장료를 받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예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내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방송의 상영 대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업소(음식점, 술집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⁴⁵, 저장, 정보검색도구로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표 5-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분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단순도관(mere conduit)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캐싱(caching)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검색도구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

⁴⁵ 캐싱(Caching)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캐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행하게 되는 캐싱과는 구별된다.

표 5-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비교

책임 면제 요건	온라인서비스 유형				
	단순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 도구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 않을 것	○	○	○	○	○
저작물과 수신자를 지정 않을 것	○	○	○		
저작물 등을 수정 않을 것		○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에 접근허용		○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		○			
저작물 이용 정보를 업계에서 인정한 기술 사용 방해 않을 것		○			
본래의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침해행위 통제 권한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 없을 것				○	○
침해행위 인지도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	○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면책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절차를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표 5-3 복제·전송 중단의 통보 여부에 대한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권리주장자	복제·전송자
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구분없이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은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이었음 		×	×
캐싱			○	×
저장			○	○
정보검색도구			○	○

(6)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⁴⁶를 추가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까지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조항⁴⁷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7) 몰수 대상 확대

몰수의 대상에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에 대하여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 5일 변재일 의원, 2009

46 판례상으로는 접근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보호하고 있었다(대법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 사건(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47 ①암호 연구, ②미성년 보호, ③온라인상의 개인식별정보(일종의 쿠키 정보) 수집 방지, ④국가의 법집행 등, ⑤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구입여부 결정, ⑥리버스엔지니어링, ⑦보안 검사, ⑧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년 4월 2일 최문순 의원, 그리고 2011년 3월 25일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원제 의원이 불가피하게 대안의 성격을 가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1월 2일에 발의하였다.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1)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저작물 복제물의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⁴⁸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⁴⁹으로 규정하였다.

48 미국·EU·일본 등 86개국 이상이 일시적 복제를 인정(2004년 기준)하고 있다.

49 일시적 복제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시적 복제를 명시하면서 예외를 정하는 방식(EU형)과 일시적 복제의 예외만을 정하는 방식(미국·일본형)으로 나뉜다.

정당한 이용허락(법정허락 포함)이 없거나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행위,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저작물 이용행위 등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더라도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2) 공정이용 규정 도입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 배타적발행권 도입

기존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 설정행위를 다양한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⁵⁰되도록 규정하였다.

방송을 제외한 이유는 미국이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WIPO에서 조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 예외를 명시하여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하였다.

(6)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침해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에 권리주장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50 기(既)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성명·주소 등 소재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

(7)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권리관리정보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대상에 전자적인 형태의 것뿐만 아니라 비전자적인 형태의 것까지 포함하고, 허위의 권리관리정보 자체의 배포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였다.

(8)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으로 복호화(암호화한 것을 디코딩하는 행위)하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시청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9)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영화 DVD, 컴퓨터프로그램 CD 등이 정품인지 여부를 그에 첨부되거나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인증서 등으로 구별하므로, 이러한 라벨이나 인증서 등의 위조나 불법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음반, DVD 등 저작물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10) 영화 도촬행위 금지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과 DVD 출시 및 인터넷 전송 등 창구별로 출시에 시차를 두게 되는데, 휴대용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영화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관객에 의하여 무단으로 녹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경우에는 영상제작자 등 관련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1)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행위는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 또한 어렵다. 이에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정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1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SW 소스코드 등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어 소송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비친고죄 대상 확대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ex officio)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 and 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확대하였다.

(1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4717호)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면서,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접권은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 르네상스기의 소중한 음반 등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권접권자간의 다른 보호기간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사한 음반 등에 대한 공평한 보호를 위해서 보호기간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접권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1년에는 한·EU FTA 이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 대안('11.6.22)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허원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11.11.2) 외에도 8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10545)

가요계를 비롯하여 소설·드라마·광고·논문 등의 잇단 표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알선·조정 외에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 소송비용 절감 및 관계 당사자간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질적 제고는 물론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문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윤선 의원안(의안번호 12529)

방과 후 학습을 수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제 등을 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환경을 개선하려 하였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들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 또는 감정을 위한 복제 행위를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추가하고, 저작권등록부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에 대한 통지 및 직권 경정, 등록 사항 변경과 관련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종혁 의원안(의안번호 12576)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기·녹화기 또는 복사기 등과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복제보상금을 저작권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권자 등의 이익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정부안(의안번호 13390)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김을동 의원안(의안번호 13414)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으나 음악저작물의 실연자에 비하여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권적 권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상황이다. 이에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아무런 대가없이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포괄 양도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영상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저작물 이용·유통 활성화라는 특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김성동 의원안(의안번호 13838)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서책형 교과용 도서 및 시험문제 이용 관련,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프라인 환경에 국한되고 있어 현재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 및 교육현실 등에 적극 대응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전병헌 의원안(의안번호 14205)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여 잠재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정보공개 청구권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서상기 의원안(의안번호 14471)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29호로 공포되어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2009년 11월 4일 이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9월 1일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8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의 내용이 통합된 것이다.⁵¹

지식재산기본법은 총 5개의 장(章), 4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였다.

⁵¹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 비교는 “2010 저작권 백서”(278쪽~280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부분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및 사무기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의 점검과 평가,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부분에서는 ① 정부가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③ 지식재산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 추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와 벌칙 정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 협력체계 강화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논의는 주로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는 2008년 3월과 11월(제16~17차), 2009년 5월과 11월(제18~19차), 2010년 6월과 11월(제20~21차), 2011년 7월과 12월(제22~23차)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덟 차례 개최되었다. SCCR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2001년 4월에 제1차 회의가 시작되어, 2011년 7월까지 제19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16차 IGC에서는 2009년 9월 WIPO 총회의 결정에 따라 문안협상(Text based negotiation)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라 한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최종 타협을 이루어 2010년 7월 제1차 IWG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을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IWG는 효율적인 진행과 합의도출을 위해 IGC에서 만들어진 초안의 내용 중에 개념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각 주제별(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3개 주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제19차 회의에서는 향후일정에 대하여 2013년까지 IGC mandate를 연장하여 총 4번의 정부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2012년 총회 이전에 3번의 주제별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 번의 정부간위원회에 한 가지 주제만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논의는 2012년 9월 총회 전인 2012년 7월 제22차 IG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23차 IGC에서 외교회의 소집 여부 및 추가 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라 한다) 회의(2010년 12월, 2011년 12월)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를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이외에도, 연 2회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이라 한다)의 지적재산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이라 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타 회원국의 정책 현황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정책 정보 교류 활동을 벌였다.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FTA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 설립 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가 체결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8건의 FTA 중 ‘한-ASEAN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미 FTA, 한·EU FTA는 TRIPS 플러스적인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EU FTA는 2010년 10월에 정식 서명되었는데,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70년),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일시적 복제의 보호, 공정이용 규정 도입, 배타적 발행권 확대,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영화

도출행위의 금지,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체결된 FTA는 2010년 8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11월에 가서명된 ‘한-페루 FTA’로, 저작권·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터키, 콜롬비아, 중국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연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표 5-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⁵²

(2012년 8월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8개국)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리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우리의 제3위 교역 대상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BRICs 국가, 거대 시장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2월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2년 3월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EU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타결, 2009년 10월 가서명, 2010년 10월 정식 서명, 2011년 7월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1년 3월 서명, 2011년 8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52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2008년 1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2009년 11월 회의간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지역 최대경제권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협상 진행 (7건)	호주	2009년 5월 협상 개시 2010년 5월 제5차 협상 개최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2009년 6월 협상 개시 2010년 5월 제4차 협상 개최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콜롬비아	2009년 12월 협상 개시 2010년 10월 제4차 협상 개최 2012년 6월 협상 타결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2010년 3월 협상 출범 합의 2010년 7월 제2차 협상 개최 2011년 11월 소규모 1차 협상 개최 2012년 3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년 8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라 한다), 1996년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04년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에 차례로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다. 이와 함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인접권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과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라 한다)에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이하 ‘위성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했다.

표 5-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조약	주요내용	체결년도	가입일
WIPO 설립 협약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PO 설립을 규정 • WIPO 가입 시 서명 	1967년	1979년 3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에 관한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조율(©마크 적용) • 대부분 국가가 무방식주의를 지향, 영향력 없음 	1952년	1987년 10월 1일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의 무단 복제·배포 금지 규정 • 단일 내용을 규정, 영향력 없음 	1971년	1987년 10월 10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의 실체규정 원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종합적 규정 •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가능 • WTO 일반원칙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및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원칙 적용 	1995년	1995년 1월 1일

조약	주요내용	체결년도	가입일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50년 	1886년	1996년 8월 21일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 W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4년 6월 24일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인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인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20년 	1961년	2008년 12월 18일
WIPO 실연·음반조약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W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대의 실연, 음반 보호 • 로마협약 내용 중 실연 및 음반 관련 규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8년 12월 18일
위성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을 통한 방송 전 신호의 보호 	1974년	2011년 12월 19일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CTA) 체결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협정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ACTA는 TRIPS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EU 개별국가 포함 시 37개국)이 참가하였다.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은 민사 집행, 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등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선도하면서 지적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1. 개요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의 법이라고도 한다. 저작물의 창작·유통 및 소비에 이용되는 기술적 기반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해관계의 변동을 가져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작권 제도가 안출되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저작권법에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저작권 질서에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속적이고 면밀한 제도 개선 연구를 요한다.

또한, 저작물은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국제조약이 발달해 있다. 최근 창조경제 환경 하에서 콘텐츠 산업 내지 저작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국제통상 협상에 있어 저작권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다자간 통상협상은 물론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긴밀한 연구를 요한다.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011년에는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저작권 제한에 관한 한일 판례

비교연구〉 등 5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는 한EU FTA에서 발효 후 2년내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관련,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추급권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국내의 추급권 관련 인식 현황을 조사한 뒤 도입의 적절성 및 도입 환경 조성시 유의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미술저작물의 유통영역 종사자들은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2/3가 반대하고 향후에도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견도 2/3 이상으로 나타나, 90% 이상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작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국내 미술시장의 보호를 위해 도입시기를 가급적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미술시장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 제한에 관한 한일 판례 비교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저작권 제한규정에 근거한 이용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의한 이용 및 한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형태를 보이면서 관련 판례도 풍부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와 비교·분석하여 그 이용과 한계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비영리 공연·방송’ 등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 법률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양국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정보화 사회 대응 독일 저작권법 최근 개정 동향 및 쟁점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법 개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제에의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3차 개정안(Dritte Korb)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배경과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에는 ‘경미한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조항의 신설문제’,

‘온라인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 ‘학술적 콘텐츠의 배포방법으로서 open access와 open source의 적절성’, ‘저작권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권리처리 및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유럽과 독일의 저작권 정책동향을 학술적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접근의 촉진으로 요약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예외·제한에 대한 의무화 경향’, ‘3단계 테스트의 균형 잡힌 해석’, ‘저작권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위한 해법 모색’ 등으로 특징지었다.

〈인터넷 기반 저작물 송신서비스와 저작권법 적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간접침해자 책임법리의 내용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직접 침해 책임 당사자가 없는 경우의 간접침해자 책임 규율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제도 조사연구〉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 교육,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제도를 조사하고 해당 저작물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공유저작물간 정보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조 확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 분석하고 확장 유연성을 갖는 분류체계 및 공유저작물 DB 구조를 제시하였다.

표 5-6 2011년 주요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연번	서명	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
1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연구원)
2	저작권 제한에 관한 한일 판례 비교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호흥 연구원)
3	정보화 사회 대응 독일 저작권법 최근 개정 동향 및 쟁점 연구	(서달주 박사)
4	인터넷 기반 저작물 송신서비스와 저작권법 적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5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제도 조사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원 상명대 교수)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1) 저작권산업 관련 연구

1) 알기쉬운 SW라이선스 정보제공 기반구축

국내·외 주요 저작권사별 SW 라이선스 동향 및 정책 등을 조사하여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도별 SW 사용에 관한 정보와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맞는 SW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알소리; 알기 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 국가 및 공공분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실태 및 인식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SW에 대한 사용행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기업이 가지는 니즈와 수요에 대해 파악하여 민간 기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픈소스 SW 확산의 주체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않아 본 조사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오픈소스SW 확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오픈소스SW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코자 하였다.

3)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이상구 교수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저작권 분야의 통계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계층을 분석하여 계층에 따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와 자료를 파악하여 수요도가 높은 항목을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와 자료를 파악하여 향후 수요자 맞춤형 통계정보를 구축 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조사(In-Depth-Interview)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저작권 통계정보의 접근 및 활용의 문제점과 저작권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개선사항도 분석하였다.

4)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강대오, 소병희 국민대학교 교수)

창작, 유통, 소비, 보호, 산업,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내의 통계정보들을 조사·분석하고, 생산 및 가공 가능한 다양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제안한 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통계정보들을 이용하여 저작권 정책 지표 및 산업 지표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안함으로써 저작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2) 이용활성화 연구

1)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법정허락제도 등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경우 절차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허락 간소화 등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권리자 확인이 되지 않아 누적되고 있는 미분배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으며, 공공저작물과 공유저작물이 이용활성화되고 저작물 DB구축의 기반으로서 등록제도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전략 수립

현행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거래소의 추진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기존 거래소의 기능을 확대, 고도화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해외 유사사례를 확인하고 현행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시스템, 조직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3) 저작권인증 업무규정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작권 인증제도의 본래의 도입취지를 재조명하고, 제도개선에 기초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저작권 인증제도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규정을 검토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인증기관이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안하였다.

4) SW저작물 표준분류체계 정립 및 발전방향 연구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로 이원화된 저작권 등록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등록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등록저작물의 저작물 분류체계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저작물 표준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저작물을 포섭하기 위한 유연한 분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등록저작물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연계기관 및 연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등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을 수립하였다.

5)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제도 조사연구

본 연구는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유저작물 수집·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 조사 및 연계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교육,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의 수집·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해당 저작물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둘째 공유저작물간 정보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조 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 분석하고, 확장 유연성을 갖는 분류체계 및 공유저작물 DB 구조를 확보하였다.

6) 해외공유저작물 수집 및 관련 프로젝트 연계방안 조사연구

본 연구는 공유저작물의 효과적인 수집·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공유저작물 수집 및 관련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조사·연구 하였다. 해외 각국의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관리현황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공유 저작물 수집·구축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프로젝트와 콘텐츠 연계가 가능하도록 각 프로젝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필수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형식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해외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내 공유저작물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도 제시하였다.

부록





1. 2011 저작권 통계
2. 2011 기관별 주요 활동
3. 2011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4. 대회수상작
5. 주요 기관 주소록

2011 저작권 통계

1. 심의

(2011. 12. 31 기준)

구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심의		17	11	25	8	15	14	6	22	5	123
교과용도서 보상금		1	1	1	1	-	-	-	-	-	4
도서관보상금		1	1	1	1	-	-	-	-	-	4
계		19	13	27	10	15	14	6	22	5	131

2. 법정허락

(2011. 12. 31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건수	3	2	1	3	2	1	1	6	7	7	4	37

3. 조정

(1)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89 ~ '11)

(2011. 12. 31 기준)

연도	분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계
1989		5	-	1	1	-	1	-	-	-	-	-	-	-	8
1990		6	-	-	-	-	7	-	-	-	-	2	-	-	15
1991		13	1	1	4	-	1	1	-	-	-	4	-	-	25

년도\분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계
1992	19	1	-	2	-	4	1	-	-	-	2	-	-	29
1993	18	1	-	6	-	2	-	-	-	-	-	-	-	27
1994	30	2	-	6	-	6	1	-	-	-	1	-	-	46
1995	12	13	-	7	-	1	-	-	1	-	1	-	4	39
1996	10	6	-	1	-	1	-	-	-	-	-	-	-	18
1997	6	5	-	11	-	2	-	-	3	-	1	-	4	32
1998	13	9	-	20	-	4	1	1	3	-	-	-	5	56
1999	8	-	-	14	-	3	1	1	2	-	3	-	13	45
2000	7	1	1	9	1	1	3	1	-	-	3	-	13	40
2001	19	3	1	26	2	10	4	1	1	-	-	-	16	83
2002	32	7	1	23	1	20	16	1	8	-	-	-	18	127
2003	29	29	-	4	1	41	1	-	6	-	-	-	20	131
2004	14	3	-	33	1	13	1	-	6	-	2	-	24	97
2005	31	1	-	12	1	13	-	-	6	1	1	1	27	94
2006	24	30	-	5	-	16	1	-	6	1	6	2	33	124
2007	13	4	-	8	-	8	-	2	4	-	5	-	34	78
2008	9	15	-	5	-	10	3	-	4	-	1	2	13	62
2009	10	3	1	7	-	11	-	-	2	1	4	-	16	55
2010	18	6	-	12	-	7	2	1	1	-	7	-	8	62
2011	26	1	-	11	-	7	5	2	-	-	11	-	19	82
계	372	141	6	227	7	189	41	10	53	3	54	5	267	1,375

(2) 알선(간이조정) 연도별 현황

(2011. 12. 31 기준)

구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신 청	2	5	11	13	13	17	7	3	-	1	72
처 리	성 립	1	4	5	8	4	10	-	-	1	33
	불성립	1	-	-	-	-	-	-	-	-	1
	취 하	-	1	4	3	6	5	7	3	-	29
	기일전 종결	-	-	2	1	1	1	-	-	-	5
	중 단	-	-	-	1	2	1	-	-	-	4
	진행중										
	회의 개최	-	-	-	-	-	11	0	-	-	-

※ 처리건수 : 당해년도 신청건수 기준

(3)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89 ~ '11)

(2011. 12. 31 기준)

연도	접 수			처 리 현 황					
	전년 이월	신규	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계
1989	-	-	-	2	4	2	-	-	8
1990	-	-	-	8	6	1	-	-	15
1991	-	-	-	14	7	4	-	-	25
1992	-	-	-	10	12	7	-	-	29
1993	-	-	-	14	6	7	-	-	27
1994	-	-	-	12	32	2	-	-	46
1995	-	-	-	16	23	-	-	-	39
1996	-	-	-	9	8	1	-	-	18
1997	-	-	-	14	15	3	-	-	32
1998	-	-	-	25	22	9	-	-	56

연도	접 수			처 리 현 황					
	전년 이월	신규	계	성립	불성립	취하	기타	진행	계
1999	-	-	-	12	20	13	-	-	45
2000	-	-	-	13	18	9	-	-	40
2001	-	-	-	25	36	17	5	-	83
2002	-	-	-	53	51	18	5	-	127
2003	-	-	-	33	53	40	5	-	131
2004	-	-	-	37	33	19	8	-	97
2005	-	-	-	53	19	17	5	-	94
2006	-	-	-	38	25	54	7	-	124
2007	-	-	-	24	19	20	15	-	78
2008	-	-	-	29	21	9	3	-	62
2009	-	-	-	29	10	13	3	-	55
2010	-	62	62	23	17	7	-	15	62
2011	15	82	97	28	29	28	-	12	97

4. 감정

(1) 연도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0	2011	계
신 청	54	37	91
감 정	34(16)	38(21)	72
자체공동	31(16)	28(19)	59

※ (): 전년 이월 건수

(2) 최근 9년간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완성도(하자)	유사도	개발비산정	기타	일반저작물	계
2003	5	23	-	-	-	28
2004	8	14	-	-	-	22
2005	4	21	-	1	-	26
2006	8	23	1	7	-	39
2007	16	29	1	2	-	48
2008	11	27	1	7	1	47
2009	13	23	1	7	2	46
2010	12	23	1	3	15	54
2011	2	19	1	5	10	37

(3) 2011년 월별 감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접 수	완성도 (하자)	6	-	-	1	-	-	-	1	-	-	-	-	8	
	유사도	12	3	2	1	2	-	1	1	2	4	-	1	2	31
	개발비산정	-	-	-	-	-	-	-	-	-	1	-	-	-	1
	기타	-	1	-	1	-	1	-	-	-	-	1	1	-	5
	일반저작물	13	-	-	-	1	2	2	-	2	2	-	1	-	23
	합계	31	4	2	3	3	3	3	2	4	7	1	3	2	68

5. 등록

(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2011. 12. 31 기준)

연도	'87~'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저작물	어문	860	127	64	84	64	218	495	625	828	994	1,526	1,796	1,892	1,878	2,309	3,776	3,612	21,148
	음악	51	35	1	21	112	290	101	214	248	238	313	362	659	744	987	1,387	1,261	7,024
	연극						1	6	2	11	5	4	14	3	16	27	25	20	134
	미술	756	66	13	50	159	712	1,774	2,842	2,919	2,439	4,816	3,779	3,599	4,278	5,075	4,632	5,179	43,088
	건축			4	1	78	453	262	184	161	285	145	132	210	99	117	84	246	2,461
	사진	6			1	4	18	43	93	339	736	1,048	3,877	6,350	2,993	378	447	281	16,614
	영상	455	29	186	41	20	109	473	287	432	800	732	723	660	247	238	676	374	6,482
	도형	25	1	1	6	5	24	49	91	88	19	265	440	564	506	400	742	567	3,793
	편집	42	3	2	2	16	106	275	427	658	708	696	798	1,105	1,414	1,082	1,330	1,562	10,226
	차적						7	99	193	772	847	795	180	253	199	279	451	907	4,982
프로그램	29,447	9,736	7,700	7,582	7,836	13,855	11,019	10,062	9,946	10,304	10,532	10,699	10,624	11,192	11,856	12,483	13,858	198,731	
기타								1										1	
저작인접물	실연						1		1		2	61	24	4	93	24	3	213	
	음반	162					14	37	21	49	82	184	68	36	73	1,366	705	230	3,027
데이터베이스									2	14	27	11	38	35	18	86	54	285	
총 계	31,804	9,997	7,971	7,788	8,294	15,807	14,634	15,042	16,454	17,471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26,848	28,154	318,209	

(2) 2011년 등록 통계

(2011. 12. 31. 기준)

1) 월별 등록 건수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1,947	1,471	1,819	2,155	1,859	2,382	2,006	2,154	1,991	2,600	2,451	5,319	28,154

2)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등록의 종류	건 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작권 등록	1,504	1,330	1,617	1,932	1,523	2,145	1,714	1,953	1,642	2,252	2,331	4,751	24,694
저작권 등록사항변경 등록	84	48	83	135	190	93	83	51	162	39	55	118	1,141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221	26	67	80	34	119	117	76	116	278	42	417	1,593
저작권 질권설정등록	2	8	2	5	4	2	88	20	5	12	13	20	181
저작권 질권소멸등록					4	1	1		2			4	12
저작권 처분제한등록	33	4	28	2	87	6	1	14	49	2	9	8	243
저작인접권 등록	101	55	4		14		1	38		16			229
저작인접권 등록사항 변경등록			3						1				4
저작인접권 양도등록													
출판권설정등록	2		1										3
출판권 등록사항변경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14	1	3	16	1	2	14	1	1	1	5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등록													
데이터베이스 등록사항변경등록													
배타적 발행권 등록													
총 건 수	1,947	1,471	1,819	2,155	1,859	2,382	2,006	2,154	1,991	2,600	2,451	5,319	28,154

6. 상담

(1) 연도별 상담 건수

(2011. 12. 31 기준)

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2010	3,874	4,065	6,136	3,484	2,956	3,669	2,189	3,757	7,662	4,192	2,444	18,920	63,348 (51,710)
2011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104,112 (91,992)
계	22,765	37,642	48,344	37,344	31,320	30,356	31,508	29,354	33,792	33,769	21,998	47,407	405,599 (317,950)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2) 2011년 상담 통계

1) 월별, 상담 유형별 상담 건수

(2011. 12. 31 기준)

상담 유형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온라인	자동상담	794	14,588	8,995	10,856	8,088	3,953	5,586	9,791	9,179	9,159	1,335	9,668
오프라인	전화상담	854	683	1,057	1,082	929	1,111	898	963	852	843	1,002	842	11,116	
	내방상담	19	14	13	19	15	30	32	30	23	22	31	32	280	
	서신상담	1	2	3	3	3	1	6	2	1	2	3	2	29	
	메일상담	57	26	71	84	66	45	64	64	48	49	63	58	695	
	소 계	931	725	1,144	1,188	1,013	1,187	1,000	1,059	1,059	924	880	1,099	934	12,120
	상담 총 계	1,725	15,313	10,139	12,044	9,101	5,140	6,586	10,850	10,103	10,075	2,434	10,602	104,112	
자동상담비율	46%	95%	89%	90%	88%	76%	85%	90%	91%	91%	45%	91%	88%		

2) 저작물 ·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011. 12. 31 기준)

저작물 유형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어문저작물	17,494
음악저작물		9,440	9.1
연극저작물		4,568	4.4
미술저작물		7,912	7.6
건축저작물		3,155	3
사진저작물		9,243	8.9
도형저작물		3,183	3.1
영상저작물		9,266	8.9
프로그램저작물		3,83	3.7
데이터베이스		1,401	1.3
실 연		6,225	6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음 반	5,279	5.1
	방 송	4,710	4.5
	외국인저작물	2,244	2.2
	기타저작물	5,338	5.1
이용 유형	법 정 허 락	1,546	1.5
	양 도	2,174	2.1
	설 정 출 판	2,932	2.8
	보 호 기 간	1,968	1.9
	위 탁 관 리	1,687	1.6
	기타 이용유형	515	0.5
	전체 이용건수	104,112	100

7. 해외 저작권 보호

(1) 해외 법률 컨설팅

(2011. 12. 31. 기준)

분 야	구 분	건 수	비 고		
2008년	상담 (188)	면 담	12		
		전 화	10		
		온 라 인	166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컨설팅 (65)	북경	법률자문	27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자문	38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253		

분 야	구 분	구 분	건 수	비 고	
2009년	본부 (169)	면 담	-		
		전 화	11		
		온 라 인	158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상담 (252)	북경 (32)	면 담	10	
			전 화	22	
			온 라 인	-	※ 이메일
	방콕 (51)	면 담	15		
		전 화	15		
		온 라 인	21	※ 이메일	
	컨설팅 (50)	북경 (50)	법률자문	16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자문	34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302	
2010년	본부 (169)	면 담	-		
		전 화	25		
		온 라 인	144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상담 (309)	북경 (71)	면 담	28	
			전 화	24	
			온 라 인	19	※ 이메일
	방콕 (69)	면 담	46		
		전 화	8		
		온 라 인	15	※ 이메일	
	컨설팅 (59)	북경 (59)	법률자문	20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 지원	39	※ 중화판권대리중심
	합 계			368	

분 야	구 분	건 수	비 고		
2011년	본부 (264)	면 담	2		
		전 화	99		
		온 라 인	163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북경 (91)	면 담	15		
		전 화	39		
		온 라 인	37	※ 이메일	
	상담 (431)	방콕 (41)	면 담	19	
			전 화	18	
			온 라 인	4	※ 이메일
	상해 (35)	면 담	20		
		전 화	5		
		온 라 인	10	※ 이메일	
	컨설팅 (423)	북경 (417)	법률자문	58	※ 중화판권대리증심, 울촌 법률사무소
			구제조치지원	359	※ 행정처벌(18), 경고장 (CPC 323, 법률서비스 18) 발송
		방콕 (6)	법률자문	-	
			구제조치 지원	6	※ 경고장 발송
	합 계		854		
	총 계		1,777		

(2) 해외 권리정보 확인(인증) : 중국

(2011. 12. 31. 기준)

분야 / 구분		요청건수	처리건수	취하/반려/보류 (진행)
2008년	영 상	1,505	1,484	21
	음 악	8	8	
	어문 기타	1	1	
	합 계	1,514	1,493	21
2009년	영 상	540	435	105
	음 악	686	686	-
	어문 기타	-	-	-
	합 계	1,226	1,121	105
2010년	영 상	630	354	276
	음 악	2,093	1,499	594
	어문 기타	-	-	-
	합 계	2,723	1,853	870
2011년	영 상	2,425	2,024	401
	음 악	1,728	547	1181
	어문 기타	-	-	-
	합 계	4,153	2,571	1,582
총 계		9,616	7,038	2,578

(3) 해외 저작권 관련 보고서 및 자료 발간

(2011. 12. 31. 기준)

구 분	건수	보고서명(발행월)	비고
2008년	중 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온라인 유통현황 조사(2월) • 중국 최신 저작권 판례명석(2월) • 중국 내 한국저작물 중요 유통 사이트 침해조사(12월) • 중국 최신 저작권 판례해설(12월)
	동남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불법저작물 유통실태조사(2월) • 인니-말련 한국저작물 불법유통 실태와 현지 정부의 정책적 대응시스템 연구(12월)
	합 계	6	
2009년	중 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보고서(영화, 음악)(12월) • 중국 음악 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12월)
	동남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내 한국저작물의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조사(12월)
	합 계	3	
2010년	중 국	0	
	동남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12월) • 태국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12월)
	합 계	2	
2011년	중 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지역 해외저작물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보고서(12월) • 저작권 중국 수출 표준계약서 개발 및 해설서 연구 보고서(12월)
	동남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저작권 보호 가이드북(12월)
	중국·동남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저작권 침해조사 기초연구 및 조사방법론 수립 연구보고서(12월)
	합 계	4	
총 계	15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현지 이벤트 개최

(2011. 12. 31. 기준)

구 분	건 수	행사명(개최일)	비 고	
2008년	국 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5월, 서울) 서울저작권포럼 개최(9월, 서울) 	
	해 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교역촉진 세미나 (2월, 북경) 한·태 저작권 교류활성화 워크숍(4월, 방콕) 중국 내 한국저작권 온라인 침해실태 및 구제조치 설명회(6월, 북경) 동남아 4개국 저작권 컨퍼런스(10월, 방콕)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참가(10월, 북경) 한·인니 저작권 세미나 개최(11월, 자카르타) 한중 저작권 교류 및 중국 내 저작권 보호 설명회 (12월, 북경) 	
	합 계	9		
2009년	국 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저작권포럼(6월, 서울) 한일 저작권 포럼(10월, 서울) WIPO STUDY VISIT PROGRAM(12월, 서울) 	
	해 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콘텐츠 쇼케이스 참가(1월, 방콕) 동남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월, 자카르타) 한·인니 저작권 심층 워크숍(5월, 자카르타) 중국 내 한국저작권 침해조사 결과보고 및 저작권 보호 설명회(5월, 북경)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6월, 북경) 태국 IP fair 행사 참가(6월, 방콕)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체결(9월, 북경) 중국 제2차 국제판권박람회 참가 및 저작권보호 설명회(10월, 북경) 한·태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태국) 한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보고회 개최(12월, 중국) 중국 국제 영상·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12월, 중국) 	
	합 계	14		
2010년	국 내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국가대표단 초청행사 개최(3월, 서울)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 등 방한단 위원회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5월, 서울)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6월, 서울) 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한-일 간 간담회 개최 (7월, 서울) 말레이시아 지재권청장 등 방한단 위원회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7월, 서울) 인터폴 IP범죄 교육 세미나 공동개최(9월, 서울) 동남아 IPR보호협의체 간담회 개최(9월, 서울)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서울) 서울저작권포럼 개최(10월, 서울) WIPO STUDY VISIT(11월, 서울) 파라과이 고위공무원단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 (12월, 서울) 	

구 분	건 수	행사명(개최일)	비 고
2010년	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통신문 라운드 테이블 개최(5월, 말레이시아) •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 판권무역발전 포럼 참가 (5월, 중국) •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설명회 개최(6월, 중국) • 한-말 저작권 교류 워크숍(8월, 말레이시아) • 국가판권국과 실무회담 개최(8월, 중국) • 한중 온라인 게임·동영상 저작권 보호 좌담회 개최 (8월, 중국) • 디지털시대 신매체 저작권 보호 협력 세미나 참가 (8월, 중국) • 한태 저작권 보호협력 포럼 개최(10월, 태국) • 코리아 콘텐츠의 날 캠페인 개최(10월, 태국) • 한중 저작권 박람회 개최(11월, 중국) • 한-베트남 저작권 워크숍 개최(11월, 베트남) • Korea Lantern Festival in Bangkok 저작권 인식제 고 캠페인(12월, 태국) • 한중 디지털 저작권 교류회 개최(12월, 중국) 	
	합 계	24	
2011년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IPO 직원 위원회 방문연수(2월, 서울) • 일본 NHK 방한단 간담회 개최(3월, 서울) • 문화 동반자 사업 추진(5월, 서울) • 서울저작권포럼 (10월, 서울) • WIPO Study Visit (11월, 서울) • 인도네시아 방한단 간담회 개최(11월, 서울) 	
	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통신문 라운드 테이블 개최(3월, 인도네시아) • 동남아 IPR보호협의체 간담회 개최(3월, 태국) • 한-필리핀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4월, 필리핀) • 2011 제7차 한중저작권포럼(6월, 중국) •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7월, 인도네시아) • 동남아 IPR보호협의체 제2차 간담회 개최(7월, 태국) • 북경지역 권리자 대상 저작권보호 설명회(8월, 중국 북경) •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8월, 중국 상해) •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8월, 중국) • 상해도서전 참가 (8월, 중국) • 베트남 저작권 침해대응 실무 워크숍 (11월, 하노이) •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12월, 일본) 	
	합 계	17	
총 계		64	

8.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1) 자유이용 저작물 DB구축 현황

1) 연도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어문저작물	3,843	235	5,992	332	311	10,713	
미술저작물	752	1,111	3,175	-	-	5,038	
음악저작물	216	556	21	-	-	793	
사진저작물	280	182	2,388	-	-	2,850	
SW저작물 (오픈소스)	소스코드	-	-	8,600,000	2,700,000	16,700,000	28,000,000
	프로젝트	-	20,000	1,120,000	560,000	680,000	2,380,000
계	5,091	22,084	9,731,576	3,260,332	17,380,311	30,399,394	

(2) 자유이용 저작물 정보서비스

1) 연도별 현황

구분	조회수	원문보기	다운로드	계
2008	119,593	14,175	19,174	152,942
2009	138,981	45,747	51,658	236,386
2010	661,302	294,379	127,976	1,083,657
2011	945,420	82,449	552,396	1,580,265
계	1,865,296	436,750	751,204	3,053,250

9. SW지적재산권 종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1) SW 임차서비스

1) 연도별 현황

(단위: 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임차계약	신규	4	4	2	11	18	19	49	62	121	155	151	149	745
	갱신	2	1	2	2	6	19	17	48	65	97	126	182	567
	사용권자 등록	-	-	-	-	44	44	13	21	59	47	53	62	343
	소계	6	5	4	13	68	82	79	131	245	299	330	393	1,655
기타	최신본임치	-	-	-	-	-	5	8	18	14	17	13	20	95
	기술검증	-	-	-	-	-	1	1	1	-	-	-	-	3
	소계	-	-	-	-	-	6	9	19	14	17	13	20	98
합계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343	413	1,753	

(2) SW지적재산권 종합정보 서비스

1)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지재권정보 DB구축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532	760	1056	16,675
방문자수	-	-	-	-	-	-	-	120,356	302,618	310,316	733,290
계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120,888	303,378	311,372	749,965

※ 지재권정보DB구축은 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데이터이관('09.7월)

※ 방문자수는 '09.7월부터 집계

10.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1) SW 불법복제 방지활동

1) 연도별 단속·점검 현황

(단위 : 개, 종,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점검 기관수	1,324	2,315	1,050	1,760	2,514	2,537	2,172	2,090	2,005	809	1,161	1,028	20,765
SW 체크리스트	23	50	995	660	1,426	1,620	1,747	572	782	822	1,200	1,273	
단속기관 SW설치 수량			80,975	180,590	140,169	146,909	156,981	143,916	148,331	59,087	108,669	81,943	1,247,570
불법복제율(%)	0.42	9.5	8.23	14.68	25.18	20.93	17.11	26.59	28.84	35.77	24.56	30.12	

(2) 중소기업 등 SW관리체계 기반 구축

1) 연도별 점검용SW 배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점검용SW 무료배포	11,021	37,295	29,371	45,491	34,801	47,940	44,581	53,235	303,735

2) 연도별 점검용SW 관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Key List	782	822	1,200	1,273	4,077
상담	141	60	1,827	405	2,433

※ 2007년 초에 Key-list체계 변경으로 2007년부터 통계관리.

3) 연도별 정품 SW 관리 컨설팅 · 보급교육

(단위: 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컨설팅	16	82	139	164	82	51	68	81	683
보급교육	-	-	-	-	-	50	-	-	50

※ 보급교육의 경우 2010년부터 찾아가는 저작권교육과 통합관리

1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2011년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실적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명)	비고
제1차	2. 22(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69	성인
제2차	3. 10(목)	대구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62	성인
제3차	3. 16(수)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68	성인
제4차	3. 24(목)	부산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67	성인
제5차	3. 29(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65	성인
제6차	4. 7(목)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1교육장	57	성인
제7차	4. 12(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73	성인
제8차	4. 19(화)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59	성인
제9차	4. 21(목)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58	성인
제10차	4. 27(수)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	70	성인
제11차	5. 3(화)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58	성인
제12차	5. 12(목)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58	성인
제13차	5. 17(화)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58	성인
제14차	5. 27(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65	성인
제15차	5. 31(화)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명)	비고
제16차	6. 1(수)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51	성인
제17차	6. 14(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56	성인
제18차	6. 16(목)	창원	마산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	48	성인
제19차	6. 21(화)	청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나눔마당	50	성인
제20차	6. 21(화)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	73	성인
제21차	6. 29(수)	수원	저작권교육원	66	성인
제22차	7. 7(목)	춘천	원주역사박물관	37	성인
제23차	7. 12(화)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59	성인
제24차	7. 12(화)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강연장	43	성인
제25차	7. 14(목)	전주	전주시평생학습센터 강의장	51	성인
제26차	7. 20(수)	광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0	성인
제27차	7. 22(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65	성인
제28차	8. 9(화)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47	성인
제29차	8. 18(목)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65	성인
제30차	8. 19(금)	수원	저작권교육원	54	성인
제31차	9. 6(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56	성인
제32차	9. 15(목)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49	성인
제33차	9. 16(금)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52	성인
제34차	9. 20(화)	수원	저작권교육원	51	성인
제35차	9. 21(수)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44	성인
제36차	9. 22(목)	광주	광주디자인센터	45	성인
제37차	9. 27(화)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50	성인
제38차	10.13(목)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47	성인
제39차	10.18(화)	인천	저작권교육원	47	성인
제40차	10.20(목)	수원	저작권교육원	51	성인
제41차	10.20(목)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50	성인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명)	비고
제42차	10.25(화)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51	성인
제43차	10.27(목)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45	성인
제44차	11. 3(목)	울산·창원	부산디자인센터	31	성인
제45차	11.11(금)	청주·대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43	성인
제46차	11.15(화)	제주	제주벤처마루	21	성인
제47차	11.17(목)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7	성인
제48차	11.26(토)	영남권	동대구역KTX	26	미성년자
제49차	11.26(토)	서울·경기 ·충청권	저작권교육원	39	미성년자
제50차	11.27(일)	호남권	광주역KTX	8	미성년자
제51차	11.27(일)	춘천	강릉문화원	28	성인, 미성년자
제52차	11.29(화)	춘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	성인
계				2,657	

(2) 연도별 교육 사업 실적 <2008~2011년>

(2011. 12. 31)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저작권체험교실	3,479명 (79개 학급)	4,095명 (117개 학급)	10,669명 (198개 학급)	5,827명 (99개 학급, 99회)
저작권연구학교	18,400명 (전국 23개교)	21,600명 (전국 27개교)	42,856명 (전국 50개교)	34,400명 (전국 43개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4,265명 (19회)	74,938명 (130회)	254,130명 (2,028회)	294,035명 (3,008회)
청소년 저작권 창작극 순회 공연	-	-	8,125명 (20회)	10,273명 (27회)
청소년 원격교육	-	-	-	804명 (2회)
저작권 기소유예제 교육 (저작권 지킴이 연수)	161명 (3회)	320명 (7회)	47명 (3회)	76명 (4회)
소계	36,305명	100,953명	315,827명	345,415명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성인	저작권 체험교실	80명(2회)	120명(2회)	151명(2회)	79명(1회)	
	저작권 연구학교	41명(1회)	1,080명(1회)	67명(2회)	1,720명(1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SW포함)	7,340명 (103회)	19,039명 (244회)	28,726명 (431회)	21,473명 (403회)	
	교원 직무 연수	오프라인	75명(2회)	76명(2회)	79명(2회)	79명(2회)
		온라인	2,727명 (5회)	3,305명 (7회)	3,308명 (12회)	10,526명 (35회)
	일반인 원격교육	-	-	1,036명 (20회)	1,365명 (66회)	
	공무원 원격교육	-	223명(8회)	248명(10회)	232명(27회)	
	저작권 기소유예제 교육 (저작권 지킴이 연수)	-	7,492명 (65회)	3,397명 (72회)	2,581명 (48회)	
	교과서 집필진 워크숍	-	44명(1회)	221명(3회)	135명(3회)	
	저작권 문화학교	295명(10회)	182명(7회)	69명(3회)	61명(2회)	
	저작권 아카데미	178명(4회)	250명(12회)	202명(10회)	287명(11회)	
	저작권 교육단 운영	71명(3회)	73명(3회)	93명(4회)	167명(5회)	
	교원연수 담당자 워크숍	15명(1회)	26명(1회)	183명(2회)	45명(1회)	
	공공부문 저작권 교육	86명(3회)	-	-	-	
	저작권 교육포럼	-	-	100명(6회)	-	
	저작권 문화콘텐츠 실무자연수	15명(1회)	-	46명(2회)	-	
	SW관리체계보급 교육	-	2,377명(50회)	-	-	
	소계	10,887명	34,287명	37,926명	38,750명	
	총 계	47,192명	135,240명	353,753명	384,165명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의 공무원 과정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통계에 의함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일자	주요 활동
1월 26일~27일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안) 공청회 개최
3월	청소년 대상 '고소장 각하제도' 재연장('11.3.1~'12.2.28)
3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기술분야 R&D 전문기관으로 지정
3월 10일	대검찰청과 MOU 체결
3월 30일	저작권 지킴이 '우리★(별) 방위대' 발대식 개최
4월 1일	국가 R&D정책 기술위원회 개최
4월 4일~8일	저작권 전문 교육과정 제 11기 단과과정 개설
4월 8일~22일	제 2기 e-저작권 아카데미 및 e-저작권 스쿨 연수 운영
4월 20일	제 1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4월 26일	제 2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4월 28일	한·필리핀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필리핀 마닐라)
4월 28일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5월 4일	제 3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5월 12일	제 4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5월 18일	제 5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개최
5월 22일	드림콘서트 연계 '우리스타!우리가 지킨다!' 이벤트 및 캠페인 행사
6월 10일	제 7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중국 북경)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공공저작권 신탁권리 주체 변경, 신탁대상 일방공공저작물로 확대
6월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6월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저작권과 친구될래요' 개설

일자	주요 활동
6월22일~23일	33개 공공기관 저작권담당자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7월	제 23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회의 참석
7월	월간 저작권 문화 개편 단행, 2011 국제비즈니스 대상 2개 부문 수상
7월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대 유병한 위원장 취임
7월 6일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월 12일	민-관 공동구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출범
7월 15일	제 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워크숍
7월 15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설립
8월	상해 판권 서비스 중심과의 MOU 체결
8월 16일	중국 내 한국 저작물 합법 유통을 위한 저작권 보호 설명회 개최(중국 북경)
8월 19일	한·중 저작권 교류 세미나 개최(중국 상해)
9월 19일~10월 28일	저작권 전문 교육과정 제 33기 일반과정 개설
9월 22일	제 4기 저작권 청년강사 위촉식 개최
10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제공용 애플리케이션 -알소리(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발, 무료 배포
10월	2011 서울저작권포럼 개최
10월	앱 불법복제 방지 기술연구(온라인 실행코드 기술) 개발
10월 13일	2010 저작권 백서 발행
10월 19일	스마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기술 세미나 개최
10월 25일	위원회-MBC 업무협약 체결
10월	제 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심사 발표 및 시상식
11월 7일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11월 8일	저작권 산업분류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
11월 9일	제 7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수상자 발표
11월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회의 참여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교원 대상 맞춤형 저작권 원격직무연수 실시
11월	2011 WIPO STUDY VISIT 개최

일자	주요 활동
11월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리뉴얼 배포
11월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 진행
11월 23일	2011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 논문 공모작 발표
11월 25일~26일	한·중 지적재산권학회 국제 세미나 개최(서울)
12월	제 3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일본 동경)
12월 14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개최
12월19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에 가입
12월 23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 회의 개최
12월 26일	해외저작권센터 필리핀 마닐라 사무소 설립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 1호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

2. 저작권보호센터

일자	주요 활동
2월 22일 ~ 8월 9일	대규모 불법복제물 유통 · 제작공장 단속(총 8회)
3월 2일 ~ 26일	상반기 출판합동단속 추진
3월 14일 ~ 11월 30일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모니터링 수행(총 5회)
4월 1일	용산 '불법저작물 단속신고센터' 운영 개시
4월 22일, 5월 17일	클린사이트 워킹그룹 회의 개최
4월 25일 ~ 8월 2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실시
5월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6월 1일	제9회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7월 6일 ~ 14일	'저작권 릴레이 간담회' 개최
7월 20일 ~ 24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
8월 29일 ~ 9월 30일	하반기 출판합동단속 추진
10월 17일 ~ 31일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복제물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수행

일자	주요 활동
11월 17일 ~ 18일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11월 17일	제10회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11월 17일	'한일 저작권 보호 MOU 협약식' 개최
11월 ~ 12월	ICOP-SMART 시스템 시범운영
12월 2일	저작권 보호 홍보동영상 제작
12월 3일 ~ 4일	'저작권 클린콘서트' 홍보부스 운영
12월 28일	'클린사이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3. 저작권 유관 학회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of Digital Property Law
설립연도	2001년 4월 6일
학회장	오 승 종
학회 연혁	<p>2001년 4월 6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p> <p>2001년 6월 8일 서울체신청 학회설립 인가 신청</p> <p>2001년 6월 28일 학회설립 인가</p> <p>2001년 7월 20일 학회설립 등기</p> <p>2001년 7월 26일 비영리 사업자등록</p> <p>2001년 11월 30일 디지털재산법연구 창간호 발행</p> <p>2002년 2월 28일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집 발행</p> <p>2004년 5월 30일 송영식 선생 화갑기념집 발행</p> <p>2005년 12월 25일 양병희 교수 정년기념호 발행</p> <p>2010년 12월 31일 이상정선생 화갑기념집 발행</p>

설립목적/ 기능	<p>인터넷과 디지털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디지털재산이 대량으로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재산은 그 보존과 이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래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이다. 그러나, 디지털재산의 침해에는 비용 및 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복제의 질이 원본과 같다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재산은 침해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재산을 보호하고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재산의 창출을 유도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일이다. 또한 디지털재산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여 디지털 재산의 제작자와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신속·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재산과 관련된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자 우리가 다른 나라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며, 정보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산업이다. 디지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또 하나의 법의 임무로 디지털재산법학회는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거래에 관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환경정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p>
2011 학제내 외 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춘계학술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 법무법인 다래 대회의실 ◆ 주제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관련 문제 ◆ 발표자 : 신재호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2. 추계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 강남 교보타워 옆 백암빌딩 3층 토즈 ◆ 주제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지적재산법상 쟁점 ◆ 발표자 : 이헌희 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재호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발행물	<p><연구용역보고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발명진흥회 연구보고서-저작권재산권침해의 판단 방법(KINPA)
홈페이지	http://www.digitallaw.kr
학회주소	<p>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 전화 : 02-3475-7716</p>
연락처	<p>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 교수 연구실 전화 : 02-2220-0981</p>

(2) 한국SW감정평가학회

학회명	<p>(한글)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p> <p>(영문) Korea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Society</p>
설립연도	2002년 12월 5일
학회장	이 규 대
학회연혁	<p>2002년 12월 5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p> <p>2003년 4월 15일 비영리법인설립</p> <p>2003년 6월 17일 학회설립 등기</p> <p>2003년 6월 26일 비영리 사업자등록(220-82-05605)</p> <p>2005년 6월 30일 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창간호 발행</p> <p>2009년 10월 25일 논문지 ISSN 번호 취득(ISSN 2092-8114)</p>
설립목적/ 기능	<p>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술 정보를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에서는 감정도구/기법/사례, 감정기법 표준화 방안,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감정의 역할, 프로그램 감정을 위한 SW공학적 접근 방안, 가치평가기법의 모델링방안, SW 가치평가와 담보제도 등을 비롯하여 제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하여 학회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의 감정 및 가치평가를 위한 학술활동으로 체계화된 저작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한다.</p>
2011 활동 내역	<p>1. 춘계 학술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6월 17일(금), 14:00~18:00 ◆ 장소 :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11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SW감정평가학회 ◆ 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남대학교 <p>2. 추계 학술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11월 17일(목), 14:00~18:00 ◆ 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 주최 : 한국SW감정평가학회 ◆ 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2011 활동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발행물</p>	<p>〈학회 논문지 발간(연2회)〉</p> <p>1. 제7권 1호(6월)</p> <p>[SW 감정평가분야] 권기태, 소프트웨어 사업 생명주기 비용구조 분석 이규대,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저작권 가중치 박혜자· 권기태, AHP 기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의 대체방안 평가에 관한 연구 이효섭· 도경구, 코드클론 표본 집합체 자동 생성기</p> <p>[정보기술 관리분야] 김유경· 도경구, 차세대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SQuaRE의 이해 정효택, UML Activity 모델의 Colored Petri Net 모델로의 변환 기장근, ZigBee 공격노드 시뮬레이션 모델</p> <p>2. 제7권 2호(12월)</p> <p>[SW 감정평가분야] 윤영선, 공지 기술의 적용 여부를 고려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SW 감정 전병태, 추상화-여과-비교에 기반한 감정서 작성방법 박혜자· 권기태, OLAP 분석을 위한 SW 비용자료 리포지토리 구축 문재찬· 김동진· 조성제· 박민규, 클래스 분리와 동적 적재를 사용한 불법 복제 Andriod 앱 실행 차단 이규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공지기술 기준 용환승, SW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관으로서의 감정의 역할</p> <p>[정보기술 관리분야] 기장근, SIP VOIP 지원 multihomed 노드 시뮬레이션 모델 정연서, RFC 3511방화벽 성능측정 방법론 분석</p>
<p>홈페이지</p>	<p>http://www.i3.or.kr</p>
<p>학회주소</p>	<p>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 508호</p>
<p>연락처</p>	<p>배재대학교 김도완 교수 연구실 전화 : 042-520-5710</p>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설립연도	2006년 4월
학회장	진 광 업
학회 연혁	2006년 2월 창립총회 2006년 3월 제1회 월례사례연구회 개최 2006년 4월 사단법인 설립인가 - 문화관광부 2006년 4월 제1회 창립SYMPOSIUM
설립목적/ 기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 및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학술 연구와 회원 교류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교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에 있어서 학문과 산업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학 년 내 의 활 동 내 역	<p>〈월례사례연구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그들이 공연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2가지 이야기' - 법무법인 중정 정경석 변호사 4월 '뉴플랫폼 시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 -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세대콘텐츠사업본부 뉴플랫폼콘텐츠팀 박웅진 팀장 5월 '음악 표절 사례, '외톨이야' 표절 사건'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6월 '지상파 재전송 분쟁의 쟁점과 모색' - 법무법인 광장 장선 변호사 7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의 특징(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관련)' - 문화방송 법무노무부 최진훈 차장 <p>〈MOU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MOU</p> <p>〈세미나 개최〉 2011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8월 11일 ~ 8월 13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부 영화 실존인물 주제발표(이재경 교수) 사회-표종록 변호사, 토론자-김효정변호사 / 박소현변호사 2부-법률 상담
	발행물

홈페이지	http://www.kels.or.kr
연락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러스빌딩 15층 법무법인 정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진광엽 변호사 전화 : 02-2149-1680

(4) 한국인터넷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인터넷법학회
	(영문)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설립연도	2002년 9월 5일
학회장	소 성 규
학회연혁	2002년 9월 5일 학회 창립 2007년 4월 ~ 2009년 3월 박균성 회장 2009년 4월 ~ 2010년 3월 소재선 회장 2010년 4월 ~ 2011년 3월 최승원 회장
설립목적/ 기능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인터넷법학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발표 및 교류를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을 법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다른 외국과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다지면서 학술의 보급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011 활동 내역	<p>〈정례학술대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 춘계 공동학술대회(한국정보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4월 15일(금) ◆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 ◆ 주제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정기 하계 공동학술대회(한국인터넷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7월 7일(목) ◆ 장소 : KISA 아카데미 세미나실 ◆ 주제 :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 3. 정기 추계 공동학술대회(한국인터넷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11월 21~22일(월, 화) ◆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 ◆ 주제 : 스마트·컨버전스를 위한 인터넷 법적 세미나 <p>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p>

2 0 1 1 학 회 내 역	발행물	<p>〈학술대회 및 세미나 발표자료집〉</p> <p>1. 2011년 인터넷법연구 제8권 1, 2호 김민호(성균관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제도정비방안 장항배·임재환(대진대), 기업 IT경영 관점의 산업보완 개선 방향 연구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방안 차재필(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적 과제 및 시사점 박지순(고려대), 스마트워크의 법적 쟁점 검토 이병준·김대규(한국외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몇 가지 계약 법적 이슈 김성천(중앙대), 스팸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p>
홈페이지	http://www.itlaw.or.kr	
연락처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 전화 : 031-539-1782 이메일 : sungkyus@daejin.ac.kr	

(5)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명	<p>(한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p> <hr/> <p>(영문) Korea Association of Copyright Law</p>
설립연도	1985년 3월 16일
학회장	김 선 정
학회 연혁	<p>1985년 3월 16일 학회설립 2001년 2월 21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2001년 6월 8일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허가 2001년 7월 2일 사단법인 설립등기 2001년 7월 5일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2001년 9월 20일 비영리 사업자등록 2002년 5월 31일 저작권연구 창간호 발행</p>

설립목적/ 기능	<p>한국저작권법학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자국의 산업발전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열한 국제간 경쟁양상에서 산업자체도 보다 큰 경제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저작권재산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경과 더불어 저작권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감하여 저작권법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저작권관련 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향상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저작권관련 세미나 및 학술연구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기술적 논리와 법률적 논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내의 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연구와 활동 그리고 의견을 모아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저작권 문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p>
2011 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	<p>〈학술 세미나 개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계 학술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10월 15일(토) ◆ 장소 : 국립의료원 내 스칸디나비아클럽 ◆ 주제 : 추급권 2. 국제세미나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11월 25일(금)~26일(토) ◆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원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법제의 전개 동향과 저작권 문제 점검 3. 출판기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10월 15일(토) ◆ 장소 : 국립의료원 내 스칸디나비아클럽 ◆ 주제 : 허희성 박사 저작권법 출판기념회
홈페이지	없음
학회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선정 교수 연구실 전화 : 02-2260-3853
연락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연구실(학회 총무이사) 전화 : 02-3290-2877

(6) 한국정보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정보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
설립연도	1996년 4월
학회장	강만구, 김병일
학회 연혁	<p>1996년 4월 학회 창립 1996년 4월 제1회 세미나 개최 1997년 6월 제1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1997년 12월 정보법학 창간호 발간 매해 1회씩 심포지움 개최(모두 4회의 국제심포지움 개최) 매해 3회씩 세미나 및 매해 5~6회씩 사례연구회 개최 매해 3회씩 <정보법학> 발간 2007년 정보법학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2010년 정보법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p>
설립목적/ 기능	<p>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 간의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 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p>
2011 활동 내역	<p><세미나 개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3월 8일 ◆ 주제 발표 인터넷기반서비스법 제정에 관한 연구-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전자거래기본법 전면개정에 관한 연구-최경진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기 세미나(심포지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6월 25일 제1세션 : SNS, 클라우드 서비스와 법적 과제 제2세션 : Public Service로서의 전자소송

2 0 1 1 활 동 내 역	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	<p>3. 정기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9월 24일~25일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세션 :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제2세션 :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 제3세션 : 망중립성 <p>4. 정기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12월 13일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보호법 개관-김일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2. 트위터 이후의 민주주의-장덕진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hr/> <p>〈사례연구발표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월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 한국과 EU의 대비를 중심으로-차상욱 변호사(법무법인 남강) 로케이션 프리-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올촌) 2. 4월 복제와 사적복제-윤웅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멸된 저작권점권의 회복과 관련한 제문제-남희섭 변리사 (법률사무소 지향) 3. 5월 스마트 폰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례 분석-김영민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험 여부-김기중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 4. 7월 특허간접침해와 주관적 요건-Global Tech v. SEB 사건에 대한 평석-최승재 교수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례 검토 -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사건을 중심으로-김국식 판사 (인천지방법) 5. 10월 DR문화산업에 있어서 저작권관리시스템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김종호 교수 (호서대학교) 최근 사이버범죄의 동향-국제공조수사활성화 필요성을 중심으로-김영민 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6. 11월 인터넷 포털에서의 법적 이슈 - NHN 사례를 중심으로-김광준 회원(NHN 법무담당 부사장,연수원 23기) 클라우드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정연덕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hr/> <p>〈학술지 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법학 제15-1호(4월) <p>차상욱,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최경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김병일, 저작권법 제 104조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규호 · 최종모,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열,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박준석,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반불법행위-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최승수,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p>
	발행물	<p>1. 정보법학 제15-1호(4월)</p> <p>차상욱,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최경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김병일, 저작권법 제 104조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규호 · 최종모,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열,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박준석,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반불법행위-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최승수,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p>

2 0 1 1	발행물	2. 정보법학 제15-2호(8월)
		3. 정보법학 제15-3호(12월)
발행물		<p>[발표논문]</p> <p>최승재,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판단 오병철, 클라우드 컴퓨팅의 통신정책적 고찰 이대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의 고찰</p> <p>[연구논문]</p> <p>권남훈·홍대식,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이현묵, 인터넷 하이퍼링크에 의한 전시와 명예훼손 최우영, 미국에서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된 라이선스 및 기술이전계약의 실무에 대한 연구 최진원,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규현, 후출원 특허발명 실시의 선출원 특허권 침해 여부</p>
홈페이지		http://www.kafil.or.kr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연구실 전화 : 02-2220-0981

(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영문) Korea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ion
설립연도	2008년 1월 17일

학회장	박 영 길
학회연혁	<p>2008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p> <p>2008년 4월 20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지식산권중심(知識產權中心)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및 상호학술교류협정 체결(장소: 중국 무한(武漢))</p> <p>2008년 8월 28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 등 방문</p> <p>2008년 9월 24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창립 국제세미나 개최</p> <p>2008년 12월 4일 임원 등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등 방문</p> <p>2008년 12월 30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위탁연구 수행(과제명: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 제도)</p> <p>2009년 5월 8일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중국화남이공대학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p> <p>2010년 4월 17일 회장 등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 주최 국제 세미나 참석</p> <p>2010년 10월 14일 회장 등 임원 중국인민대학 주최 법학원 60주년기념 '중국저작권법 백주년 국제포럼' 참석</p> <p>2010년 7월 23일 회장 등 임원 중남재경정법대학 '한·중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국제학술대회 참석</p>
설립목적/기능	<p>한중지적재산권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 연구회 또는 강연회 개최, 학회지 등 서적 발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p>
2011년 내 외 학술 행사 및 홍보 활동	<p><국제 세미나 참석> 4월 23일, 회장 등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적재산권중심 주최 국제 세미나 참석</p> <p><국제 세미나 개최> ◆ 일자: 2011년 11월 25~26일 ◆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및 고려대 법학연구소 ◆ 주제: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법제의 전개 동향과 저작권 문제 점검</p>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p>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422호 박영길 회장 전화: 02-416-3641</p>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문) KOREAN SOCIETY OF AUTHORS (KOSA)
설립연도	1984년 3월
단체연혁	1984년 5월 19일 <한국저작권협회>창립 1988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비영리 사단법인 정식출범 1989년 3월 16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1990년 12월 31일 저작권법 해설서 <저작물과 출판권> 발행 1993년 7월 21일 저작권 관련 4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협회)와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창립 1994년 12월 15일 CISAC(세계저작권단체연합회)회원 가입 1994년 12월 30일 <저작권 운동 10년사> 발행 1996년 3월 26일 방송3사(KBS, MBC, SBS)와 단체협약체결 1997년 10월 13일 도서 불법복제 및 복제보상금관련, 출판협회와 회의 개최 2009년 12월 23일 제10대 권대우 회장 취임
설립목적/기능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시, 소설, 수필, 논문, 희곡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어 저작권자가 계약상 피해를 입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용자들에게는 저작물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연구 및 홍보활동 내역	1. 1차 이사회 개최(2월 17일) 2. 정기총회 개최(2월 24일) 3. 2차 이사회 개최(5월 25일) 4.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11월 18일) 5. 3차 이사회 개최(12월 2일) 6. <출판 계약의 공정성과 문화산업의 성장> 세미나 개최(12월 2일)

2011 활동 내역	발행물	1. <저작인> 제82호 발간(1월 3일) 2. <저작인> 제83호 발간(4월 11일) 3. <저작인> 제84호 발간(7월 1일) 4. <저작인> 제85호 발간(10월 1일)
	기타	2011년 청소년 저작권지킴이 시작 (2월 1일)
	홈페이지	www.copyrightkorea.or.kr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호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전화 : 02-508-0440, 02-508-3127~8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영문)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Association (KBPA)
설립연도	2001년 8월 10일
단체연혁	2001년 8월 10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2년 2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2002년 6월 16일 제1대 송기윤 이사장 취임 2005년 6월 16일 제2대 송기윤 이사장 취임 200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창간 2006년 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504호 이전 2007년 2월 9일 홈페이지 개설 (www.kbpa.kr) 2007년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4호로 이전 2008년 8월 21일 일본 CPRA, PRE 방문 2009년 3월 20일 대의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 2009년 4월 30일 제1기 대의원 선출 2009년 6월 15일 제3대 김기복 이사장 취임 2009년 10월 10일 방송실연자협도서Ⅲ 발간 "저작권제도와 방송콘텐츠의 권리보호 연구"

<p>단체연혁</p>	<p>2010년 2월 1일 일본저작권단체 CPRA 방문연수 2010년 3월15일 복지사업용 콘도 구입 2010년 4월14일 협회 장학제도 도입에 따른 제1기 장학생 선발 2010년 8월26일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세미나 - 김을동 의원과 연대 2011년 2월10일 장기요양회원 지원방안 마련 2011년 3월28일 KBS, MBC, SBS와 일본지역 사용에 관한 특약 체결 2011년 4월19일 협회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2011년 4월27일 저작권위원회 디지털 거래소 업무협약 조인식 2011년 10월21일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11년 11월14일 협회설립 10주년 기념 정책과제 발표회</p>
<p>설립목적/ 기능</p>	<p>(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저작권접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으로 1999년 7월 1일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권리확보 및 권리신장을 위해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별도로 설립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2003년부터 협회가 직접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해당 회원에게 분배를 하는 신탁 업무를 시작하였다.</p>
<p>2011 활동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참여(2월12일) 2. KBS, MBC, SBS와 일본지역 사용에 관한 특약 체결(3월28일) 3. 협회홍보 포스터 제작·배포(4월19일) 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여(4월20일) 5. 저작권위원회 디지털 거래소 업무협약 조인식(4월27일)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실무회의 참가(5월13일 ~ 6월10일) 7.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지원(10월13일) - 김을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3414 8. 정책연구과제 보고서(10월21일) -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9. 협회설립 10주년 기념 정책과제 발표회(11월14일)
<p>발행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23호~27호 발행 2.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10년사 발간 3.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http://www.kbpa.kr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604호 전화 : 02-784-7802

(3) 한국방송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영문)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62년 2월
단체연혁	<p>1962년 2월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창설(초대 이사장 이서구)</p> <p>1970년 2월 28일 문화공보부 사회단체 등록(등록번호 270호)</p> <p>1976년 10월 24일 협회보 '방송작가회보' 창간</p> <p>1988년 4월 2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허가번호 598호)</p> <p>1988년 5월 14일 협회 교육원 개원(초대 원장 이상현)</p> <p>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p> <p>1989년 3월 31일 제1회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개최</p> <p>1991년 1월 19일 MBC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1년 5월 10일 K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2년 12월 15일 S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7년 8월 14일 케이블TV PP, SO 사용계약 체결</p> <p>1998년 2월 24일 EBS 저작물사용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p> <p>1998년 7월 28일 PC통신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p> <p>1998년 12월 1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www.ktrwa.or.kr)</p> <p>2000년 3월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 50년사 출판기념회</p> <p>2002년 1월 26일 제1회 교육원 TV드라마 신춘문예 시상식</p> <p>2008년 1월 15일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개관식</p> <p>2009년 2월 16일 TV 외주제작프로그램 재방료 지급계약 체결</p> <p>2009년 4월 16일 IPTV 콘텐츠 지급에 관한 사용계약 체결</p> <p>2010년 7월 16일 OBS경인TV 사용계약체결</p> <p>2011년 2월 7일 KBS JAPAN 계약 체결</p> <p>2011년 8월 1일 케이블TV방송채널사업자(PP)계약체결</p>

<p>설립목적/ 기능</p>	<p>가. 설립목적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문예의 향상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작가회원 저작권 신탁관리 2. 월간지 '방송작가'등의 도서 출판 3. 외국 방송작가 기구 또는 문화관계 단체 및 인사와의 교류 4. 회원 복지 사업 5. 회원 및 후진양성을 위한 연수 등 교육사업
<p>2 0 1 1 학 동 내 역</p> <p>연구 및 홍보활동</p> <p>발행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주제작사의 직접 판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및 협약체결 추진 2. 불공정 집필계약 약관 및 체결 강요에 대한 대책마련 활동 3. 원고료 체불 제작사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4. 제2회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교육 워크샵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11년 4월 7일~4월 8일 ◆ 주제 : 저작권법의 기본 이해와 최신 드라마 분쟁사례를 통한 표절 및 저작권 침해기준 이해 5.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TV단막극' 지원 확보 6. 대중문화예술상 작가부문 포함 - 첫 수상자 유호 회원 선정 7. 방송작가 국제포럼(예능)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11년 6월 25일~6월 27일 ◆ 주제 : 한국 예능 TV 프로그램 포맷의 글로벌화 8. '방송작가 창조력 확장 프로젝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 상/하반기 정규과정, 상/하반기 전체집합교육, 국외심화교육과정 ◆ 내용 : 프로파일러의 세계, 명사초청특강, 스마트시대의 콘텐츠 변화 등 9. 방송작가 캐나다, 미국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10. DB화 완료 방송대본 국가기록원 보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작가(월간 연12회) 2. 방송작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 3. 2011년도 정기총회 자료 4. 제23회 한국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 5. 제34회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공모 TV드라마 신인상 수상작품집 6. 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40기 창작반 졸업 작품집
<p>홈페이지</p>	<p>http://www.ktrwa.or.kr</p>
<p>연락처</p>	<p>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호(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전화: 02-782-1696 팩스: 02-783-3711</p>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

<p>단체명</p>	<p>(한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p> <hr/> <p>(영문)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KRTRA)</p>
<p>설립연도</p>	<p>2000년 7월</p>
<p>단체연혁</p>	<p>2000년 6월 19일 발기위원회, 설립 총회, 설립 이사회 개최, 초대 이사장 취임(이기수)</p> <p>200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195호)</p> <p>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4호)</p> <p>2003년 7월 27일 제2대 이사장 취임(이기수)</p> <p>2003년 10월 17일 도서관보상금 수령 저작권재산권자 단체 지정(문화관광부)</p> <p>2004년 10월 1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정회원 가입</p> <p>2006년 7월 27일 제3대 이사장 취임(조동성)</p> <p>200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명칭 변경</p> <p>2008년 3월 13일 학교교육목적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9년 7월 27일 제4대 이사장 취임(조동성)</p> <p>2009년 11월 2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출범</p> <p>2010년 1월 31일 보상금 이미지저작물 아카이브 구축 및 검색서비스 개시</p> <p>2011년 10월 5일 미분배보상금 분배확대사업 개시</p> <p>2011년 12월 15일 도서관보상금 온라인 약정체결 시스템 개시</p>
<p>설립목적/기능</p>	<p>저작물의 문헌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 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권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체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2)저작물의 국민적 이용 확대와 조사연구, 출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저작물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p> <p>이러한 신탁 업무 외에도 저작권법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됨으로서 보상금 제도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이용자에게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보상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2011학년도 연구 및 홍보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4차 교과용도서보상금 관련자 교육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1년 4월 ◆ 대상 : 국정도서 및 인정도서 집필진, 교과용도서 발행사 편집진 ◆ 주제 :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실무 및 저작권 분쟁사례 질의·응답 2. 출판 합동단속(저작권보호센터 공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각 1개월(2011년 3월, 2011년 9월) ◆ 대상 : 대학가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 3. 대학입시 자료 사용료 규정 마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02월 ◆ 연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자료 및 논술시험문제 저작권사용료 산정방안 마련 - 외국의 입시전형자료 조사 4.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안내 사이버대학 대상 워크숍 개최(2011년 5월) ◆ 제도 시행안내 및 가이드북 배포(2011년 6월) ◆ 제도 안내 Q&A 게재(한국대학신문, 2011년 7월 ~ 12월) 5. 저작권선진화 포럼 - 어문분야 참여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발행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목적보상금 기준 안내 ◆ 저작권 관련 국제 동향 및 협회 관련 소식 ◆ 보상금 분배공고 - 2호(20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소개 ◆ 저작권 관련 국제 동향 및 협회 관련 소식 등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목적보상금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1. 08. ~ 2012. 02(예정) ◆ 사업내용 : 수업목적보상금 징수/정산 시스템 등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홈페이지</p>	<p>http://www.krtra.or.kr</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연락처</p>	<p>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63-3 중앙빌딩 8층(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전화 : 02-2608-2036</p>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문)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KSWA)
설립연도	1954년 5월
단체연혁	1992년 5월 영협정관개정으로 (사)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로 개칭 1992년 7월 협회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개설 1999년 12월 31일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로 사단법인 등록 2001년 9월 12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2002년 11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 등록
설립목적/ 기능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제반 이용 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제반사업 2. 시나리오작가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신인작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4.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 기관지 및 영화 관련 출판사업 6. 시나리오의 학술적 연구 및 제반자료의 수집·조사·통계 7. 시나리오 문예의 진흥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8. 회원을 위한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9.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2011 연말 내역	연구 및 홍보활동 1. 교육원 37기, 38기생 수료 2. 영상화 작품 - 〈풍산개〉 김기덕 감독 - 〈고양이〉 장윤미 작가 - 〈고지전〉 장훈 감독 - 〈너는 핏〉 민병우 작가 - 〈오싹한 연애〉 황인호 감독 - 〈공주의 남자〉 김욱 작가

2011 활동내역	<p>연구 및 홍보활동</p> <p>3. 입상 안홍란-2010년 제23회 KBS단막극 공모전 최종구-2011년 제24회 KBS 단막극 공모전 김기덕-2011년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서장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3분기 진익순·주영진-영진위 애니메이션 공모 안정희-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고정운·장윤미-2011년 한국영화 기성작가 공모전</p>
홈페이지	http://www.scenario.or.kr
연락처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 캐피탈빌딩 202호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화 : 02-2275-0566

(6)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명	<p>(한글) 한국언론진흥재단</p> <p>(영문) Korea Press Foundation (KPF)</p>
설립연도	2010년 2월 1일
단체연혁	<p>1962년 05월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설립 1964년 04월 사단법인 한국신문연구소 설립 1981년 06월 한국신문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언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1984년 11월 한국신문회관, 사단법인 한국프레스센터로 확대 개편 1985년 04월 프레스센터 개관 1992년 01월 정부광고 대행업무 시작(한국언론회관) 1999년 0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3단체 통합한국언론재단 출범 2005년 10월 신문유통원 설립 2005년 11월 신문발전위원회 설립 2006년 06월 뉴스 관련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2009년 12월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해산, 3기관 통합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 등기 2010년 0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이성준) 취임 2010년 02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p>

설립목적/ 기능	<p>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2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하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3개 기구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시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뉴스 유통 인프라 구축, 읽기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사업,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p>
2011년 연구 및 홍보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전(UCC, 신문광고) 개최 - 공모전 수상작을 이용한 신문, 인터넷 광고 실시 2. 회원사 매체를 통한 '뉴스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 광고 게재 3.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 실시 4. 언론계, 학계, 정부부처 등 뉴스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뉴스저작권 정책포럼을 개최, 뉴스 저작권 보호 및 뉴스 유료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5.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회원사 총회 개최 6. 뉴스 저작물 이용실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행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저작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시장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2. <뉴스저작물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보고서 3. 뉴스저작권 가이드북
홈페이지	<p>http://www.newskorea.or.kr http://www.kpf.or.kr</p>
연락처	<p>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전화 : 02-2001-7114</p>

(7) 한국영상산업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영문) Korea Movie and Video Industry Association (KMVIA)

설립연도	1999년 8월 4일
단체연혁	<p>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자 협의회 1차 회의 1999년 (사)한국영상협회 법인설립허가 2003년 비디오(DVD)연감 발행(격년발행) 2005년 (사)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11.9.) 2006년 DVD 감상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업무 시행 2007년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회의 사무국 참여 2009년 굿다운로더 캠페인 운동본부 지원 및 운영위원 참여 2010년 OSP 소송 및 합의 2011년 박양우 회장 취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 중앙대 교수)</p>
설립목적/ 기능	<p>한국영상산업협회는 국내 영상저작물(영화)의 보호와 발전,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영화에 대한 공연권을 신탁관리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일소를 위한 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p> <p>국내 최초로 협회 자체부담으로 온라인에 대한 감시팀을 구성하여 불법영화감시 및 삭제요청, 고소진행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과 연감 발행, 그리고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영상대상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p> <p>현재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 지원하고 있고, 불법 웹하드, P2P, 토렌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영비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p>
2011년 연구 및 홍보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차 이사회 (2월 18일) 영화인 실무를 위한 워크샵(2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관리 실무자 교육 영화 저작권 보호 업무 및 운영 지원 현황 공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관리망 진행상황 논의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권리 보호방안 세미나(3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범위 연구 해외 선진국의 유사 사례 공유



<p>2011 활동 내역</p> <p>연구 및 홍보활동</p>	<p>4. 제13차 정기 총회 (3월 24일)</p> <p>5. 웹하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방안 연구세미나(7월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의 적극적 필터링 의무화 강조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진흥원 UCI 발급시스템 구축 업체선정 및 사업진행(7월) - 3차 OSP 소송 시작(12월) 	
<p>홈페이지</p>	<p>http://www.kmva.or.kr</p>	
<p>연락처</p>	<p>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63 미진빌딩 2층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전화 : 02-3452-1001</p>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p>단체명</p>	<p>(한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p> <p>(영문)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KFPA)</p>
<p>설립연도</p>	<p>1994년 2월</p>
<p>단체연혁</p>	<p>1994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창립총회 2000년 스크린쿼터감시단 분리 독립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LAPF) 가입 2004년 제1회 한·중·일 프로듀서 교류 및 포럼 개최(~2006) 2005년 문화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2007년 한국영화산업노조와 산별교섭 조인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필름과 MOU 체결 2007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창립 2007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총회 (~2010) 2009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온라인불법복제 관련 합의 2011년 협회-북경영화대학 방문단 간담회 개최</p>

설립목적/ 기능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994년에 창립한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한국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부가시장 활성화, 불법복제방지 및 산업구조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마련 중이다.
2011 활동 내역	연구 및 홍보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산업 구조합리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연구 및 발표 2. 영화산업 합리화를 위한 정책 활동 3. 영화 부가시장 정상화 사업 4. 영화 온라인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5. 영화산업 단체 및 임금협상 진행 6. 영화인캠페인 상영회 진행
홈페이지	http://www.kfpa.net
연락처	서울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빌딩 503호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화 : 02-2267-9983

(9)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영문)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FKMP)
설립연도	1988년 6월 4일
단체연혁	<p>1988년 창립총회</p> <p>1988년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지정</p> <p>2000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p> <p>2008년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콘서트 "소리에서, 소리로, 소리까지"공연 개최</p> <p>2008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p> <p>2008년 법인명 변경(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p> <p>2008년 대의원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관 개정</p> <p>2009년 음실련 20년사 발간</p> <p>2009년 징수액 100억원 돌파</p> <p>2009년 창립 20주년기념식 및 제9회 실연자대상 시상식개최</p> <p>2009년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p> <p>2010년 한(FKMP),일(CPRA) 상호관리 계약 체결</p> <p>2010년 실연자 권리찾기 캠페인(저작권집권 홍보) 진행</p> <p>2010년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가입</p> <p>2011년 음실련 신탁회원수 5,000명 돌파</p> <p>2011년 스웨덴 SAMI와 상호관리 계약 체결</p>

설립목적/ 기능	<p>가. 설립목적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약칭 '음실련')는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의 증진과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 6월 4일 창립하였다.</p> <p>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실연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사업 2. 국내외 음악실연에 관한 조사·연구 3. 국내외 음악문화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4. 음악실연자의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고 직업능력 개발 및 활동지원 5. 음악실연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발굴 포상 6.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무 7. 저작권관련 법령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수령 및 분배업무 8.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실연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사업 9.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10. 기타 음실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1 활동 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실련 홍보CF 케이블방송 음악전문채널에 광고 2.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총회 참가 3. 음악4단체 이용허락마크 개발 4. SCAPR 헝가리 국제컨퍼런스 "저작권접권 보호를 위해 걸어온 50년의 발자취" 참가 5. 신탁사용료 관리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용역 실시 6. 디지털음악시장 현황조사 및 원가분석 연구용역 관련 세미나 개최
발행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보 "음실련 소식" 통권 <제16호>, <제17호> 2.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적정성 연구 3.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홈페이지	http://www.fkmp.kr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전화 : 02-745-8286, 팩스 : 02-766-1034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명	<p>(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p> <p>(영문)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p>
-----	--

설립연도	1964년 6월 19일
단체연혁	<p>1964년 3월 8일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6명) 등 10명 협회 창립총회</p> <p>1964년 3월 15일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총회원 56명)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p> <p>1964년 6월 19일 협회 설립 인가(문편발 제1732호)</p> <p>1978년 2월 11일 제15차 정기총회 : 정회원 · 준회원 구분</p> <p>1986년 7월 20일 협회 회보(음악저작권) 창간</p> <p>1987년 4월 10일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준회원 가입</p> <p>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 허가 취득</p> <p>1988년 10월 1일 전국 16개 지부 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p> <p>1995년 4월 25일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정회원 승격</p> <p>1996년 9월 11일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p> <p>1997년 6월 14일 회관 건립 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p> <p>2000년 4월 7일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p> <p>2004년 10월 18일 CISAC 세계총회 개최(10월18일~10월22일)</p> <p>2007년 12월 10일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과의 상호관리계약 체결</p> <p>2009년 12월 5일 10,000번째 회원(신탁자) 가입</p> <p>2009년 12월 23일 임원 선출 임시총회 : 제21대 신상호 회장 당선</p> <p>2010년 12월 31일 저작권사용료 1,000억원 달성</p> <p>2011년 12월 4일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개최</p>
설립목적/ 기능	<p>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복제권, 대여권 등을 관리하며, 음악저작권자 권익보호를 통해 음악문화발전에 힘써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다.</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 음악 복제물의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국가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문화강국, 경제강국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 데 기여 하고 있다.</p>
2011 활동 내역	<p>연구 및 홍보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저작권 무료 순회특강 2. KOMCA 50년사 발간 사업 추진 3.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 개정 4. 협회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5. 신탁사용료 관리수수료의 적정성 산정과 관련한 원가분석 연구 용역사업 실시 6. 분리신탁제도 등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 실시

7.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개최



8. CMS(저작권관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 9.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정례회의 참석
- 10. 저작권 침해 매체에 대한 소송 진행 : 이동통신 3사 / 스타벅스코리아
- 11. 저작권료 지급내역서 온라인발송(이메일) 서비스 시행
- 12. 지출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3. 해외 단체(홍콩) 징수규정 분석 및 음악서비스시장 현황 조사
- 14.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2차) 개최



- 15. 음반 및 영상물 해외 배포에 대한 단속 관련 업무공조 추진
- 16. 음반/영상 제작수량 보고제 시행
- 17. 전국지역 불법음반 판매자 합동 모니터링 및 단속
- 18. 외국곡 CWR(Common Works Registration)의 SI 등록프로그램 구축
- 19. 통합 전산화(SI) 시스템 안정화/고도화

2011 활동 내역	발행물	1. 음악저작권회보(KOMCA TODAY) 격월 발간(연6회) 2. 협회 주최 관련 세미나 자료 제작 3. 2011년도 제48차 정기총회 자료 제작
	홈페이지	www.komca.or.kr
	연락처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관 전화 : 02-2660-0400, 팩스 : 02-2660-0401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문) Korean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
설립연도	2001년 9월 5일
단체연혁	<p>2001년 9월 5일 창립총회</p> <p>200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인가 취득(문화체육관광부)</p> <p>2001년 12월 27일 저작권접권 관련 보상금징수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3년 3월 17일 신탁관리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3년 7월 1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료화 추진</p> <p>2004년 1월 1일 협회보 <음원가족> 발간</p> <p>2007년 3월 14일 디지털음원유통 국제 표준화 기구 DDEX 가입</p> <p>2007년 8월 24일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한국저작권위원회, KBS,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p> <p>2007년 12월 6일 불법음원 근절 국민운동본부 공동 발족(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엠넷미디어)</p> <p>2008년 1월 31일 국내음악저작물 통합메타데이터 구축</p> <p>2008년 3월 13일 디지털음성신보상금 수령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8년 4월 1일 국내 음악저작물 표준음악저작권 관리번호(CN) 발급 및 배포</p> <p>2008년 11월 21일 웹하드 협의체(DCNA) 1차 유료화 합의</p> <p>2009년 7월 1일 음악분야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포럼 운영</p> <p>2009년 7월 10일 웹하드 협의체(DCNA) 2차 유료화 합의(주요 웹하드업체 20개사)</p> <p>2009년 9월 14일 판매용 음반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p> <p>2009년 11월 1일 음악콘텐츠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UCI) 등록기관 선정</p> <p>2009년 12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협약체결</p>

단체연혁	<p>2010년 3월 10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분야 구축완료</p> <p>2010년 3월 31일 외국음악저작권 관리번호 체계 구축 완료</p> <p>2010년 12월 31일 내부정보관리시스템(KIS) 구축 완료</p> <p>2011년 3월 14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음악 심의 접수 대행</p> <p>2011년 5월 11일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국고 사업 진행</p> <p>2011년 6월 26일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시관' 개관 및 운영</p>
설립목적/기능	<p>가. 설립목적</p> <p>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음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음악 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p> <p>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금(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징수 및 분배 2.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 3.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4. 음반제작자의 음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활동 5. 음악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 6.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권접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8. 국내외 표준음원식별자 발급 및 관리 9. 방송음악심의 등록 대행 10. 한국음반산업 통계 및 분석 등 연구 11.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산업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12. 국제 교류 13. 회원의 복지 향상 14. 신탁회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
2011년 연내 연구 및 홍보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국고 사업 진행(5월 11일) 2.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시관' 개관 및 운영(6월 26일) 3. 4단체(음제협, 음저협, 음콘협,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 개최(12월 14일) 4. 업계동향 뉴스 클리핑
발행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보 <음원가족> - 연 2회 발행 - 주요 음악업계 트렌드 뉴스 및 기고문 전달 2. 2011년도 제14차 정기총회 및 제1차 대의원총회 자료 제작
홈페이지	<p>http://www.kapp.or.kr</p>
연락처	<p>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2 서원빌딩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전화 : 02-3270-5900 팩스 : 02-711-9735</p>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p>단체명</p>	<p>(한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p> <hr/> <p>(영문) Korea Database Agency (KDB)</p>
<p>설립연도</p>	<p>1993년 2월</p>
<p>단체연혁</p>	<p>1993년 3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설립 1993년 9월 제1회 국제DB쇼 및 컨퍼런스 개최 1995년 1월 상공부 산하 (사)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 흡수통합 1996년 7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위원회 구성 1997년 10월 데이터베이스 대상제도 시행 1998년 5월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 착수 1999년 4월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 교육센터 개소 2000년 10월 (사)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발족 2001년 6월 디지털콘텐츠 사이버전시장 구축사업 착수 2002년 5월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체제 구축 2003년 11월 제1회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개최 2004년 3월 공공정보 유통지원사업 착수 2005년 12월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실시 2006년 4월 데이터품질관리인증센터 개소 2007년 11월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자격검정, 민간자격 국가공인 획득 2008년 1월 데이터품질관리 비즈니스 특허권 획득 2009년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명칭 변경 2010년 11월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2011년 6월 공공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취득</p>
<p>설립목적/ 기능</p>	<p>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KDB')은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 육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2009년 이름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한 단체이다.</p> <p>KDB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체계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p> <p>2011년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수행했던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을 이관받는 한편, 신탁의 범위를 공공저작물 전문야로 확대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세미나 및 포럼〉

1.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 ◆ 일자 : 6월 23~24일
- ◆ 장소 : 제주 해비치리조트



2.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 ◆ 일자 : 7월 12일
-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연구활동〉

1. 공공라이선스 개발

- ◆ 연구자 : 이현묵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2. 공유저작물 활용 수요 및 현황 조사

- ◆ 연구자 : 한국갤럽연구소

3. 공공저작물의 법률적 권리처리를 위한 매뉴얼 연구

- ◆ 연구자 : 채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대중)

4. 공공저작권 관리지수 개발 연구

- ◆ 연구자 : 한국조사연구학회

5. 국유저작물 관리방안 연구

- ◆ 연구자 : 육소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행물

1. 〈공공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2.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http://www.kdb.or.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9층
전화 : 02-3708-5407

5. 저작권 유관협회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영문)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SPC)
설립연도	2000년 5월
단체연혁	<p>1993년 3월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위원회 설립</p> <p>2000년 5월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설립 - 김정 초대 회장 선임</p> <p>2000년 11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식지 '소프트웨어저작권' 창간</p> <p>2001년 6월 SRC(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사업 실시</p> <p>2002년 3월 SCS(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증제) 실시</p> <p>2002년 11월 온라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서비스 '체키(Checkki)' 실시</p> <p>2003년 4월 전국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 실시</p> <p>2004년 2월 제5회 정기총회 - 최현규 회장 선임</p> <p>2004년 7월 SPC 회장단 미무역대표부(USTR) 방문 통상 현안 논의</p> <p>2005년 3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p> <p>2005년 4월 온라인 무료 소프트웨어 점검 서비스 'Click' 오픈</p> <p>2005년 6월 SM(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p> <p>2005년 9월 소프트웨어발전센터 설립</p> <p>2006년 3월 영국 FAST(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와 MOU 체결</p> <p>2006년 3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자격검정 실시</p> <p>2006년 10월 소프트웨어비즈니스센터 오픈</p> <p>2006년 11월 '제1회 SW 저작권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p> <p>2007년 2월 SDC(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비스) 실시</p> <p>2007년 4월 초등학교 대상 '정품이 흐르는 교실' 실시</p> <p>2007년 11월 중국 CSA(China Software Alliance) 및 일본 ACCS(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와 MOU 체결</p> <p>2008년 2월 제9회 정기총회 개최 - 김영만 회장 선임</p> <p>2008년 7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1급 자격검정 실시</p> <p>2009년 6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개최</p> <p>2009년 7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서약식 실시-구로디지털단지</p> <p>2009년 11월 청와대 IT 특보 초청 특별 세미나 개최</p>

<p>단체연혁</p>	<p>2010년 3월 범국민저작권보호를 위한 '2010 Copy Zero 캠페인' 진행 2010년 5월 초등학교 학생 저작권 교육 '정품이 흐르는 교실' 개최 (부산/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동) 2010년 5월 고등학교 대상 '법생활 골든벨 대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공동) 2010년 6월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와 업무협약 2010년 8월 저작권보호활동 공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0년 12월 초등학교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2010 저작권 골든벨'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2011년 2월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2011년 3월 SPC-대검찰청 MOU 체결 2011년 4월 Software KOREA 2020 비전 선포 2011년 4월 SPC-경찰수사연수원 MOU 체결 2011년 11월 SPC-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대학 CIO포럼 출범 2011년 11월 SPC-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MOU 체결 2011년 11월 초등학교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2011 저작권 골든벨'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글과컴퓨터 공동) 2011년 11월 MBC-TV공동, 'Software KOREA' 공익 캠페인 진행</p>
<p>설립목적/기능</p>	<p>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로, SW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SW 가치 인식 제고, SW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93년 'SW저작권 보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설립, 그 후 2000년 5월 현재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SW 자산관리 컨설팅,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 SW 저작권 보호 활동 및 불법복제 조사활동, 교육·홍보·세미나·캠페인 개최 및 간행을 발간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2011 활동내역</p> <p style="text-align: center;">학술행사 및 홍보 활동</p>	<p>1. Software KOREA 2020 비전 선포</p> 	<p>2. 대검찰청 MOU 체결</p>  <p>3. 경찰수사연수원 MOU 체결</p>  <p>4.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대학 CIO포럼 출범</p>  <p>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MOU 체결</p> <p>6. 공공기관 대상 SW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p> <p>7. 2011 저작권 골든벨</p> 
	<p>8. MBC-TV 공동캠페인 'Software Korea 2020' TV 방영</p> 	
<p>발행물</p>	<p>1. <SW 자산관리 모범 사례집> 제작 ◆ 내용 : SW 자산관리 우수기업 연재 및 SW 자산관리 진단과 교육, 컨설팅 사례</p> <p>2. <SW 저작권> 협회보 제작 ◆ 내용 : SPC 및 회원사 뉴스, IT/SW 및 저작권 관련 정부 및 언론사 담당자의 기고문, IT/SW 및 저작권 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 등</p>	
<p>홈페이지</p>	<p>http://www.spc.or.kr</p>	
<p>연락처</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7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전화 : 02-567-2567</p>	

(2) 한국음악출판사협회

<p>단체명</p>	<p>(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p> <hr/> <p>(영문)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KMPA)</p>
<p>설립연도</p>	<p>1998년</p>
<p>단체연혁</p>	<p>1998년 2월 음악출판사 단체 설립 2000년 4월 30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창립총회 개최 제1대 황인서 회장 취임 2000년 9월 18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1년 3월 9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창단 2005년 5월 12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KMPA)와 음악출판사협회(MPA) 통합 2005년 5월 12일 제3대 황인서 회장과 방기남 회장이 공동 회장 취임 2006년 12월 12일 임원 보선 및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회원 총회 개최 (조규철 회장 선출) 2006년 12월 12일 제4대 조규철 회장 취임 2007년 7월 6일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 정관 변경 문화관광부 허가 (법인 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사단법인 고려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 • 변경 후 :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 <p>2009년 10월 23일 제5대 유명민 회장 취임</p>
<p>설립목적/ 기능</p>	<p>한국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약칭 KMPA)는 1998년 2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출판사 단체이다. 본 협회는 국내 및 국외의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음악출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악곡 등록, 악곡 관리, 악곡 홍보, 악곡 사용 라이선스, 악곡 사용 영역 확대, 악곡 침해 방지 등을 통한 사용 확장 및 개발을 지향하는 음악출판사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협회 관계자 및 다양한 사용자 등과 업무 협의 및 교류를 통해 음악 출판사 및 작가의 지위 향상 등 음악저작권의 보호와 음악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p>

1. ICMP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usic Publishers, 국제음악출판사 연맹)과 회의
 - ◆ 일자 : 1월 11일
 - ◆ 주제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약칭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의 현황(음악출판사 정회원 및 이사회 진출, 작품 가점제, 외국곡 관리 등)
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과의 업무 회의
 - ◆ 일자 : 1월 13일
 - ◆ 주제 : 징수 규정 현황에 대한 논의
3. JMIC (Japan Music Information Center, 일본음악정보센터) & PProMIC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er, Embassy of Japan, Seoul: 재단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2011 심포지엄 협력
 - ◆ 일자 : 2월 24일
 - ◆ 주제 : 한일 아이돌 그룹의 성공 전략 진단과 향후 전망
 - ◆ 협력 :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
 - ◆ 발제 : 본 협회 회원사 CJ E&M의 본부장 안석준
 - ◆ 패널 : 본 협회 감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이사 정창환 외
 - ◆ 사회 : 본 협회 이사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 대표 허영아



4. MPAJ(Music Publishers Association of Japan, 일본음악출판사협회)와 간담회
 - ◆ 일자 : 4월 27일
 - ◆ 목적 : 일본 및 한국 양국의 음악출판사협회 간 상호 교류 및 현안 논의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 음악출판사의 정회원 및 이사 진출
 - 한국 작가의 이중 계약
 - 주요 배포 지역 문제
 - 양국 저작권 관리 및 징수 단체의 번안곡 처리
 - 2012년 회의 장소 일본 동경 개최 예정 등
 - ◆ 장소 : 서울, 대한민국



5.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최 음악출판사 간담회

- ◆ 일시 : 4월 29일
- ◆ 주제 : 분리 신탁 및 복수단체 도입에 대한 건

6. CWR(Common Works Registration, 악곡등록기준) 관련 출장 시 통역 및 업무 지원



- ◆ 일자 : 7월 4일 ~ 7월 6일
- ◆ 주제 : CWR 해외 도입 사례 스터디
- ◆ 목적 : 협회 내 자료 Database의 국제화 등
- ◆ 장소 : 홍콩의 음악저작권협회 (CASH)

7.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약칭 KOMCA)와 본 협회 회장단 간담회

- ◆ 일자 : 8월 30일
- ◆ 주제 : 음악출판사와 저작권협회의 발전 방안 논의
- ◆ 참석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 및 본 협회 유명민 회장
- ◆ 논의 내용 : 음악출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음악출판사 정회원 문제
- ◆ 향후 추진 내용
 - KOMCA의 격월 월간지 KOMCA TODAY 내 음악출판사 관련 칼럼 연재
 - 해당 칼럼을 통한 음악출판사 이미지 재고 및 계몽

8. 워크숍

- ◆ 일자 : 9월 27일
- ◆ 장소 : 남한산성
- ◆ 목적 : 회원사 간 친목 도모 및 소속감과 유대감 강화

9. MPAJ(Music Publishers Association of Japan, 일본음악출판사협회) 내 세미나 중 “한국음악출판업계의 여정과 그 과제” 강연

- ◆ 일자 : 11월 10일
- ◆ 주제 : 한국음악출판업계의 여정과 그 과제
- ◆ 강연자 : 본 협회 회장 유명민



2011 활동 내역	기타	(1) CWR(Common Works Registration, 악곡등록기준) Working Group (2) Royalty/정산/재무 Working Group
	홈페이지	www.koreampa.org 및 www.koreampa.or.kr (홈페이지 제작 준비 중)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4 해천빌딩601 한국음악출판사협회 전화 : 02-514-8232 팩스: 02-566-9710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단체	(한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영문) Creative Commons Korea (CCKoREA)
설립연도	2009년 1월 23일
단체연혁	<p>2009년 1월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출범</p> <p>2009년 2월 'CC Asia Commons 2009' 참가 (마닐라, 필리핀)</p> <p>2009년 5월 개발자를 위한 'CC 열린 세미나' 개최</p> <p>2009년 6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 MoU 체결</p> <p>2009년 6월 CC Tech Summit 참가 (토리노, 이탈리아)</p> <p>2009년 8월 '오픈디자인 SALON' 개최</p> <p>2009년 11월 'RE-Mix 컨테스트', 'How to open Business 세미나' 개최</p> <p>2009년 12월 '3회 CC Korea Hope Day' 개최</p> <p>2010년 2월 CC Korea 정기총회</p> <p>2010년 4월 CC Korea Youth 모집</p> <p>2010년 6월 2회 CC Korea 국제컨퍼런스 'open for Innovation' 개최</p> <p>2010년 11월 2010 회원모집</p> <p>2011년 1월 CC Korea 정기총회</p> <p>2011년 3월 CC Korea 2011 S/S Youth 모집</p> <p>2011년 4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 공작실, 창작공방 시작</p> <p>2011년 9월 "공무원 100명에게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보내기" 완료</p> <p>2011년 10월 CC Art Happening 운수 좋은 날 페스티벌 (전시회&콘서트)</p> <p>2011년 11월 CCL 콘텐츠 검색툴 Let's CC 오픈</p> <p>2011년 11월 CC Hopeday</p> <p>2011년 12월 2012 상반기 Youth 모집</p> <p>2011년 12월 CC The Power of open 한국어 버전 번역, 공개</p> <p>2011년 12월 한미 FTA 이후 저작권법의 변화에 대한 강연회</p>

설립목적/기능	<p>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가치는 문화와 지식의 창작자, 사용자, 유통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실행에 의해서만 퍼져나가는 데 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자신의 의지로 오픈하고, 공유된 창작물을 향유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문화콘텐츠와 지식콘텐츠 생태계를 생각하는 모두의 참여를 위한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상업적인 자본이 들어간 창작물에게도 무조건적인 공개와 공유를 주장하지 않고, 창작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환경과, 창작자가 꾸준히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p>
<p>2011 활동내역</p>	<p>학술행사 및 홍보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월~8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 강연회, 창작 워크숍 개최 2. 10월 CC Art Happening 운수 좋은 날 페스티벌 3. 11월 CCL 콘텐츠 검색 사이트 Let's CC 오픈 4. 오픈 세미나 "12월 한미 FTA 이후 저작권법 변화에 대한 강연회" <p>발행물</p> <p>〈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저, gov20.kr 역/ 아이앤유) 〈The Power of open〉 - CC KoREA발간</p>
홈페이지	<p>http://www.cckorea.org</p>
연락처	<p>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7 신한빌딩 2층 201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전화 : 070-7618-0321</p>

1. 박사학위 논문

순서	논문명	저자	대학
1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기능요구사항명세서 개발지원도구	고갑승	한남대학교 대학원
2	미술저작자의 추가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권안젤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3	디지털 동영상 보호를 위한 대칭키 알고리즘 기반의 부분 암호화 기법	김보승	송실대학교 대학원
4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모방지 포렌식 마킹 메커니즘	김영모	대전대학교 대학원
5	eラーニングコンテンツの開発と運営における著作権に 關する研究 = e러닝콘텐츠개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저작 권에 관한 연구	김한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6	등록제도를 통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김현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7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민경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8	개방형 IPTV에서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연구	방진숙	배재대학교 대학원
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백영준	한양대학교 대학원
10	우리나라 기관 리포지토리 운영에 관한 연구	안태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11	IPTV 환경에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콘텐츠 암호화 기법	이영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1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재	송실대학교 대학원
13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이진태	고려대학교정보경영 공학전문 대학원
14	디지털콘텐츠시장에 있어서 이용자 및 콘텐츠제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이형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15	디지털 콘텐츠 생산 기술의 지식 이전에 관한 연구 : 게임 엔진 라이선싱 과정의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정원조	서강대학교 대학원
16	네트워크 중심전(NCW)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 운용성 보안기술 적용 연구	채중수	공주대학교 대학원

2. 관련 서적

연번	표지	저자	서명	출판사 및 출판일
1		김관식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	글누리 2011년 8월 30일
2		김기태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채 2011년 3월 14일
3		김윤명	이러닝과 저작권법 :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년 5월 16일
4		랜디스, 윌리엄 M. · 포스너, 리처드 A.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일조각 2011년 6월 20일
5		류종현	온라인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2011년 2월 16일

연번	표지	저자	서명	출판사 및 출판일
6		송영식 · 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11년 8월 25일
7		쇼지, 야마다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세계절출판사 2011년 9월 2일
8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2년 3월 5일
9		정영미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년 10월 28일
10		정진근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년 2월 20일
11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조은글터 2011년 8월 23일

대회 수상작

1.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수상작	구분	논문명	학교	이름
최우수상 (1명)	대학생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 방안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이수 백우람 최명호
우수상 (각 1명)	대학원생	교육목적 저작물에 관한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박수경 김경수 안준엽
	대학생	공공저작물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유이용 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법학과)	권순민 강경원 김소연
장려상 (각 2명)	대학원생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세희 정태혁 장승원
		저작권 침해 도구로서의 토렌트(Torrent)에 대한 고찰과 법적 대응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형석 유정아
	대학생	현대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황보연
		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 - 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	정병천 고유승 한예승

2. 제7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수상작

시상내역	이름	학 교	제 목	
대 상 (대통령상)	고등 김현우	하나고등학교	소중한 경험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초등 임리키	인천개흥초등학교	양심적인 청소년	
	중등 한지현	안심중학교	엄마의 홍보 전단지	
	고등 이유진	하나고등학교	저작권 실습, 그들은 이미 시작했다	
우 수 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초등	강우림	목포한빛초등학교	개구리의 교훈
		최리아	서울길음초등학교	초등학생의 창작물도 지켜져야 한다
	중등	장해리	신곡중학교	엄마 야생화를 부탁해!
		허환	고양백마중학교	누나의 당당한 고집
	고등	박성미	삼산고등학교	저작권, 누군가의 권리, 누군가의 의무
		황정현	미추홀외국어 고등학교	'나는 가수다'를 통해 본 저작권의 가치
장 려 상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장상)	9명(초·중·고 각 3명)			
입 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60명(초·중·고 각 20명)			

주요기관 주소록

구분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대표)	팩스
주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http://www.mcst.go.kr	02-3704-9114	02-3704-9154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135-240)	http://www.copyright.or.kr	02-2660-0000	02-2660-0019
	(사)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10층(121-835)	http://www.kofoco.or.kr	02-1588-0190	02-3153-2708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소프트 웨어발전센터 6,7층(135-280)	http://www.spc.or.kr	02-567-2567	02-567-2933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121-270)	http://www.kocca.kr	02-1566-1114	02-3153-1115
유관학회	한국디지털재산 법학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	http://www.digitallaw.kr	02-3475-7716	-
	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런스빌딩 15층 법무법인 정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진광엽 변호사(137-873)	http://www.kels.or.kr	02-2149-1680	02-581-4049
	한국인터넷법학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 연구실 (487-711)	http://www.itlaw.or.kr	031-539-1782	-
	한국저작권법학회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선정 교수 연구실(100-715)	-	02-2260-3853	-
	한국정보법학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 교수 연구실(133-791)	http://www.kafil.or.kr	02-2220-0981	02-2220-2784
	한중지적 재산권학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422 박영길 회장 (138-953)	-	02-416-3641	-
	한국SW 감정평가학회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정보과학관 508호 김도완 교수 연구실(302-735)	http://www.i3.or.kr	042-520-5710	070-4362-6312

구분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대표)	팩스
신 탁 단 체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회관(157-824)	http://www.komca.or.kr	02-2660-0400	02-2660-0401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2 서원빌딩 3층(121-851)	http://www.kapp.or.kr	02-3270-5900	02-711-9735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157-862)	http://www.ikmp.kr	02-745-8286	02-766-1034
	한국방송작가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01호(150-874)	http://www.ktrwa.or.kr	02-782-1696	02-783-3711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20호(135-080)	http://www.copyrightkorea.or.kr	02-508-0440	02-539-3993
	한국시나리오작가 협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 캐피탈빌딩 202호(100-273)	http://www.scenario.or.kr	02-2275-0566	02-2278-7202
	한국복사 전송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063-3 중앙빌딩 3층(157-010)	http://www.krtra.or.kr	02-2608-2036	02-2608-2031
	한국영화 제작자협회	서울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빌 딩 503호(100-272)	http://www.kfpa.net	02-2267-9983	02-2267-9986
	한국영상산업협회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63 미진빌딩 2층(100-450)	http://www.kmva.or.kr	02-3452-1001	02-3452-1005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604호(150-971)	http://www.kbpa.kr	02-784-7802	02-784-7805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100-750)	http://www.kpf.or.kr http://www.newskorea.or.kr	02-2001-7114	02-2001-7720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9층(100-180)	http://www.kdb.or.kr	02-3708-5407	02-318-5040
유 관 협 회	한국음악 출판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4 해천빌딩601 (135-870)	www.koreampa.org www.koreampa.or.kr	02-514-8232	02-566-97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7 신한빌딩 2층 201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135-818)	http://www.cckorea.org	070-7618-0321	-

저작권백서 집필진

| 기획 및 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 집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 공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담당자

유관학회 및 단체

박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장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성흔 디지캠

이용일 저작권보호센터

차상욱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최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저작권 백서

인쇄일 2012년 9월 20일

발행일 2012년 9월 28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114 팩스 02-3704-9154

<http://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6,7층

전화 02-2660-0000 팩스 02-2660-0019

<http://www.copyright.or.kr>

제작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ISSN 2234-392X